

20
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
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 책의 내용은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삽화

<https://whatsnew.moef.go.kr>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금융·재정·조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재정경제부	00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재정경제부	009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010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재정경제부	01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012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재정경제부	013
증권거래세율 조정	재정경제부	0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재정경제부	015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재정경제부	016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재정경제부	017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재정경제부	018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재정경제부	019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재정경제부	020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재정경제부	021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재정경제부	02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02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재정경제부	024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재정경제부	02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재정경제부	026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재정경제부	027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028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재정경제부	029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030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재정경제부	031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재정경제부	03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033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재정경제부	034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재정경제부	035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	재정경제부	036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재정경제부	037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038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재정경제부	039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재정경제부	040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재정경제부	04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042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재정경제부	043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재정경제부	044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국가데이터처	045
근로·자녀장려금 입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청	046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관세청	047
개인통관우부호 유효기간 도입	관세청	048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관세청	049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조달청	050
청년미래적금 신설	금융위원회	051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금융위원회	052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053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054

02 교육·보육·가족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교육부	060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교육부	061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교육부	062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초등돌봄 도입	교육부	06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	06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	065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행	성평등가족부	066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성평등가족부	067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성평등가족부	068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법률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069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070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재외동포청	071

03 보건·복지·고용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	079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국가보훈부	080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국가보훈부	081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082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	083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보건복지부	084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085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보건복지부	086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	보건복지부	087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행	보건복지부	088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089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고용노동부	090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091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092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고용노동부	093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094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09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09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고용노동부	09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고용노동부	098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고용노동부	09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10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고용노동부	101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고용노동부	102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고용노동부	103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104
물적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10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10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107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고용노동부	108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109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110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고용노동부	111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11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11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114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고용노동부	115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다양성) 교육 확대	성평등가족부	116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성평등가족부	117
청소년 시설 급식비 단가 인상	성평등가족부	118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해양수산부	119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해양수산부	120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	121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22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주문생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23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24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	125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126
화장품 할랄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27
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28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질병관리청	129



04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외교부	133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34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35
학교체육시설 지역 주민 개방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136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13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38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39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5만원(7.1% 증)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140
등대스탬프투어 대상지 확대	해양수산부	141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유산청	14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시 신문 제개면 제한 규정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3

05 환경·에너지·기상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149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	기후에너지환경부	15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151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152
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153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154
사육곰 농가 곱 사육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155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및 실적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56
대기총량허가신청서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157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158
생산자책임제활용제(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	159
전자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160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모든 제품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161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162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 발효	해양수산부	163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기상청	164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기상청	165
진앙 인근 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기상청	166
세종·서해 도서·수도권 중심 특보구역 세분화	기상청	167
통합 기상가뭄 정보 제공	기상청	168
실증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제공	기상청	169
저고도항공 전용 날씨앱(LAMIS-A) 신규 서비스	기상청	170

06 산업·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6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산업통상부	177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	산업통상부	178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 시행	산업통상부	179
예선업·도선업에 대한 선박금융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180
물류기업 해외진출 시 컨설팅 확대	해양수산부	181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해양수산부	182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183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184
창업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	중소벤처기업부	185
국민의 아이디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자식재산처	186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자식재산처	187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관세청	188
점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관세청	189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조달청	190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조달청	191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다양화	조달청	192
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시설 입목축적 기준 예외적용	산림청	193



07 국토·교통

모두의 카드 도입	국토교통부	197
국내 최초 공공 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 발사·운영	국토교통부	198
범죄피해자 등 주거상향 시 자산 소득 검증 생략	국토교통부	199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국토교통부	200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201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202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	203
이륜자동차 전국단위 번호판 도입 및 규격 변경	국토교통부	204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 확인 절차 강화	국토교통부	205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 개선	해양수산부	206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온라인 접수 실시	해양수산부	207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2025~2029) 시행	해양수산부	208
소파블록(테트라포드 등) 재활용 규모 확대	해양수산부	209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활성화	해양수산부	210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경찰청	211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경찰청	212

08 농림·수산·식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18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19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0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21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	222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까지 지원 확대… 지원기간도 12개월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223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2026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24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25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2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227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28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29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빙집 정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30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31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료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32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33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234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35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36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37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38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39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40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41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2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43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기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244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농림축산식품부	245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46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47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추가 및 신고방법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248
체소가격안정제,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49
마늘, 양파 대상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250
오리 방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시범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51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52
부산 영도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개소	해양수산부	253
수산물 이력제 참여 기준 완화	해양수산부	254
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255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단가 인상	해양수산부	256
국내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가능	해양수산부	257
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	258
수산자원조성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259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실시	해양수산부	260
식품안전 비상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262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263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264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65
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을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266
시험성적서 면제범위 확대 등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 개선	농촌진흥청	267
농작업안전관리자 확충으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 컨설팅 확대	농촌진흥청	268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농촌진흥청	269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산림청	270

09 국방·병무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국방부	274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국방부	275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국방부	276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지정 및 설립	국방부	277
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장병e음') 제공	국방부	278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국방부	279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국방부	280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국방부	281
우리 장병들이 입는 군수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	조달청	282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무청	283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병무청	284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자동처리 시행	병무청	285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병무청	286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1형) 연기항목 신설	병무청	287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1형) 연기기한 확대	병무청	288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병무청	289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병무청	290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축소 등 교육환경 개선	병무청	29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기준 개선	병무청	292

10 행정·안전·질서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8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9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법무부	300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법무부	302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법무부	304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법무부	305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법무부	306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법무부	308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법무부	309
365 스마일 운영	법무부	310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법무부	311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법무부	312
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 필요 시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행정안전부	313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혜택알리미) 확대	행정안전부	314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315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	행정안전부	316
사용자 중심의 재난·안전정보 통합 제공	행정안전부	317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318
선박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319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해양수산부	320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해양수산부	321



해운분야 안전투자 최초 공시	해양수산부	322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확대	해양수산부	323
카페리 여객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324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공개	소방청	325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방청	326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방법 확대	소방청	327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산림청	328
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시행	해양경찰청	329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31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한국형 기준 정립	원자력안전위원회	332
사용후핵연료가 보다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333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재정경제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00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009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010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01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012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013
증권거래세율 조정	0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015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016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017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018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019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020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021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02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02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024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02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026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027
임목 별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028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029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030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031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03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033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034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035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	036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037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038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039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040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04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042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043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0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 등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176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	298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	299

교육부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060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061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062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063

외교부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133
----------------	-----



법무부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300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302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304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305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306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308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309
365 스마일 운영	310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311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312

국방부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274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275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276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277
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장병e음’) 제공	278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279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280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281

행정안전부

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 필요 시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313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혜택알리미) 확대	314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315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	316
사용자 중심의 재난·안전정보 통합 제공	317



국가보훈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079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080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081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신설	134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135
학교체육시설 지역 주민 개방 활성화	136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13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138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139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5만원(7.1% 증)으로 인상	14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218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시행	219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220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221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제도화	222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까지 지원 확대… 지원기간도 12개월로 연장	223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2026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24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225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22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227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확대	228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229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빙집 정비 지원 확대	230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231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료 부담 완화	232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233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234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사업 신규 추진	235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236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237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238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239
축산계열회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240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241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242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 실시	243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244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245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246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247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추가 및 신고방법 간소화	248
채소가격안정제,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바뀝니다	249
마늘, 양파 대상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 운영	250
오리 방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시범사업 도입	251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252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177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	178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 시행	179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082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083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084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085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086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	087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행	088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089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도입	149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	15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151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시행	152
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 강화	153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154
사육곰 농가 곰 사육 금지	155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및 실적 인정	156
대기총량허가 신청서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	157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	158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159
전자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160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모든 제품으로 확대	161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조미세먼지 기준 강화	162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090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091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092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093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094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09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09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09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098
일손 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099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10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101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102
훈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103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104
물적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10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	106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107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108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109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110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111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11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시행	11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	114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115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06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065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행	066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067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068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법률지원 강화	069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070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다양성) 교육 확대	116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117
청소년 시설 급식비 단가 인상	118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318

국토교통부

모두의 카드 도입	197
국내 최초 공공 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 발사·운영	198
범죄피해자 등 주거상향 시 자산 소득 검증 생략	199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200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개선	201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	202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203
이륜자동차 전국단위 번호판 도입 및 규격 변경	204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 확인 절차 강화	205

해양수산부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119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120
등대스탬프투어 대상지 확대	141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 발효	163
예선업·도선업에 대한 선박금융지원 확대	180
물류기업 해외진출 시 컨설팅 확대	181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182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 개선	206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온라인 접수 실시	207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2025~2029) 시행	208
소파블록(테트라포드 등) 재활용 규모 확대	209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활성화	210
부산 영도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개소	253
수산물 이력제 참여 기준 완화	254
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255
어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단가 인상	256
국내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가능	257
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 개시	258
수산자원조성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259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실시	260
선박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319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320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321
해운분야 안전투자 최초 공시	322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확대	323
카페리 여객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의무화	324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183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184
창업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	18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121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122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주문생산 확대	123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124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125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126
화장품 할랄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127
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128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129
식품안전 비상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운영	262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 선출	263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264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 제공	265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율가지수 개편	045
-----------------------	-----

지식재산처

국민의 아이디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186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187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046
---------------------	-----



관세청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047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048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049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188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189

조달청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050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190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191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다양화	192
우리 장병들이 입는 군수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	282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071
-------------------------	-----

병무청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283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284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285
현역 모집형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86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I형) 연기항목 신설	287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I형) 연기기한 확대	288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289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290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축소 등 교육환경 개선	29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기준 개선	292



경찰청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211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212

소방청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공개	325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326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방법 확대	327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142
-------------------------------	-----

농촌진흥청

시험성적서 면제범위 확대 등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 개선	267
농작업안전관리자 확충으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 컨설팅 확대	268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확대	269

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시설 입목축적 기준 예외적용	193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270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328

질병관리청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129
---------------------	-----



기상청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164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165
진앙 인근 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166
세종·서해 도서·수도권 중심 특보구역 세분화	167
통합 기상가뭄 정보 제공	168
실증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제공	179
저고도항공 전용 날씨앱(LAMIS-A) 신규 서비스	17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시행	329
---------------------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신설	051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052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05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시 신문 제개면 제한 규정 폐지	143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33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개편	054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한국형 기준 정립	332
사용후핵연료가 보다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개선	333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월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재정경제부	00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재정경제부	009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010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재정경제부	01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012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재정경제부	013
증권거래세율 조정	재정경제부	0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재정경제부	015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재정경제부	018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재정경제부	019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재정경제부	020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재정경제부	02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02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재정경제부	024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재정경제부	02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재정경제부	026
상용근로자 간이자금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재정경제부	027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028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재정경제부	029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030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재정경제부	031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재정경제부	03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033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재정경제부	034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재정경제부	035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	재정경제부	036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038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재정경제부	040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재정경제부	041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재정경제부	043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재정경제부	044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관세청	047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관세청	048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관세청	049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조달청	050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053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054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교육부	06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	06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	065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행	성평등가족부	066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성평등가족부	067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성평등가족부	068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법률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069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070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국가보훈부	080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국가보훈부	081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082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보건복지부	084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085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보건복지부	086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091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09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고용노동부	09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고용노동부	094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고용노동부	095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096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고용노동부	097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098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099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100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고용노동부	10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인상	고용노동부	102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기 인상	고용노동부	10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고용노동부	104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105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106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고용노동부	107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108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고용노동부	109
훈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고용노동부	110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11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11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113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114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115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다양성) 교육 확대	성평등가족부	116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성평등가족부	117
청소년 사설급식비 단기 인상	성평등가족부	118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22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주문생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23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24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	125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126



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28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질병관리청	129
학교체육시설 지역 주민 개방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136
등대스탬프투어 대상지 확대	해양수산부	14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151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154
사육곰 농가 곰 사육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155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158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	159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모든 제품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161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162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 발효	해양수산부	163
창업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	중소벤처기업부	185
국민의 아이디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지식재산처	186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조달청	190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조달청	191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다양화	조달청	192
모두의 카드 도입	국토교통부	197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국토교통부	200
제3차 연인정비 기본계획(변경)(2025~2029) 시행	해양수산부	208
소파블록(테트라포드 등) 재활용 규모 확대	해양수산부	209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활성화	해양수산부	210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경찰청	211
‘공동영농학산지원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19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0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21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까지 지원 확대… 지원기간도 12개월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223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2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227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28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29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빙집 정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30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33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35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36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37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40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41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244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농림축산식품부	245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47
채소가격안정제,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49
마늘, 양파 대상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250
오리 방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시범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51
수산물 이력제 참여 기준 완화	해양수산부	254
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255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단가 인상	해양수산부	256
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	258
수산자원조성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259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실시	해양수산부	260
식품안전 비상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262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263
농작업안전관리자 확충으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 컨설팅 확대	농촌진흥청	268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국방부	274
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장병e음') 제공	국방부	278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국방부	279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무청	283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병무청	284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병무청	286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I형) 연기항목 신설	병무청	287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I형) 연기기한 확대	병무청	288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병무청	290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축소 등 교육환경 개선	병무청	29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기준 개선	병무청	292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법무부	302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9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법무부	302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법무부	305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법무부	308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법무부	312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평등기족부	318
선박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319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해양수산부	320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해양수산부	321
해운분야 안전투자 최초 공시	해양수산부	322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확대	해양수산부	323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방청	326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방법 확대	소방청	327

2월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34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5만원(7.1% 증)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140
기업부설연구소 등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6
물류기업 해외진출 시 컨설팅 확대	해양수산부	18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31
우리 장병들이 입는 군수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	조달청	282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8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법무부	300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법무부	311
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 필요 시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행정안전부	313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산림청	328

3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교육부	060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교육부	061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부	063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재외동포청	071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	079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	083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	보건복지부	08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고용노동부	090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106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111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해양수산부	119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외교부	133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35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149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	기후에너지환경부	150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152
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153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및 실적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56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	산업통상부	178
예선업·도선업에 대한 선박금융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180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해양수산부	182
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시설 입목축적 기준 예외적용	산림청	193
이륜자동차 전국단위 번호판 도입 및 규격 변경	국토교통부	204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을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266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국방부	275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국방부	276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국방부	277
365 스마일 운영	법무부	310

4월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재정경제부	016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재정경제부	039
화장품 할랄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2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38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경찰청	212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2026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24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43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315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해양수산부	320
카페리 여객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324
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시행	해양경찰청	329

5월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금융위원회	052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행	보건복지부	088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해양수산부	120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137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기상청	165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표상금 제도 도입	지식재산처	187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201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법무부	304



6월

청년미래적금 신설	금융위원회	05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고용노동부	110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기상청	164
진양 인근 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기상청	166
세종·서해 도서·수도권 중심 특보구역 세분화	기상청	167
통합 기상가뭄 정보 제공	기상청	168
산업용화 규제샌드박스,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산업통상부	177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 시행	산업통상부	179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관세청	188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관세청	189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 개선	해양수산부	206
해운분야 안전투자 최초 공시	해양수산부	322

7월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재정경제부	017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재정경제부	037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042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39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46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추가 및 신고방법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248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농촌진흥청	269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산림청	270

2025. 하반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089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고용노동부	107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유산청	142



전자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160
범죄피해자 등 주거상향 시 자산 소득 검증 생략	국토교통부	199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202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	203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온라인 접수 실시	해양수산부	207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234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38
시험성적서 면제범위 확대 등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 개선	농촌진흥청	267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국방부	280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국방부	281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병무청	285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병무청	289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법무부	309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	행정안전부	316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공개	소방청	325
사용후핵연료가 보다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333

2026. 상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청	04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시 신문 제개면 제한 규정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3
대기총량허가 신청서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157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183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184
국내 최초 공공 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 발사·운영	국토교통부	198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 확인 절차 강화	국토교통부	20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18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25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39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2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252
부산 영도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개소	해양수산부	253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264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법무부	306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혜택알리미) 확대	행정안전부	314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315
사용자 중심의 재난·안전정보 통합 제공	행정안전부	317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31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한국형 기준 정립	원자력안전위원회	332

2026. 하반기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국가데이터처	045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	121
실증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제공	기상청	169
저고도항공 전용 날씨앱(LAMIS-A) 신규 서비스	기상청	170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	222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료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32
국내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가능	해양수산부	257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65
선박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319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해양수산부	321

기타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재정경제부	021
------------------------------------	-------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01 금융·재정·조세**
- 02 교육·보육·가족**
- 03 보건·복지·고용**
- 04 문화·체육·관광**
- 05 환경·에너지·기상**
- 06 산업·중소기업**
- 07 국토·교통**
- 08 농림·수산·식품**
- 09 국방·병무**
- 10 행정·안전·질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01. 재정경제부

자세한 내용은 p.008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장기고용 유인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공제액 구조를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 합니다.

구분	기준			
	중소 (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구분	변경				
	1인당 공제액(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
	3년차	1,000	1,300	500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02. 재정경제부

자세한 내용은 p.009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등 웹툰 및 디지털 만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10%(중소는 15%)가 공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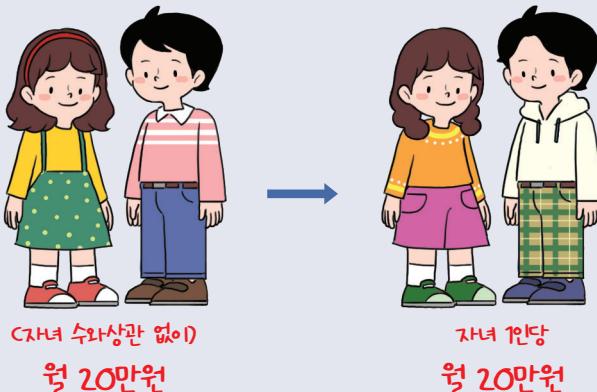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05. 재정경제부

자세한 내용은 p.01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합니다.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 1인+50만원, 자녀 2인 이상+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 1인+25만원, 자녀 2인 이상+50만원

06. 재정경제부

자세한 내용은 p.013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❶ 적용요건 (❶ and ❷)	❶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❷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❷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❸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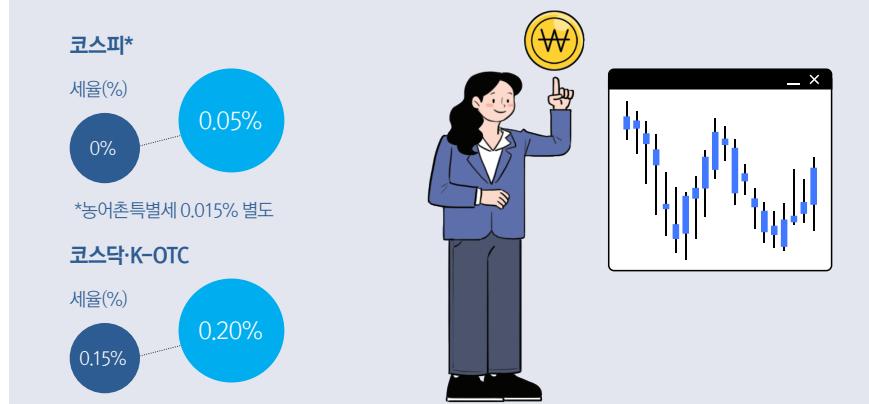
증권거래세율 조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코스피·코스닥·K-OTC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합니다.

- (코스피) 0%(농특세 0.15%) → 0.05%(농특세 0.15%)

- (코스닥·K-OTC) 0.15%(농특세 없음) → 0.20%(농특세 없음)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 단,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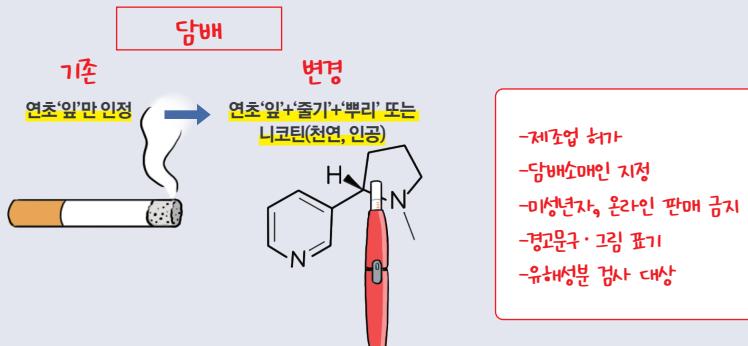
09. 재정경제부

자세한 내용은 p.016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시행일: 2026년 4월 중 예정

-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담배사업법」, 「담배유해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 및 과세 대상도 함께 확대됩니다.
- 제조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담배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그림 외 추가적인 식별조치가 추진됩니다.



10. 관세청

자세한 내용은 p.047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과세 방식 신청기한이 수입신고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 승인받은 경우, 기업은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시행일: 2026년 6월

- 2026년부터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으며,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일반형-6%, 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 구조를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합니다.

		종전				개정					
공제액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공제액	우대*	1,450	1,550	800	400	우대*	1년차	700	1,000	500	
	기본	850	950	450	-	기본	2년차	1,600	1,900	900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 청년 (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사후 관리	·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 (삭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추진배경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주요내용

2단계 구조로 공제액 재설계 및 사후관리 방식 전환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 (대 상 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 (공 제 비 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 (공 제 시 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 (공 제 율) 10%(중소: 15%)
- ▶ (적 용 기 한) 2028년 12월 31일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추진배경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주요내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배경

자녀 양육부담 완화

주요내용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 ▶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구분	주요대상	한도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한도 없음
장애인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취학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 학원 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300만원
초중고생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초중고생) · 급식비·교과서대금(초중고생) · 교복·구입비(중고생, 한도 50만원) · 예체능 학원비(만 9세 미만) 	초중고생 : 300만원 대학생 : 9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추진배경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주요내용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044-215-4212

기존에 자녀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씩 상향(최대100만원)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8. 12. 31.)합니다.

-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구분		현행 (자녀수 무관)	개정안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기본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추가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좌동)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배경

자녀 양육부담 완화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 제외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① 적용요건 (① and ②)	①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배경

주식시장 활성화 및 경제 선순환 제고

주요내용

고배당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율 조정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 044-215-4233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였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2023년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 ▶ (코스피) 0%(농특세 0.15%) → 0.05%(농특세 0.15%)
- ▶ (코스닥·K-OTC) 0.15%(농특세 없음) → 0.20%(농특세 없음)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증권거래세율 조정

추진배경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코스피·코스닥·K-OTC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2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총급여 7천만원이하 준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를(2026년 5%, 2027년~ 9%) 적용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농협·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준조합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 준조합원 및 준회원이 없음 / ** 총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추진배경

농·어·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 ☎ 044-215-5171

그간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됩니다.

-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 개정안 공포일 당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판매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시 필요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일 이후 2년간 유예

- ▶ 또한, 「담배사업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 품목별 판매개시 전 가격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됩니다.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그림 등 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로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이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입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추진배경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확대하여 그간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관리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담배사업법, 담배유해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 및 과세
- 제조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담배 제조·판매가 가능
-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격질서 혼란 방지 등 위해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그림 외 추가적인 식별조치 추진

시행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2026년 4월 중 예정)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1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기준-변경 비교

	법정납부기한	고지일	지정납부기한
기준			X
	1일당 0.022% 〈국세청 계산〉		1일(日)당 0.022% 〈납세자 직접 계산〉

	(상동)	X	●	●	●
변경			1월(月)당 0.67% 〈납세자 직접 계산〉		

이번 개편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식이 간소화되어 납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추진배경 납세편의 제고

주요내용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2

폐업이후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 (영세개인사업자 기준)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 (선의 조건)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을 것
- ▶ (중복적용 금지) 기존에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중복 적용 불가

〈적용기간 연장〉

- ▶ (폐업·재기 기간 연장)
 - (폐업) 2024. 12. 31. → 2025. 12. 31. 이전 폐업
 - (재기) 2027. 12. 31. → 2028. 12. 31. 까지 재기
- ▶ (신청기간 연장) 2028. 12. 31. 까지 → 2029. 12. 31. 까지

〈적용대상 확대〉

- ▶ (체납액 기준 상향)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 (재기* 인정 확대)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며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 (종전)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 계속 or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특례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추진배경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확대

주요내용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 확대 및 신고요건 완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을 상향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상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존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출액이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 사이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추진배경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주요내용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추가공제율과 일치되도록 조정*합니다.

* (총전) 기본공제율(%): (대) 5 (중견) 10 (중소) 15, 추가공제율(%): (대·중견) 10 (중소) 15

(개정) 기본공제율(%): (대·중견) 10 (중소) 15, 추가공제율(%): (대·중견) 10 (중소) 15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추진배경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감면율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완전복귀),
50%(부분복귀)

**개정내용은 소득·법인세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관세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추진배경

유턴기업 지원 확대

주요내용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시행일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감면 요건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도입합니다.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9

- ▶ (감면요건) 위기지역의 투자·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요건 신설
- ▶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만 적용하던 감면한도*를 중소기업에도 적용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추진배경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를 신설합니다.

-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종전〉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개정〉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 ▶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 ×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추진배경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 ▶ (종전) 3년 100% + 2년 50%
- ▶ (개정) 3년 100% + 2년 50% + 5년 30%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5. 1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추진배경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 ▶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예: 카이스트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추진배경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주요내용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현재 시행 중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합니다.

* 현재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 불가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추진배경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027년)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합니다.**

* (현) 분기별 제출

▶ (시행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변경 전) → 2027년 1월 1일 이후(변경 후)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추진배경

납세협력 부담 완화

주요내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044-215-4212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600→3,000만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배경

임업 종사자 지원

주요내용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4→3%)합니다.

* 연금소득(1,500만원 이하) 세율 : (55~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 4→3%

또한, 퇴직소득(회사부담분)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연금외수령 대비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 일시수령 대비 감면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감면<구간 신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추진배경

노후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세율 인하

- 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으로 종신수령시 세율 4→3% 인하

- 퇴직소득을 20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 확대(감면율: 40→50%)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이 3년 연장(~2028. 12. 31.) 됩니다.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취업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 (감면율) 10년간 소득세 50%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추진배경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주요내용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40%로 상향합니다.

* (현행) (~10만원) 100/110, (~2천만원) 15% [특별재난지역 30%]
(개정안) (~10만원) 100/110, (~20만원) 40% <신설> (~2천만원) 15% [상동]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추진배경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주요내용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합산 연 1,000만원)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위치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8. 12. 31.)합니다.

*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추진배경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주요내용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 044-215-4223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가 확대됩니다.

- ▶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추진배경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의 30%로 확대함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됩니다.

- ▶ 중소기업이 자산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추진배경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주요내용

-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 044-215-431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9개 시·군·구 지역 : 강원 강릉시·동해시·인제군·속초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전북 익산시

- ▶ 2025년 11월 28일 이후부터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 추가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업무안내>자치혁신실>지방소멸대응>인구감소지역 지정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추진배경

비수도권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주택 수요둔화로 주택 초과공급이 심화되며 지방 미분양 증가

주요내용

· (세컨드홈 지원 확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당초) 인구감소지역 → (변경)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양도세, 종부세: 공시가격 4→9억원 이하

시행일

(인구감소관심지역 과세특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3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 (공제한도)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 ▶ (이월공제)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개정내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2025. 7.)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추진배경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중고자동차 공제한도 신설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2025. 9.)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추진배경

영세 자영업자의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 완화

주요내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하는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2025. 7.)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추진배경

세원관리 강화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시행일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 044-215-432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3%→ 4%로 상향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5. 1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추진배경

조세탈루 방지

주요내용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5. 11.)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배경

세원관리 강화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 ☎ 044-215-465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 연금가입자의 연금계좌에서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외국 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연금가입자가 소득 수령시 납부할 국내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외국세액이 공제됩니다.
- ▶ 동 개정내용은 일반계좌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금년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해서,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간접투자회사등 지급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추진배경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주요내용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656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현황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추진배경

자료제출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656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 ▶ 국제결제은행(BIS)은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원화자산에 대한 안정적 외국인자금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등 과세 면제

추진배경

국제결제은행(BIS) 원화표시자산 투자 확대

주요내용

- BIS는 국내 비과세 대상인 국채·통안채에 대해서만 투자 중
- BIS의 원화표시자산 투자확대를 위해 예금·환매채(RP), 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적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국가데이터처 물가동향과

☎ 042-481-2531

국가데이터처는 최근의 소비패턴 및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하여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개편하고, 이를 2026년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 ▶ 이번 개편에서는 대표품목 및 가중치 갱신 등을 통해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지수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 또한, 소비자물가 기본분류인 지출목적별분류 개정*으로 신지수 및 과거계열 품목분류를 개편하여 관련 통계의 국내 및 국제 비교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2019) 및 가계동향조사 항목 분류 개편(2025)

국가데이터처 누리집>통계조사>국가데이터처통계>분야별보기>물가·가계>소비자물가조사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추진배경

최근 소비자의 기호, 구매패턴 등 소비구조 변화를 5년 주기로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

주요내용

- (지수 기준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 (조사도시 및 권역) 인구·상권 변화를 고려한 대표성 점검 및 보완
- (대표품목 및 가중치) 2025년 기준의 소비지출구조 변화 반영
- (품목분류) 개정된 지출목적별분류(COICOP-K, 2019) 반영
- (통계작성방법 개선)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확대 등

공표일

2026년 12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청 장려세제과 | ☎ 044-204-3812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23년에 상향되었음에도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185만원이었습니다.

-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도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추진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주요내용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금액(250만원) 수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2026년 상반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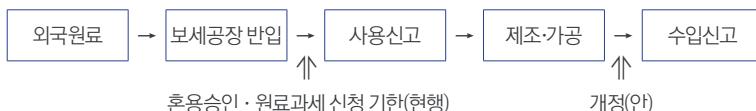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관세청 보세산업과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042-481-7821
☎ 044-215-4412

그간 혼용비율 과세와 원료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원료를 사용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 보세공장에서 훈용승인원료과세 신청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사례 방지를 위한 과세방식 선택 기한 확대(관세법 제188조, 제189조 개정)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도 세제개편안”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확대

주진배경

보세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훈용승인·원료과세 사전신청 누락으로 과도한 추징을 받는 사례 남지를 위해, 과세방식 시첨기한을 수인시고 전까지 확대

주요내용

보세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과세방식을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유리한 과세 방식 적용

현행	개정안
<p>혼용작업 신청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전까지 <p>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 	<p>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을 수입신고하기 전까지 <p>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을 수입신고하기 전까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7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630

**그간 발급 이후 아무런 정보 변경 없이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2026년부터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부호의 사용기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존 부호발급자 분들은 2027년 발급자의 생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적용됩니다.
- ▶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변경하거나 부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다시 산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해외직구 물품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 ▶ 또한,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해지되므로, 다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관세청 누리집>보도자료>“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추진배경 수입자 정보 현행화 및 개인정보 보호 목적

주요내용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 또는 정보변경 하는 자부터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는 2027년 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적용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 042-481-1164

관세청은 2026년부터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를 운영합니다.

* 전분야 : 통합법규준수도 / 물류업체 : 법규수행능력평가 / 특송업체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 ▶ 새로운 법규준수도 제도는 2025년 4분기 평가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다른 평가제도는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 즉시폐지 / 법규수행능력평가 : 2027년부터 폐지

새로운 법규준수도 제도는 다수의 평가제도로 인해 발생했던 업체의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또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규준수 역량을 진단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공개할 예정이며, 관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관세협력도 항목(가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간담회·설명회·교육 참여실적, 경진대회 수상실적, 보세사 채용 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이력

관세법령정보포털>법령·판례 등>행정규칙>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추진배경

법규준수도 평가제도의 통합을 통해 평가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요내용

- 2026년부터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로 운영
-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관세협력도(가점) 항목을 추가

시행일

2026년 1월(2025년 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분부터 적용)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 ☎ 042-724-7265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2026) 경기도, 전라북도 → (2027) 지방정부 전면 자율화

- ▶ 그간 지방정부는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했습니다.
- ▶ 이제 각 지방정부는 물품구매 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 자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다양한 구매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에 우선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소속 기초 지방정부 포함)에서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율화 대상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은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추진배경

지방정부의 조달청 이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자율성·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가격·품질 경쟁 확대

주요내용

-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이더라도 각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 구매 가능
- 202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소속 기초 지방정부 포함)에서 전기전자제품(118개 품명)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

시행일

2026년 1월

청년미래적금 신설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02-2100-1686/8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대폭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신설됩니다.

- ▶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하여 결혼·주거 등 자금 수요가 높은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 정부기여금 지원비율*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 (일반형) 납입액의 6% / (우대형) 납입액의 12%
- ▶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최대 납입 시(원금 1,800만원) 만기에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추진배경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세대간 자산격차 완화

주요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자·소상공인

- (일반형) ①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소득자(①&② 동시충족)

- (우대형) ①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①&② 동시충족)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소득요건은 일반형과 동일하도록 완화

· 정부 지원율 6%(일반형) / 12%(우대형)

· 만기 3년 월 납입한도 50만원

시행일

2026년 6월(잠정)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 02-2100-2688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등이 확대됩니다.

-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 ▶ 공시 항목도 한국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전부(55개 항목) 등 한국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기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일부(26개 항목))되며, 공시 기한도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당일(기준: 국문공시 후 3영업일)로 단축됩니다.

주주총회, 임원보수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됩니다.

-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을 등 표결결과가 한국거래소 수시공시(주총 당일), 법정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총 결과 공시에 추가됩니다.
 -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고,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 병기)하여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됩니다.
- * 예) Restricted Stocks : 일정조건(가득조건) 달성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 주식이 지급되기전까지는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에 미포함됨

금융위 누리집>보도자료>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추진배경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의 제고 위한 공시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공시 대상항목 확대 등(2단계 의무화)

· (주주총회, 임원보수·주식기준보상 공시)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을 등 표결결과 공시, 기업성과-임원보수간 관계 공시 추가 및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시행일 · (영문공시): 2026년 5월 1일(단, 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3월 1일)

· (주주총회 공시): 2026년 3월 1일(3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

· (임원보수·주식기준보상 공시): 2026년 5월 1일(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1

2026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 ▶ 금융권에서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토록 개편*하는 방안이 '25년 1월부터 시행 되었으나,
* (내용)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를 금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⑥9호) 개정)
-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상호금융권 이용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조합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일정으로 도입 및 공시

-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 1.1~2.0% → 0.6~0.9% ($\triangle 0.5\sim1.1\%$) 신용대출 : 0.9~1.7% → 0.1~0.5% ($\triangle 0.8\sim1.2\%$)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추진배경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

주요내용

- 상호금융권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를 금지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 02-397-7249

매년 업무량에 따라 변동되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액제로 개편하여 납부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 주요 원자력이용시설(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운영 단계와 용량을 고려한 정액제로 변경하고, 표준설계인가, 방사선동위원소 허가·신고 등 기타 업무에 대한 부담금도 정액화하였습니다.
※ (현행) 투입되는 규제인력과 업무시간을 반영한 업무량x규제전문기관 평균 보수액 → (개편)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해체 단계별 정액제, 기타 업무별 정액제
- ▶ 원안위는 향후 3년 주기로 산정기준을 재검토하여 현행화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납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와 징수유예 절차를 신설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추진배경

부담금 부과·징수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주요내용

- 위탁업무량 기반의 부담금에서 시설별·업무별 정액부담금 산정체계로 변경
- 이의신청 근거 및 징수유예 절차를 마련하고, 부담금 납부시기·방법 등을 개선

시행일

2026년 1월 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0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060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시행일: 2026년 3월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02.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061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시행일: 2026년 3월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 학교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사업 간 연계 및 지역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03.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06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합니다.

-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기준) 9구간 이하 → (개선) 전 구간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기준) 4구간 이하 → (개선) 6구간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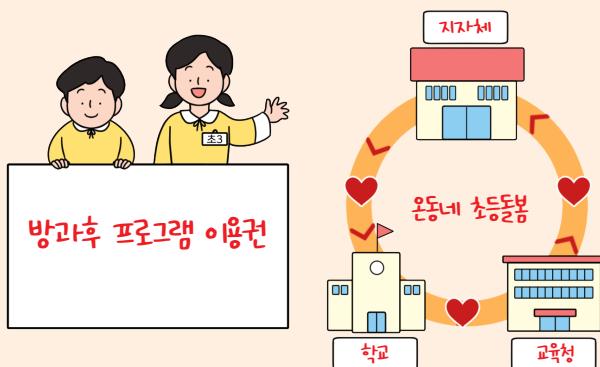
04.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063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시행일: 2026년 3월

-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학교 중심이었던 초등돌봄을 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 체제인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보완합니다.



05.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064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자격제 및 등록제는 2026년 4월 23일 예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가구)
- 영아돌봄수당 인상, 유아돌봄수당 신설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2025년(요금 12,180원)

2026년(요금 12,79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나 75% ~ 120%	60%	40%	
다 120% ~ 150%	30%	20%	
라 150% ~ 200%	15%	10%	
마 200% 초과	-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80%	(다자녀) 10%
나 75% ~ 120%	60%	50%	(인구감소 지역) 5%
다 120% ~ 150%	30%	25%	
라 150% ~ 250%	15%	10%	
마 250% 초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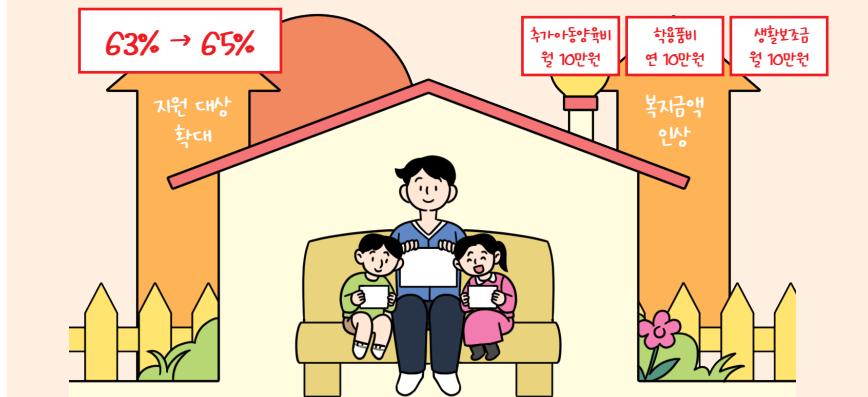
06.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06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이 기존 소득기준 63%에서 65%로 확대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으로 복지급여도 인상됩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07. 재외동포청

자세한 내용은 p.071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시행일: 2026년 3월

- 2026년부터 모국에 돌아온 동포 청년들의 학업·취업·정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합니다.
- 국내에서 학업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에게는 어학연수비, 등록금, 장학금을 제공하고, 취업·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직업훈련생에게는 취업교육·직업훈련과 초기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044-203-7217

2026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 ▶ 정부에서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약 및 국정과제(101-3번) :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 ▶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2025. 7. 29.)”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배경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주요내용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기타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 무상 지원
※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 (2025년) 5세 → (2026년) 4~5세

시행일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044-203-6525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 ▶ 그간 학교는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 ▶ 이에, 2026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학생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교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 간 연계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예시〉 기초학력 부족, 심리·정서 불안 등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에게 학력향상 멘토링(학교), 종합심리검사 지원(Wee센터) 등 맞춤형 지원

- ▶ 아울러,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층적 어려움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지역별 학생지원 기관 현황 등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www.kedi.re.kr/studentsupport)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추진배경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별 특성·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지원 필요

주요내용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의 특성·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내 지원사업, 교육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지원 실시

시행일

2026년 3월(『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6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합니다.

- ▶ 2026년부터 등록금 대출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또한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구분		기준	개선
학부생	등록금 대출	9구간 이하	전 구간(10구간)
	생활비 대출	8구간 이하	(좌동)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4구간 이하	전 구간(10구간)
	생활비 대출	4구간 이하	6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추진배경

재학 중 상환 부담이 없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

주요내용

- 학부생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 (기준) 9구간 이하 → (개선) 전 구간(10구간 이하)
-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 (기준) 4구간 이하 → (개선) 전 구간(10구간 이하)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 (기준) 4구간 이하 → (개선) 6구간 이하

시행일

2026년 1월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044-203-6607

**2026학년도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학생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바우처 등)’을 지급하여 수강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중 한 과목 이상 무상 수강 가능한 수준, 시도별로 지원 금액·방식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 학생들이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및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강사 검증을 강화합니다.

그간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초등돌봄을 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 돌봄·교육 체제인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보완·발전시켜, 더욱 질 높은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 학교에서는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웠던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추진배경

정규수업 외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제공하여 각자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반전 계기 마련 필요

주요내용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희망하는 초3에게 지원
- 온동네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 학교 중심 방식에서 온 사회가 협력 방식으로 개선
※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

시행일

2026년 3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 ☎ 02-2100-6375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 ▶ 정부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이 높아져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5년(요금 12,180원)

2026년(요금 12,79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분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나	75% ~ 120%	60%	40%	
다	120% ~ 150%	30%	20%	
라	150% ~ 200%	15%	10%	
마	200% 초과	-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80%	(다자녀)
나	75% ~ 120%	60%	50%	10%
다	120% ~ 150%	30%	25%	(인구감소 지역) 5%
라	150% ~ 250%	15%	10%	
마	250% 초과	-	-	-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250% 이하 가구로 확대

- ▶ 영아돌봄수당을 인상(시간당 1,500원→2,000원)하고, 유아돌봄수당을 신설(시간당 1,000원)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새로 시행됩니다.

- ▶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일정 기준을 갖춘 뒤 시·군·구에 자율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배경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 영아돌봄수당(시간 당 1,500원→2,000원) 인상, 유아돌봄수당(시간 당 1,000원) 신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시행일

2026년 1월 1일(자격제 및 등록제는 2026년 4월 23일 예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월 5~10만원에서 월 10만원, 학용품비를 연 9.3만원에서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추진배경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훌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소득기준: (2025.) 중위소득 63% 이하 → (2026.) 65% 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2025.) 월 5~10만원 → (2026.) 월 10만원
 - 학용품비: (2025.) 연 9.3만원 → (2026.) 연 10만원
-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2025.) 자녀 3명 이상 → (2026.) 자녀 2명 이상

* 다자녀 가구 혜택 : 월 4.17% 소득환산 적용 자동차의 요건이 '2,000cc 미만 자동차'이나
다자녀 가구일 경우 '2,500cc 미만 7인승 자동차'까지 완화·적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행

성평등가족부 성형평성기획과 ☎ 02-2100-6144

2026년부터 청년세대의 관점을 반영한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별 인식격차 완화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성불평등 관련 의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공론화 및 숙의를 거쳐 정책대안을 도출·제안할 수 있는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학교·채용·직장생활 등 영역별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행

추진배경

청년이 성별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온라인 밖 청년 남녀 간 상호 이해·소통 계기 확대

주요내용

-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 성불평등 의제에 대해 청년세대가 직접 공론화 및 숙의를 통해 정책대안을 도출·제안하는 논의의 장 운영
- (성별불평등 개선)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정책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

시행일

2026년 1월(예정)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02-2100-6162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등 피해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 ▶ 2025년 고도화 작업을 통해 개선된 삭제지원시스템*과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으로 지원 효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AI 기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추적, 삭제요청 자동화 등 시스템 고도화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 행위 및 성착취물 자동 탐지·신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추진배경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빠르게 진화·확산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 효율적 대응 요구

주요내용

- (인력 증원)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인력 증원
* (2025.) 중앙 33명, 지역 15개소(개소당 2명) → (2026.) 중앙 43명, 지역 16개소(개소당 3명)
- (센터 간 협업) 삭제지원 등 지원 환황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양방향 온라인 협업 게시판 운영
- (시스템 고도화) 개선된 삭제지원시스템과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

시행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2026년 4월 운영 예정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48, 6449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 ▶ 2026년부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 ▶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학업, 진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착취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추진배경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에 기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청소년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후 퇴소한 자
- (지원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최장 12개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법률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8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자립·주거·법률 지원이 강화됩니다.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추정자 포함)에게 진단검사비 30만원(1인당)을 신규 지원합니다.
* 지원인원 : 300명
-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을 326호에서 346호까지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2025.) 4.92억원 → (2026.) 6.32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법률지원 강화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시설입소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진단검사비 지원
- (신규) 진단검사비 1인당 30만원, 총 300명분 지원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2025.) 326호, 보증금 1,100만원까지 → (2026.) 346호, 보증금 1,200만원까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 확대
- (2025.) 4.92억원 → (2026.) 6.32억원 (1.4억원 증)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8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LH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025년 9월부터 LH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시설 최소이용기간(2년) 없이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절차가 복잡하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플러스(apply.lh.or.kr) 누리집
- ▶ LH공공임대주택 계약자를 위한 입주지원금, 임대보증금, 생활안정 패키지, 주택청약저축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추진배경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퇴소청소년에게 LH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지원요건 완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우선공급하는 LH공공임대주택 중 건설·매입·전세임대 유형의 지원요건에서 시설 최소 이용기간(2년) 삭제
- (신청절차 간소화) 청소년이 원하는 공공임대주택(매입, 전세, 건설)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플러스(apply.lh.or.kr) 기능개선
- (생활지원) 민관협업을 통해 LH공공임대주택 계약자를 위한 입주지원금, 임대보증금, 생활안정 패키지, 주택청약저축 등 지원

시행일

2025년 9월 23일(계속)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

☎ 032-585-3280

모국에 귀환한 동포 청년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학업과 취업·정착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 ▶ 국내 학업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에게는 △어학연수비 △등록금 △장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 ▶ 국내 취업·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직업훈련생에게는 △취업교육·직업훈련 △초기정착금을 제공합니다.

2026년도 국내 대학(원)에 수학 예정인 국내·외 동포가 대상이며,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재외동포청 누리집>보도자료>“2026년 재외동포청 예산안 1,092억원 편성”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추진배경

동포청년 인재 국내 유치 및 정착지원을 통한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자 육성

주요내용

- 동포 대학(원)생 대상 ▲어학연수비 ▲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국내 학업 지원
- 동포 직업훈련생 대상 ▲취업 교육·훈련 ▲초기정착금 등 국내 취업·정착 지원

시행일

2026년 3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01. 국가보훈부

자세한 내용은 p.079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 (변경)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도 2026년부터 2025년 대비 5만원 인상된 15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0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082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됩니다.
- 월 최대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76만 5천원 → 82만 1천원
 - 4인 가구: 195만 1천원 → 207만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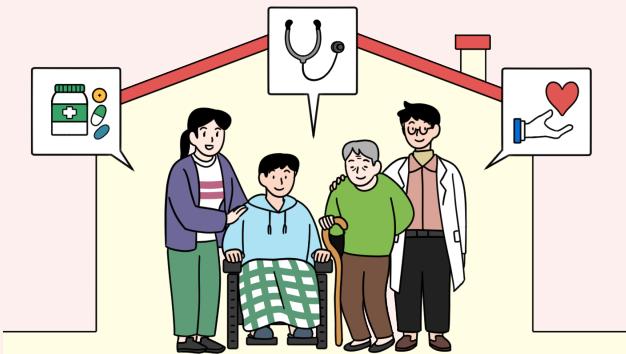
0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083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영위가 가능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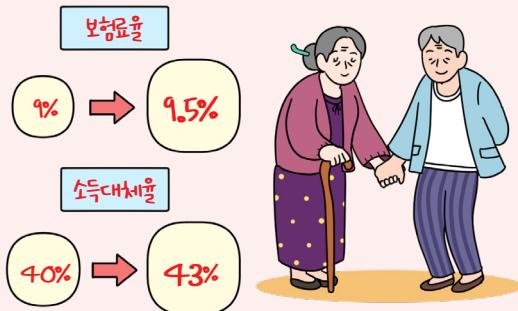
04.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084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됩니다.
 - (기준) 보험료율 9%, 명목소득대체율 40%
 - (변경) 보험료율 9.5%, 명목소득대체율 43%(일시 인상)



05.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085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 군 복무: 6개월 → 12개월

- 출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추가 지원(50개월 상한) → 첫째·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추가 지원(상한 폐지)



0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09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를 부담합니다.
- 파업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각자의 귀책과 기여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합리적 책임만 부담하도록 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시행일: 2026년 1월

- 상시근로자 수 50인~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중증남성 35만원 / 중증여성 45만원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평가 내용·범위가 동일한 7개 일학습병행자격 종목에 대해, 해당 일학습병행 합격자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합격자로 인정합니다.
- 일학습병행 종목의 외부평가에 응시해 필수능력단위를 100% 합격하면, 일학습병행 자격 및 기능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을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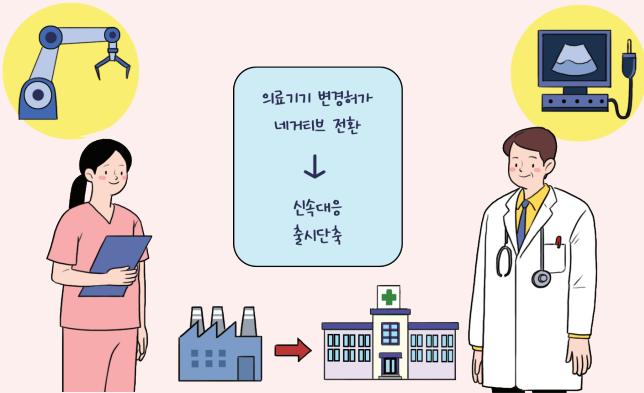
09.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21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시행일: 2026년 12월

- 의료기기 변경허가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고, 그 외 변경은 기업이 자발적 평가·관리합니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044-202-5412

이제 참전유공자 배우자께서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그간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 등*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유족
- ▶ 그러나 참전유공자법을 개정(2025.9.16.)하여 2026년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이상 중위소득 50%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2026년 생계지원금은 2025년 대비 5만원 인상된 15만원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께서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보도자료>“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배경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이후 보훈지원이 중단되면서 훌로 남겨진 고령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발생

주요내용

- (지급대상)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지급내용) 월 15만원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044-202-5420

**재해부상군경(사망한 경우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 2012년 7월 1일 보훈보상대상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약 3,860여명이 새롭게 부양가족수당을 수급하게 됩니다.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추진배경

가족을 부양하는 상이등급 7급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지급요건 중 상이등급 기준 완화 (상이등급 6급 → 7급)

시행일

2026년 1월 1일(2026년 1월 보훈급여금 지급일인 1. 15.부터 지급)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044-202-542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 49곳] 상급종합병원(47), 국군수도·경찰병원 [확대 140곳] 기존(49) + 보훈병원(5), 종합병원급 위탁병원(86)

- ▶ 기존에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감이 컸지만, 이제는 거주지 근처의 위탁병원에서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 단계를 건너뛰고 신속하게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어, 유공자 등록에 걸리는 소요기간이 줄어듭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보도자료>“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로 신체검사 접근성 강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활성화

추진배경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신체검사 접근성 강화 및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활용 확대 추진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뿐만 아니라 보훈병원과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에서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49곳 → 140곳)
-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 제출 시 신체검사 생략으로 민원 편의 제고 및 등록소요기간 단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되어 국민의 복지 기준선이 높아집니다.

*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적용한 월 선정기준액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원을 최초로 넘어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1인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액 ('25년) 76만 5천원 → ('26년) 82만 1천원

4인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액 ('25년) 195만 1천원 → ('26년) 207만 8천원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추진배경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국정과제 77)

주요내용

- (기준 중위소득) 2026년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
- (1인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만 1천원 수급 가능(5만 5천원 인상)
- (4인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207만 8천원 수급 가능(12만 7천원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 044-202-3033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4. 3. 공포, 26. 3. 시행)
시행으로,

-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자이며,

- ▶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 등 국민이 복지를 넘어 의료·돌봄까지 누리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 개요

추진배경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주요내용

- (대상자)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절차) ①신청 → ②조사·종합판정 → ③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④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 ⑤모니터링
- (지원내용)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 지원 등),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01

국민연금법 개정안(25. 4. 공포, 26. 1. 시행)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13%)되고, 명목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됩니다.

- ▶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추진배경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 추진

주요내용

-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2025년 41.5%, 2028년 40% 도달 예정)

- (개정) 보험료율 13%(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소득대체율 43%(2026년~)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1

군 복무, 출산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 ▶ (군 복무 크레딧) 추가 산입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인정기간	6개월	최대 12개월*

*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

* 2026. 1. 1. 이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 ▶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은 폐지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첫째	–	12개월
둘째	12개월	12개월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	1명당 18개월
상한	50개월	폐지

* 2026. 1. 1. 이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추진배경

사회적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주요내용

- 출산·군 복무크레딧 확대
 - (군복무 크레딧) 인정 가입기간을 6개월 →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
 - (출산크레딧)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추가 지원(50개월 상한)
 - 첫째·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추가 지원(상한 폐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044-202-2828

2026년부터 국민의 건강 보장권 향상을 위해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신규 도입됩니다.

- ▶ 2026년 1월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56세,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 ▶ 향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종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폐기능검사 국가검진 도입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배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조기발견 필요성 제기

*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저조

주요내용

2026년 1월부터 56세,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실시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 044-202-3702, 3703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 ▶ (전담 지원체계 구축)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기관이 지정됩니다.
- ▶ (조기 발굴체계 도입)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과 전담 지원기관 간 상시 발굴·지원 연계 체계가 마련됩니다.
- ▶ (위기아동·청년 지원 강화) 전담 지원기관에서 일상회복 서비스 등 욕구에 따른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체계 마련 추진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

추진배경

위기아동·청년 체계적 지원을 통해 본인의 자립과 성장 도모

주요내용

- 위기아동·청년 지원 근거 마련
- (전담조직 지정·위탁)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정·위탁
- (조기 발굴체계 도입)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전담조직으로 연계
- (맞춤형 지원 강화)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욕구와 필요에 따른 밀착 사례관리 지원 제공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61

2026년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하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운영합니다.

-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 징후가 보이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과 연계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 ▶ 2025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6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 150여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 개요

추진배경

국민 먹거리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원 한도)
- (지원장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및 마켓 등에 코너 설치
- (이용절차) 처음 방문시 그냥드림 → 2차 이용시 의무 상담 및 복지연계

시행일

(시범사업) 2025년 12월 1일, (본사업) 2026년 5월 1일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044-201-6962

그간 기초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했으나 2025년 11월 21일부터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 ▶ 자녀가 19세 미만이며 2자녀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에 지원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에도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 2025년 말까지 신청했던 가구는 2026년 5월말까지 사용하면 되고, 2026년 사업 신청은 2026년 6월경 받을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지급

추진배경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는 가구수가 많아 에너지비용 부담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시 우선 고려 필요

주요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평균 36.7만원*, 사용기간은 2026년 5월까지
*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가구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 2명 이상 포함 가구
- (지원가구) 최대 2만 가구

시행일

(다자녀 가구 추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발급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 044-202-7609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격차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추진배경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해소

주요내용

-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배상의무자별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에 따라 형평에 맞게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결정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2026년 1월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사업주의 점진적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원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부터 지원).
- ▶ 지원 금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인원에 대하여 최장 1년간 지급

구분	중증남성	중증여성
월별 지급단가	35만원	45만원

* 단,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만 포함)의 60%를 비교, 낮은 금액 지급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추진배경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 등 점진적 고용 개선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제외
- (지원수준)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45만원 지급

시행일

2026년 1월

* 지급시스템 개발 일정으로 신청시기는 별도 공고 예정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 044-202-7309

2026년 1월 1일부터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을 연계(7개 종목 간)하여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합니다.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

- ▶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관련 유사 종목*의 기능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을 위해 중복으로 학습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자격	국가기술자격(과정개발자격)
냉동공조설치_L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과_L2	제과기능사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건설용크레인조종_L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취득 연계

추진배경

일학습병행자격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에서 유사 동등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주요내용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평가내용·범위가 동일한 일학습병행자격 7개 종목 합격자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합격자로 인정
- 일학습병행 관련 종목의 외부평가 응시 후 필수능력단위 100% 합격시 일학습병행 자격 및 기능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동시 부여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3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으로 단축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추진배경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기회 확대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주요내용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임금 감소 없이 단축
-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시행일

2026년 1월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7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

(개선)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현재)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

- ▶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추진배경

육아휴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연장
- 대체인력지원금 일부 사후지급 방식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
-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1,7045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을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22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시〉주 40시간, 월통상임금 220만원근로자가주 30시간으로 단축 사: 220만원 × (30/40) = 급여액 55만원
- ▶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 ×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 단축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배경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주요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을 월 220만원 기준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단축비율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단축비율

시행일

2026년 1월 1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55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 시행

주요내용

- 202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을 통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 기존에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변경 내용

구분	현재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월 60만원, 최대 6개월

고용24(www.work24.go.kr)>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확대

추진배경

저소득 참여자의 취업활동을 장려하고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인상 추진

주요내용

저소득 구직자(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가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월

* 2025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60만원 인상분 적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66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합니다.

- 특히, 비수도권을 일반지역·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합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구분	2025년		2026년	
	수도권	비수도권	모든 업종	모든 청년
유형	유형I	유형II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사업주 지원 (청년1인당)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청년 지원	-	2년간 48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2년간 480 / 600 / 72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 / 150 / 180만원)

개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추진배경

비수도권 청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 청년

· 지원 수준

-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 *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예정)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7462

2026년부터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 정부는 법정 정년 전 조기퇴직 경향 등 50대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을 위해 경력설계→직업훈련·일경험→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직업훈련·일경험 수료 후 제조·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한 50+ 중장년에게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용센터 및 고용24 통해 신청 가능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지원

추진배경

2024년 이후 2차 베이비부머 퇴직 본격화,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 52.9세, 50대 고용률 지속 하락추세 등 50대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장기근속을 유인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제조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중장년 훈련 및 일경험을 수료한 50세 이상 중장년
 -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경력지원제
- (취업업종) 제조업·운수창고업
- (지원수준)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인원) 1,000명

시행일

2026년 1월 1일(6개월 근속일 기산 시점 기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7463

2026년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 2025년까지 정년 연장·폐지 또는 1년 이상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에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 ▶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배경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중장년 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개편 추진

주요내용

· (지방 우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26년}

· (세대상생 고용 우대) 60세 이상 정년도래자 계속고용과 함께 세대간 상생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증정기 과제}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 044-202-7578, 7573

'26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됩니다.

- ▶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 주요 내용

구분	이전(2023년)	2026년 이후
지급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30인 미만 기업
지원 금액(월)	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 50만원
	그 외	· 30만원
지원 요건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정규직으로 전환·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후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60만원
지급 기간	· 정규직 전환 이행 후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 40만원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안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 재개

추진배경

비정규직 규모 증가 및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지속에 따른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 필요

주요내용

- (지급 대상) 30인 미만 기업
- (지원금액) 60만원(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1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①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의 약자로 기술이 특별한 명장 ②‘기특하다’라는 뜻으로 청소년·청년들이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미

- ▶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협회장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 ▶ 학생회원은 ①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多수, 高수준), ③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또는 ①~③ 상응하는 역량보유자가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추천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추진배경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명장(기특한명장)으로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

주요내용

- (심사·시상) 보유역량, 잠재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여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 행사를 통해 시상
* (기술회원) 기특한명장 증서 수여
* (학생회원) 기특한명장 증서 및 장관상 수여
- (우대사항)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멘티제 운영 등
- (진로특강 참여) 기특한명장 인력풀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학교에서 진로 특강 신청

시행일

2025년 12월부터 시행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산업현장에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이하 “혼합기 등”이라 한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혼합기 등은 시행일 이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 2026년 6월 26일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경우
 1. 2013. 3. 1. 전: 2026. 6. 26. ~ 2026. 12. 25.
 2. 2013. 3. 1. ~ 2023. 6. 26.: 2026. 6. 26. ~ 2027. 6. 25.
 3. 2023. 6. 27. ~ 2026. 6. 25.: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
 - ▶ 혼합기 등의 안전검사는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현행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추진배경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단계에서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 확인 필요

주요내용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044-202-8969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 ▶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 ▶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발 → 소방용품 승인정보 → 소방용품 성능인증 승인정보(방염류/방화포)

개정된(2025. 9.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는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성능인증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추진배경

용접·용단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중 하나인 용접방화포 사용기준 강화

주요내용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해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26년 3월 2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044-202-8971

MSDS 제도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됩니다.

- ▶ 2021년 1월 16일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는 당시 이미 제조·수입 중이던 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026년 1월 16일에는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 이상: 2022. 1. 16.,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 1. 16.,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 1. 16.,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 1. 16., ▲1톤 미만: 2026. 1. 16.

- ▶ 원료 제조·수입품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함께 종료됩니다.

* 원료 업체에서 제공받은 MSDS로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 ▶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은 유예기간 종료 전(2026. 1. 16.)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6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MSDS 대상 물질은 MSDS를 작성·제출하여(MSDS에 제출번호 기재),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11조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종료

추진배경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2026년 1월 16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종료

만료일

2026년 1월 16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중증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지원고용 훈련참여 여건 마련을 위하여 2026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수당을 인상합니다.

- ▶ 6일 이상 지원고용 훈련 참여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40,000원과, 1일당 훈련비 18,000원을 통합하여 1일당 35,000원으로 상향 지급
- ▶ (비교) 기본 훈련 일수 16일 기준으로 [기준] 328,000원 → [변경] 560,000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개편내용

구분	현행 지급방식	개선 지급방식
훈련수당(훈련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이상 훈련 참여 시 훈련준비금 40,000원 지급(1회)· 훈련비 지급(18,000원/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준비금 삭제 및 훈련 일비 35,000원 지급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인상

추진배경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중증장애인 훈련생의 참여 유인강화 및 안정적인 훈련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인상 추진

주요내용

(훈련수당 인상) 6일 이상 참여시 1회성으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삭제, 훈련수당(일비) 18,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저소득층 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자속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합니다.

- ▶ 구직촉진수당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추진배경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업참여 유인확대 및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정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수당 확대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장애인 중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전년대비 월 10만원 인상)
- (지원방법)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지원금 지급
※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응시,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
- (지원규모) 3,000명

시행일

2026년 1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 ▶ (사업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 인증을 받으면 시설설치비 지원(최대 15억)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 (지원 내용)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 분야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브랜드 개발, 패키지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추진배경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마케팅 지원 통한 매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 (지원방법) 누리집 모집공고 통해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선정기준) 정량·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지원항목) 브랜드 개발, 품질·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 등 마케팅·홍보 분야
- (신청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시행일

2026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명단공표 제외 요건을 개선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용 이행 여부에 따른 공표를 강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구분하여 공표합니다.

- ▶ (제외 요건 개선) 명단공표 기준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제외 요건 없이 공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등 현장 부담이 큰 절차를 폐지합니다.
- ▶ (공표 체계 정비)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하며,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하여 공표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의 복잡한 제외 요건과 불필요한 서류 부담 개선 및 공표의 실효성 제고 필요

주요내용

- (제외 요건 정비) 명단공표 기준인원 달성 시 제외 요건 없이 공표 제외, 불이행 해소계획서 및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폐지 등
- (구분 공표 등) 신규 채용 조건 미충족 시 다음 연도 공표 실시, 3회 이상 연속 공표 및 장애인 고용인원 0명 기업의 구분 공표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경계선 지능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제공합니다.

* IQ 71~84에 해당하여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적응 능력이 다소 제한됨(전체 인구 중 13.6% 추정)

- ▶ 2026년에는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 ▶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신설

추진배경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직업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

주요내용

- (지원대상) 경계선지능청년(20~39세) 200명
- (지원내용) 사업 희망하는 지자체 선정하여 발굴, 상담 및 참여자 특성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 (지원수준) 프로그램 참여시 참여수당 1인 20만원 지급

시행일

2026년 3월(잠정)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7, 7430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팀을 선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합니다.

-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으로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균 2천만원~5천만원 규모의 차등 지원 구조로 운영됩니다.
- ▶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창업지원기관을 선정, 상시적·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개요

추진배경

초기창업·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창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정비해 사회적기업 인증전환과 지속성장 추진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500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서 신청
- (운영체계) 전국 17개 권역지원기관(지역기반 일반창업)과 3개 업종 특화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7426

사회적기업 등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를 기여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 ▶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상품에 적용되며,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이차보전사업 개요

추진배경 사회적기업 등의 금융비용(대출) 경감(이차보전)을 통한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주요내용

- (이차보전 금리)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대출금리 중 2.5%p 지원
- (대출자금 용도) 사업 확대를 위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시행일 2026년 2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7429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 ▶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여, 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과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개요

추진배경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추진

주요내용

- (사업 내용)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2개 전략사업
 -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등이 민간지원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직업훈련, 멘토링, 채용 등을 제공
 - (통합돌봄) 사회적기업 등이 지자체, 민간지원기관 및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수요를 파악, 맞춤형 돌봄·심리지원 등 제공
- (지원 방식) 비수도권 지자체 공모 선정(14개) 및 매칭 지원(고용부 70%, 광역지자체 30%)

시행일

2026년 2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2, 7426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보상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환산하고 그 성과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개요

추진배경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성과 보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 확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 (사업 내용) SVI 양호 등급 이상 평가 기업 우선 선정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그 일부를 사업비로 지원
 - (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로 차등 상한 적용(+5% 우대)
 - (지원 방식) 매칭 지원(고용부 50%, 광역지자체 50%)

시행일

2026년 2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9/7431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회적기업은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SVI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인건비 지원 개요

구분	SVI 평가 탁월기업	SVI 평가 우수기업	일반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 지원요건은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SVI(Social Value Index) 평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배경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양질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

주요내용

-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수준)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월 50~90만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3년(기본 2년 + 1년(SVI평가 우수 이상))
- (지원규모) 年 5,000여명 예상

시행일

2026년 1~2월 중 공모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다양성) 교육 확대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 02-2100-6615

민간부문 성별 다양성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기업 CEO·인사담당자 대상 다양성(DEI)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인식변화와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인사 제도 등 총괄 책임을 지닌 CEO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자원 등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합니다.

- ▶ 조직 문화가 다양한 기업 규모, 직종(인사실무자·중간관리자·CEO 등) 별로 맞춤형 심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 ▶ 또한, 중소기업의 교육 참여 제고를 위해 “교육 이수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연장 심사 시 가점(3점)”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확대·개선

추진배경

전문인력, 자원 등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심 HR관계자 및 CEO 대상 다양성 제고 교육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 성별 다양성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확산 필요

주요내용

- 민간기업 CEO·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교육 확대
 - (중소기업 참여 확대) (2025년) 360개사 → (2026년) 450개사
 - (교육 확산) CEO 대상 교육 확대 실시, 홍보·네트워킹 지원 담당 자문단(ChangeMakers) 통한 다양성 교육 확산
 - (맞춤형 교육) 기업 규모·업종·직급별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 시행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9

2026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 및 시·군·구의 참여위원회 등 지역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운영을 지원합니다.

2026년 예산에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예산을 5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지역 참여기구 간 관계망(네트워크) 형성,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025년) 3.21억원 → (2026년) 8.25억원(+5.04억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 필요

주요내용

시·도 및 시·군·구 참여위원회 국비 지원으로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청소년 시설 급식 단가 인상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250
☎ 02-2100-6278
☎ 02-2100-6319

청소년들에게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시설의 급식 단가를 인상합니다.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 시설의 급식비 최소 단가를 1인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최소 단가 이상으로 급식비 차율 편성 가능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 인상

추진배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영양과 균형을 갖춘 양질의 급식 제공 필요

주요내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5천원 → 6천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전국 355개소 /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운영기관 문의
 - ☞ 운영기관 찾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www.youth.go.kr/yaca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교육·진로·자립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
 - 운영현황: 전국 222개소 / 이용방법: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카카오톡 등) 문의
 - ☞ 운영기관 찾기: 청소년1388 누리집 www.1388.go.kr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생활지원, 상담, 학업복귀, 취·창업,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 사전 예방과
가정·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지원
 - 운영현황: 청소년쉼터 전국 137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 / 이용방법: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카카오톡 등) 문의
 - ☞ 운영기관 찾기: 청소년1388 누리집 www.1388.go.kr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51-773-5743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전용계좌를 신설하고 압류를 금지하는 「선원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한 송환비용, 송환수당, 식료품, 물, 연료, 의료지원 등

- ▶ 정부기관의 각종 압류방지 수당의 전용상품인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대상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권자가 추가됩니다.
 - ▶ 선원들은 유기구제비용등이 적용된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입금하도록 지급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152조).
- *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행복지킴이통장 유기구제비용 추가운영 수요조사 중(11~12월)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추진배경

「선원법」 일부 개정(2026. 3. 17. 시행)을 통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 신설

주요내용

- 행복지킴이 통장에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 보험금 수급권자 추가
- 유기구제비용 보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지급권자에게 신청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051-773-6232

그간 내항선에 승선하는 선원 중 내국인 선원만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동시통역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선원도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연안~100km까지 전담의료진이 화상통화 형식으로 만성질환 등에 대한 건강상담 또는 부상 시 응급처치 지원

- ▶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인도네이사어 등 다양한 언어(20개국)로 자유롭게 전담의료진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 ▶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24시간 제공됩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연안 항해 선박에 언제나 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잠정)”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내항선원의 다수가 외국인 선원인 점을 고려하여, 국내선원 위주의 상담체계를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

주요내용 · 연안~100km까지 국내선원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선원도 부담 없이 전담의료진의 건강상담, 응급처치지원 서비스 이용
· 모든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24시간 제공

시행일 2026년 5월(잠정)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54

최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의료현장 등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의료기기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에는 기업 책임하에 주도적 변경·관리가 가능합니다.

안전 우려 등 꼭 필요한 사항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료현장 및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추진배경

의료기기의 다양한 기술 요구 및 시장 선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 사전 변경허가 제도로 충족 어려움

주요내용

- (변경관리) '중대 변경 사항*' 외에는 사전 변경허가 없이 업체 스스로 변경·관리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제조소 소재지 변경·추가, 모양 및 구조, 원리, 원자료, 제조방법,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책임성 부여) 최초 허가 신청 시 변경에 대한 1)자체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제출하고, 이에 따라2)변경사항 기록·관리 등 준수

시행일

2026년 12월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 ☎ 043-719-2824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을 확대를 추진해 환자의 치료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 긴급도입은 국내허가 없이 해외에서만 허가·판매되는 의약품의 의료필수성, 해외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결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직접 의료기관 및 약국에 수입·유통하는 사업입니다.
- ▶ 그간 환자가 직접 자가치료용 의약품으로 구매해온 품목 중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추진배경

환자 비용부담 완화 및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 보장 위한 자가치료용 의약품 긴급도입 의약품으로의 전환 추진

주요내용

- 긴급도입은 해외허가 판매 의약품의 의료필수성, 해외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결정하고 센터에서 직접 의료현장에 수입·유통하는 사업
-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구매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하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

시행일

2026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주문생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

☎ 043-719-2825

정부가 추진하는 주문생산 제도 확대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강화하겠습니다.

- ▶ 정부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고 안정공급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시장기능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제약사 생산을 지원하는 주문생산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 2026년부터 공급중단 이력이 있고 보건의료상 필수성이 높은 품목 중 신속 사업진행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주문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고>"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공고"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

추진배경

필수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주문생산) 채산성 사유로 공급 중단된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국내 제약사와 협의하여 센터에서 생산의뢰 및 구매·유통하는 사업
- (추진방향) 공급중단 이력이 있고 보건의료상 필수성이 높은 품목 중에 신속 사업진행이 가능한 품목을 주문생산으로 우선 추진

시행일

2026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10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병원체 관련 품질시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전남 화순)의 고위험병원체 취급 장비·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2026년 1월부터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업체에 코로나19·원숭이두창 등 백신에 대한 품질시험·분석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 이러한 서비스 확대로 고위험 감염병 백신의 제품화가 가속화되어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최근 신·변종 감염병 지속 출현에 따라 대응을 위한 국내 백신 연구·개발 관련 업체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지원 필요

주요내용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 운영

시행일

2026년 1월(예정)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043-719-3351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천연물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2026년 1월부터 운영됩니다.

- ▶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천연물의약품의 품질검사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춘 품질검사 연구실, 개방형시험실 및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며,
- ▶ 천연물의약품의 안전·품질확보를 위한 검사·연구, 시험법 개발, 관리 지원 및 국내외 규제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통한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국내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추진배경

천연물 유래 의약품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

주요내용

-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검사·연구
- 천연물의약품에 관한 국제기준·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등의 정보 수집·분석·제공
-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시행일

2026년 1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12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수출규제 장벽에 대응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 ▶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안전성 평가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에 앞서 2026년부터 제도 도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 ▶ 이에 2026년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안전성 정보 DB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화장품 업계가 안전성 평가 제도 전 주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화장품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배경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수출규제 장벽에 대응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및 전 단계 업계 지원체계* 구축

* (제품 개발)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DB 구축

* (판매 전) ①제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상담창구 운영, ②국내 안전성 평가 실시 정보·인력 기반 조성

* (판매 후) 제품 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안전정보 관리체계 구축

*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전문기관 운영

시행일

·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025년 12월 법적근거 마련,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전주기(개발~판매) 업계 지원체계 구축(2026년 1월~)

화장품 할랄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03

K-화장품의 할랄*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화장품 할랄인증을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 * 할랄: 이슬람교 경전에 따라 만들고 먹고 쓰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중소업체가 대다수인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규제정보 수집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할랄 화장품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 기존의 컨설팅 제도를 더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내실화*하고, 규제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MRA)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수강자 수준에 따른 초·중·고급 과정의 단계별 교육, 국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국가별 할랄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
 - ▶ 이를 통해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할랄 관련 규제 이해도를 높여 K-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장품 할랄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배경

중소업체가 대다수인 화장품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에 수출국 규제정보 수집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주요내용

할랄 인증 관련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 및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MRA) 확대 지원 추진 등 할랄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시행일

2026년 4월

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61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 지정하고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진단·치료에 필요하나 국내 허가·판매되지 않는 의료기를 식약처가 지정하고, 한국의료기기정보원에서 직접 전국 의료기관과 환자에 수입·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 2026년부터 국내 공급중단 예정된 의료기를 신속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이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빠르게 제공하여, 환자들의 적기 치료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함께 의료기기>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주요 사업>안전>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추진배경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속 지정 절차 개선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적기 치료기회 보장

주요내용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는 국내 허가·판매되지 않는 의료기를 식약처가 지정하고, 한국의료기기정보원에서 직접 전국 의료기관과 환자에 수입·공급하는 사업
- 공급중단 예정된 의료기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속 지정 및 품목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예정)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 043-719-7671

그간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감염되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이 2026년 1월부터 자가격리 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0호 개정('25.9.8.)

- ▶ 콜레라를 제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 다만, 콜레라는 기준과 동일하게 감염 시에는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이며, 전파위험군*에 대한 일시적 업무·등교(원) 제한조치는 유지됩니다.
*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영·유아 등), 집단급식소 등 식품업객 종사자,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생, 학생 및 교사 등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2026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추진배경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주요내용

(의무입원·격리치료 감염병 정비) 콜레라를 제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종*이
삭제됨에 따라 자가격리 원칙으로 변경, 전파위험군 일시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는 유지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문화·체육·관광

0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34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신설

시행일 : 2026년 2월

- 2026년부터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집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사업이 신설됩니다.
- 지역별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공공체육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자치센터·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생활권 시설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02.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35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22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여권발급수수료는 지난 20년간 인상되지 않아, 국고수입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적자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 ▶ 이에, 2026년 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천원 인상됩니다.

※ 수수료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여권	10년	58면	38,000원	40,000원
		26면	35,000원	37,000원
	5년	58면	33,000원	35,000원
		26면	30,000원	32,000원
	단수여권		15,000원	17,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48,000원	50,000원
여행증명서		23,000원		25,000원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추진배경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

주요내용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시행일

2026년 3월 예정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5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사업*이 2026년부터 신설됩니다.

* 신청 및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운영 예정

- ▶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은 지역별 어르신 수요를 기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자치센터,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프로그램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지역별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신설

추진배경

어르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보급 필요

주요내용

- 지역별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공모 및 우수 기획 사업 선정·지원을 통해 어르신 체육활동 수요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운영
-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자치센터, 스포츠클럽 등 지역 내 시설 및 기관을 통한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제공

시행일

· 2026년 2월 ~ 12월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 044-203-2853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의 구를 제외한 84개 지역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하고, 2027년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 ▶ 지자체가 신청을 통해 지역사랑 휴가 지원 대상을 모집하며, 여행경비의 50%(최대 20만 원 한도)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광객) 사전 신청 → (지자체) 지원 대상자 선정 → (관광객) 여행 완료 인증 및 환급 요청 → (지자체) 심사 후 환급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 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인구감소지역 방문 및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 (사업기간) 2026 시범사업, 2027 본사업 예정
- (사업내용)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
- (사업예산) 6,500백만원(환급지원금 6,000백만원, 운영비 등 500백만원)

추진방식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84개(광역시 소재 구 제외) 중 20개 공모
 - 2026년 시범사업 추진(20개소), 2027년 본사업 추진(단계적 확대)
- (예산구조) 2026년 총지원금 200억원(국비 60억원 + 지방비 140억원)
 - 지자체당 환급지원금 총 10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7억원)
- (환급체계)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여행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단체 20만원 한도, 개인 10만원 한도)

학교체육시설 지역 주민 개방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8

학교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될 경우 시설 이용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면책 규정 등을 담은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됩니다.

- ▶ 학교 현장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시설 파손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 ▶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학교장의 민사책임 면책 내용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 해당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학교체육시설이 지역주민에게 폭넓게 개방되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추진배경

학교체육시설 지역주민 개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이용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민사책임 면책
-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

☎ 044-203-3194

그간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현행법상 최장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이 5월부터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

- ▶ 2026년 5월부터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후 20년 미경과자 및 벌금형 확정 후 10년 미경과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 ▶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이력을 가진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을 통해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보다 안심하고 체육지도를 받는 등 체육계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민체육진흥법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추진배경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인권보호 강화 필요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후 20년 미경과자 및 벌금형 확정 후 10년 미경과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제한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시행일

· (적용 시행) 2026년 5월 12일부터
·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 | ☎ 044-203-2882

치유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5. 4. 8. 공포)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 법 시행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지원 관련 법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성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치유관광산업법』 시행

추진배경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 정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자 등록, 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 마련

시행일

2026년 4월 9일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044-203-2748

그간 자유업이던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이 7월부터 제도권 내에 편입됩니다.

*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 ▶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미술진흥법(2023. 7. 제정)」이 2026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 신고제 시행을 통해 미술시장이 한층 더 투명해지고, 미술업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정책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미술진흥법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추진배경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및 미술시장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미술 서비스업의 제도권 내 편입 필요

주요내용

-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무 규정(→지자체)
- 미술 서비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 승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시행일

2026년 7월 26일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5만원(7.1% 증)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6

2026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5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주요내용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70만 명
- (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5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시행일

- (발급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11월 30일(월)
-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대스탬프투어 대상지 확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051-773-5874

아름다운 등대 홍보 및 해양 관광·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등대스탬프투어 대상 등대가 100개소로 확대됩니다.

- ▶ 현재 78개 등대 대상 여행용 여권(5종) 발매 후, 17만부를 배포하여 많은 국민이 등대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 ▶ 여행 대상 등대 추가 발굴 요청에 따라 일출이 멋진 동해안 등대 22개소로 구성된 신규 등대 여권(1종)을 추가 발행합니다.

등대스탬프투어(도장찍기 여행)를 위한 여권 신규 발매

추진배경

아름다운 등대 홍보와 해양 관광·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등대스탬프투어 대상지 확대 필요

주요내용

· 기존 78개 대상지(등대 여권 5종, 2017~23년 발생) 외 일출이 멋진 등대 22개소를 추가 선정(신규 여권 1종 추가)하여 등대 스탬프 투어 활성화

* 아름다운 등대여권(2017), 역사가 있는 등대여권(2021), 재미있는 등대여권(2022), 풍요의 등대여권(2022, 서해안 등대), 힐링의 등대여권(2023, 남해안 등대)

** 일출이 멋진 등대여권(2026. 1, 동해안 등대)

시행일

2026년 1월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 ☎ 042-481-4964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가 설계·감리 분야까지 확대되고,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정하였으나, 국가유산의 원활한 수리를 위해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책임 대상을 확대합니다.
- ▶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배경 국가유산 수리 수행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함

시행일 2026년 11월 12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

☎ 02-2110-1545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 페이지를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합니다.

- ▶ 기존에는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 ▶ 이번 공표기준 개정으로 사업자가 게재면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측면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해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해당 고시의 개정 상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 누리집>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추진배경

미디어 환경변화 및 사업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추진

주요내용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개정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 신문 게재면*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 (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시행일

2026년 상반기 고시 개정 시부터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환경·에너지·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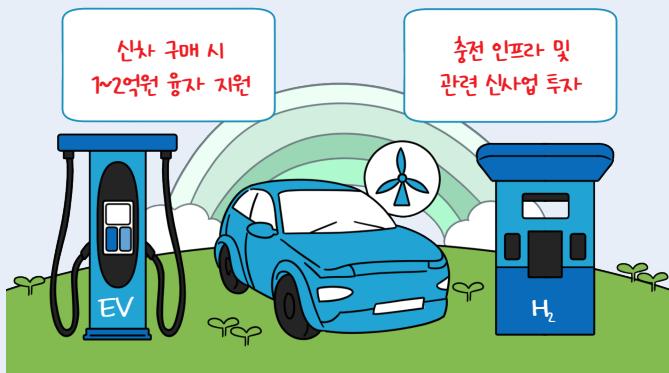
0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49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도입

시행일: (용자) 2026년 3월~(용자 전담기관 선정 후)
(펀드) 2026년 3월~(운용사 선정 후)

-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대당 최대 1~2억원 융자를 지원합니다.
- 전기·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충전 인프라 및 관련 신사업(이동형 충전, 배터리 구독 등)에 투자합니다.



02.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50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

시행일: 2026년 3월~(보험사 선정 후)

-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보장합니다.
-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며, 신차 출고 후 3년 적용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됩니다.
- 민간 의무생산자는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해 생산목표(2026년 10%)를 달성해야 합니다.
-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시행일: 2026년 6월

-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기존 폭염경보보다 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를 도입해 주의보 - 경보 - 중대경보의 3단계 특보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강력한 알림 체계를 운영합니다.
- '야간 더위'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합니다.



05.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165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시행일: 2026년 5월

- 기존 방재역량을 초과할 수 있는 재난성 호우(예: 시간당 100mm급 폭우)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상위 단계의 문자 알림이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로 발송됩니다.
- 누적 강우량, 단시간 강한 강우강도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며, 2026년 5월부터 실제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06.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166

진양 인근 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시행일: 2026년 6월

-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는바, 지진 발생(진양)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2026년부터 진양지 인근 지역에는 조기경보보다 최대 5초 빠른 지진현장경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044-201-6892

전기·수소차 보급을 위해 2026년부터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사의 무공해차 구매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 더불어 충전소 구축·운영, 충전 기술개발 등에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합니다.

※ 2026년 예산: 무공해차 구매 융자 735억원,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74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보도·설명>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융자를 지원해 드립니다”(잠정)

무공해차 구매 융자 및 인프라펀드

추진배경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외 지원수단 다각화 필요

주요내용

- (무공해차 구매 융자)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원 지원(예정)
-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 연계한 충전인프라 프로젝트, 관련분야 신사업(이동형 충전, 배터리구독 등) 프로젝트 등에 투자

시행일

(융자) 2026년 3월~(융자 전담기관 선정 후), (펀드) 2026년 3월~(운용사 선정 후)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044-201-6892

2026년부터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 ▶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준 보험종목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 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 2026년 예산 : 무공해차 안심 보험 2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보도·설명> “전기차 안심하고 타세요...올해부터 전기차 화재 사고당 100억원 한도 내 보상.”(점정)

무공해차 안심 보험

추진배경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불명으로 과실·배상책임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주요내용

- (보장내용)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준 보험종목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손해 보장
※ (면책사항) 전기차 화재가 1차 사고원인이 아닌 경우, 전기차 차주의 고의로 인한 화재(불법 개조 등), 천재지변 등
- (보장한도) 사고 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
- (보장기간) 신차 출고 후 3년 보장

시행일

2026년 3월~(보험사 선정 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33

2026년 1월 1일부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 민간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돈분 80% 이상)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입니다.
- ▶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목표*(2026년 1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야 합니다.
 - 의무생산자는 시설설치 등을 통한 ①직접생산, 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처리 위탁을 통한 ②위탁생산, 바이오가스 ③생산실적 거래 등으로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보도·설명> “**2050년까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80% 바이오가스로 생산한다**”

민간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추진배경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법』 제정·시행(2023. 12)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 2025년 1월 1일, 민간 2026년 1월 1일

주요내용

· 유기성폐자원 발생·처리량 중 일정비율을 생산목표로 부여,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달성 가능,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 ☎ 044-203-5383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2026년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정부가 해상풍력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여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고 인허가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 또한, 계획입지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기후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범부처 해상풍력 거버넌스가 구성·운영됩니다.

또한,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항만·배후시설 및 선박 지원, 실증단지 조성,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도 함께 육성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보도·설명>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잠정)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추진배경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주요내용

- (계획입지 도입)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예비지구 중 환경성, 주민수용성(민관협의회), 경제성 등을 고려해 발전지구 지정
-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의제)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인허가를 의제처리
- (정부 주도) 총리 소속 해상풍력위원회(위원장: 총리, 민간위원 1인)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사무국(추진단) 설치
- (산업진흥)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및 인프라 지원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 (풍황계측기 허가 금지) 2025년 3월 25일 (발전사업허가 금지) 2028년 3월 26일

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044-201-653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2025. 3. 18.)에 따라 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이 2026년 3월 19일부터 강화됩니다.

- ▶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해야 하며,
- ▶ 기후부장관이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한 자 또는 해당 광고를 삭제·수정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 ▶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종업원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를 차단하고, 플랫폼과 인증기업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취소) [2025. 3. 18. 개정]

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 강화

추진배경

환경표지 허위·무단 사용 억제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인증 취득 후 환경 관련 법규위반에도 인증 유지되는 사각지대 해소 필요

주요내용

- (제22조제3항) 사실과 다른 환경표지 등 표시·광고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삭제·수정하도록 의무 부과
- (제22조제4항) 상기 조치 이행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 (제22조제5항) 기후부장관이 무단 사용자 및 미조치 중개업자 공개 가능
- (제23조제1항제2호) 인증자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환경표지 인증 취소 가능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044-201-7631

그간 먹는샘물 용기에는 제품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개별 라벨을 부착했으나,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2026년부터는 무라벨 제품만 생산됩니다.

- ▶ 2026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묽음 판매 제품은 무라벨 제품만 제조합니다.
 - 다만, QR 스캔이 어려운 소매점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간 전환안내기간이 운영됩니다.
 - * 최근 5년간, 묽음 판매 제품은 2020년부터, 낱개 판매 제품은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무라벨을 하용하여 친환경 소비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추진배경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재활용 효율 개선 및 먹는샘물 시장 전반에 대한 친환경 인식 제고

주요내용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묽음 판매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만 제조 가능
-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1년간 전환안내기간 운영
- 병뚜껑 QR코드로 제품 결제, 성분·업소명 및 소재지 등 정보 확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사육곰 농가 곰 사육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4에 따라 기존에 곰을 사육하던 농가들도
2026. 1. 1.부터는 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됩니다.

- ▶ 이를 위반하는 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법 제71조에 따라 소유·사육·증식된 곰은 몰수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제67조(벌칙)

사육곰 농가 곰 사육 금지

추진배경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인 곰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곰 사육 금지 법제화에 따른 응답 채취용 곰 사육 종식

주요내용

- (사육곰 농가 곰 사육 금지) 2026. 1. 1.부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곰을 사육 중이던 농가도 곰 사육·소유·증식이 금지됨

* (야생생물법 개정, '25.1.24 시행)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기존 농가는 2026.1.1.부터 적용) △응답 등 부속물 섭취 금지(2025. 12. 31.까지 적법하게 제조된 경우 섭취·유통 가능), △사육 농가의 안전 조치 의무,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근거 등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및 실적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044-201-7224

2026년 3월부터 기업 등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 후 그 참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도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됩니다.

- ▶ 기업이 법적 근거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실적은 생물다양성 기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여방식) ①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재산·토지 등을 기부하는 방식, ②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한 지역을 기부하는 방식, ③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등
(참여사업 지원) 민관협의체 구성, 사업컨설팅, 실적 인정 등
- ▶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 ▶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기술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체자연조성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2025. 3. 18. 개정]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및 실적 인정

추진배경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

주요내용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방식과 지원 근거 마련
-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 도입,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자연환경복원 대행자 등록제 도입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대기총량허가 신청서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2

그간 '대기총량허가'와 '통합허가' 각 항구에 별도 제출해야 했던 유사한 내용의 신청서류가 일원화됩니다.

- ▶ 2026년 1월부터 대기총량허가 신청 시, 통합허가 신청서류와 유사한 내용의 서류(8종)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장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도 통합하여, 서류접수 창구를 '통합허가시스템'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8조·제9조·제10조 및 별지1, 3, 4호 서식
(2025. 12. 개정)**

대기총량허가 신청서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

추진배경

대기총량제-통합허가제를 동시 적용 받는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간 중복된 서류 및 허가 절차 정비 추진

주요내용

- 대기총량허가 신청 시, 통합허가 신청서류와 내용이 유사한 서류(8종)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사업장 내 시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통합허가시스템"으로 창구 통일

시행일

2026년 1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1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사용의무 대상자는 연간 5천톤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 제품 생산자*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사용하여야 합니다.

*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응진식품, 씨피엘비 주식회사, 스파클 주식회사, (주)동원에프앤비, 동아오츠카(주), 하이트진로음료(주), (주)이마트

- ▶ 또한,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의무율을 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신규 생산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자원재활용법(제33조의3)>같은 법 시행령(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별표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추진배경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 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 경제 사회 구축 필요

주요내용

(의무대상)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91

**그동안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졌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추가합니다.**

- ▶ 자발적 협약(2019~2024)을 통해 플라스틱 재질 완구류의 재활용 여건은 이미 검증되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되면 폐기물부담금이 감면되어 생산자의 부담도 경감됩니다.
- ▶ 버리진 완구류는 회수 후 선별·분쇄·세척 후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어져 건설자재로 재활용됩니다.

완구류 재활용 체계



국민참여입법센터>(부처)입법예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령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추진배경

폐기된 완구류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EPR 대상에 추가

주요내용

(EPR 대상 추가) 플라스틱 완구류*를 EPR 대상에 추가,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여
* 미술공예완구·퍼즐완구·역할놀이 완구·운동 완구·블록완구 등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전자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 044-201-7384

그간 많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형*을 반영하여 전자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개선합니다.

* 이차전지용 양극재·전구체 스크랩, 개인형 이동장치 구동용 배터리 등

- ▶ 전자류 폐기물을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배출자·처리자가 폐기물 취급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하고 취급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2025. 7. 30)”

폐전자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추진배경

폐전자류 분류체계를 최근 많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형을 반영하여 개선을 추진

주요내용

- 전자류 폐기물을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개편된 폐기물 분류체계별로 재활용 가능유형을 정비
* (지정) 3종 → 7종[신설 4종, 조정 1종], (일반) 4종 → 6종[신설 4종, 삭제 2종]
-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리튬계 폐이차전지 등* 추가
* (현행) 전기차 폐배터리 → (추가) 리튬계 폐이차전지, 구동용 폐이차전지

시행일

2025년 12월(예정)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모든 제품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지원단

☎ 044-201-7399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자신이 출고한 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
촉진(「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

- ▶ 제도 대상 의무자는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전용 수거함 설치*,
무상방문수거(1599-0903)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 (2025년) 20,000개 → (2026년) 60,000개 → (2028년) 100,000개
-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거함 및 무상방문수거를 통해 모든 폐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50종
⇒ 확대의류건조기,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보조배터리 등 모든 가전제품
- ▶ 다만, 현행 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연구개발기기 등은 제외됩니다.

기후부 누리집>보도자료>“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2025. 4. 14)”
기후부 누리집>홍보자료>그림자료>카드뉴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25.04.18)”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의무 대상 확대

추진배경

-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체계 고도화, 재활용 기술개발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EPR)으로 정책 전환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처리비용 부과

주요내용

-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의무 대상 기준 50종 ⇒ 개정 전 품목 확대
* 세탁기, 냉장고, TV, 컴퓨터 등 중·대형 기기 50종에 대해 선택적 관리 ⇒ 산업기기, 대형기기,
군수품 등 제외 항목 외 전품목 관리(EU와 동일 수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7511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4. 12. 23. 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적용대상인 5개 시설군(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은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mu\text{g}/\text{m}^3$ 에서 $40\mu\text{g}/\text{m}^3$ 으로 강화됩니다.
- ▶ 이번 강화기준 시행으로 이용자가 오래 머무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보도설명>“일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2026년부터 $40\mu\text{g}/\text{m}^3$ 으로 강화”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추진배경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실내 체류시간 장기화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인식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 저감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강화($50 \rightarrow 40\mu\text{g}/\text{m}^3$)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인 26군 다중이용시설 중 이용자가 오래 머무는 5군 시설 대상으로 강화된 유지기준 적용
 -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 발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051-773-5671

바다 표면적의 2/3을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인 BBNJ 협정이 1월 17일에 발효됩니다.

*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 ▶ 2026년 1월 17일부터는 BBNJ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유전자원을 채집하는 경우 최소 6개월 전에는 BBNJ 협정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BBNJ 협정 발효에 따라 2030년까지 공해 표면의 30%를 목표로 공해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BBNJ 협정 개요 및 주요 내용

개요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공해 등 해양생물다양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주요내용

- (해양유전자원)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형성한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정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공유 의무화
- (구역기반관리수단)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
- (해양환경영향평가)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과 절차 규정
-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개도국을 위한 해양기술이전 및 역량강화 지원 조건과 형태를 규정

시행일

2026년 1월 17일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5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의 장기화·정례화에 따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특보와 차별화된 강력한 알림 체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도입하고, '야간 더위'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합니다.

- ▶ 폭염중대경보는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임계온도(일최고체감온도 등)를 기준으로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 알림 체계입니다.

※ (현행) 폭염주의보-폭염경보 → (변경) 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 ▶ 열대야 주의보는 관련 기상요소와 영향 요소, 특보발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해안지역, 대도시 등) 주의보 기준을 차등 설정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26년 신설) 열대야 주의보

이를 통해, 2026년 여름(6월)부터 전국 시범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난성 폭염 대비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추진배경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성 폭염에 대응

주요내용

- (폭염 중대경보) '온열질환자수'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경보 상위 단계인 '중대경보' 신설,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 폭염특보 체계구축 및 차별화된 알림 체계 운영
- (열대야 주의보) 범정부 차원의 야간 폭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열대야 주의보 신설

시행일

(시범운영) 2026년 6월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3

기존 방재역량을 뛰어넘는 가칭재난성호우(예, 시간당 100mm 강수 등) 대응을 위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상위 단계의 긴급재난문자가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 발송됩니다.

* ① 50mm/h & 90mm/3h 동시관측 또는 ② 72mm/h 관측 시(음·면·동 단위 40dB 일람동반)

※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 → (변경) 호우 긴급재난문자 - 현행 기준 이상 호우시 별도 긴급재난문자(명칭 추후 확정) 추가 발송

- ▶ 누적된 강우량, 짧은 시간 내 강한 강우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량적 기준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재난 현장 주민에게 신설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됩니다.
- ▶ 가칭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의 위험성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 문안과 차별화하여 발송됩니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신설

추진배경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단적 호우로 인한 산사태·침수 등 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기존 방재역량을 뛰어넘는 재난성호우에 대한 방재 대응 강화 필요

주요내용

현행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상위 단계의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

시행일

2026년 5월

진양 인근 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02-2181-0762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는데, 지진 발생(진양)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 진양지 인근 주민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수신 전 ^{5~10초*}에 강한 지진동으로 피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지진 관측 후 최대 10초에 지진통보를 받는다면, 반경 약 35km까지 이미 지진파(S파) 통과
- ▶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추가하여 2026년부터 진양지 인근 지역에는 조기경보보다 최대 5초 빠른 지진현장경보 ^{3~5초*}를 제공합니다.
* 국가 주요시설 대상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 (2025. 10.) 74개 기관 시범 운영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진양 인근 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추진배경

관측망 확충만으로는 지진 통보시간 단축 한계, 진도 기반 2단계 경보체계 도입으로 통보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지진경보 사각지대 감소로 국민의 안전 강화

주요내용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지진조기경보를 2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

* 국가 주요시설 대상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의 경보체계, ('25.10.) 74개 기관 시범서비스

- (1단계: 신설) 진양 인근 강진동 지역에 진도(VI 이상)에 따른 1차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 송출
→ 최초 관측 후 3~5초, 진양기준 40km 반경 국민
- (2단계: 기존) 지진 규모(5.0 이상)에 따른 2차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 송출 → 최초 관측 후 5~10초, 대국민

시행일

2026년 6월

세종·서해도서·수도권 중심 특보구역 세분화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5

기상·지형·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 위험기상 발생지역으로 방재역량 집중을 위해 지자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특보구역을 세분화합니다.

- ▶ 세종시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고, 서해도서와 육지 간의 특보구역을 분리하여 효율적 방재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 (예시) 군산→군산, 어청도 / 부안→부안, 위도 / 인천→인천북부, 인천남부, 인천영종 등

세종·서해도서·수도권 중심 특보구역 세분화

추진배경

위험기상 발생지역으로 방재역량 집중 및 효율적 방재업무 수행 지원 필요

주요내용

세종·서해도서·수도권 등 수요지역을 대상으로 특보구역 세분화를 통해 위험기상 대응 효율화 도모

시행일

2026년 6월

통합 기상가뭄 정보 제공

기상청 수문기상팀

☎ 042-481-7435

단·중·장기 가뭄 상황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강수량 상황과 폭염 등을 반영한 '통합 기상가뭄 정보'를 6월부터 제공합니다.

- ▶ 그동안 기상가뭄 현황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기반의 감시정보만 제공하여 폭염, 단기간의 강수 부족 등 날씨 상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 이에 단기간의 기상정보를 활용한 돌발가뭄 감시정보,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을 반영한 기상가뭄 감시정보 확대 제공 등 종합적 기상가뭄 감시 서비스를 가뭄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수문 기상가뭄정보시스템(hydro.kma.go.kr)에서 제공합니다.

통합 기상가뭄 정보 제공

추진배경

폭염, 단기간의 강수 부족 등 날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 기상가뭄 감시정보 제공 필요

주요내용

- 돌발가뭄 감시정보 시범운영
- 최근 3개월 기상가뭄 감시정보 추가 제공 등 통합 기상가뭄 정보 제공

시행일

- (돌발가뭄 감시정보 시범운영): 2026년 6월
- (통합 기상가뭄 정보 제공) 2026년 6월

실증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제공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 042-481-7484

기후위기 시대, 흔들림 없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기상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 2026년 9월부터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통해 태양광·풍력에너지 맞춤형 관측·분석정보·예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26년은 실증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2027년에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라 영광·신안·군산, 제주, 강원 정선, 경북 경주, 경남 고성 등 11곳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2026년 운영 예정): energy.kma.go.kr

실증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제공

추진배경

날씨에 민감한 태양광·풍력에너지 공급 확대로 발전량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력관리 부담, 대규모 정전사태 등 피해 예방

주요내용

- (발전량 및 수요예측 지원) 일사량·풍력터빈 고도 바람 등 태양광·풍력 에너지 맞춤형 초단기·단기 예측자료를 고해상도로 제공

구분	제공 주기	서비스 요소
초단기	10분 단위 해상도, 10분 간격(144회/1일), 3시간 예측	태양광 일사량(수평면, 경사면), 운량, 기온, 습도 등 풍력 풍력터빈 높이 바람(10, 80, 140, 220m) 등
단기	1시간 단위 해상도, 6시간 간격(4회/1일), 48시간 예측	

- (관리지원) 수요자의 에너지기상 정보 이해향상 및 일사량·풍속 급변동 등 발전위험 기상 예상 시 사전 지원을 위한 요약정보 제공

시행일

- (태양광·풍력 맞춤형 초단기·단기 예측자료 제공): 2026년 9월부터

저고도항공 전용 날씨앱(LAMIS-A) 신규 서비스

항공기상청 예보과 ☎ 032-222-3013

그동안 누리집과 모바일 웹으로만 제공하던 헬기 등 저고도 항공기 맞춤형 기상정보를 모바일에 최적화하여 '저고도항공 전용 날씨 앱'으로 제공합니다.

- ▶ 전용 날씨 앱은 △사용자 중심의 간편 조회 화면 등 사용성 강화, △실시간 자료 갱신 속도 개선, △모바일 UI/UX 최적화, △지도 품질을 향상하여 현장의 활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 ▶ 특히,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 기능을 활용하면 산불 진화·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시 비행 전과 비행 중 필요한 상세 기상정보를 모바일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보도자료>"안전한 헬기운항을 위한 저고도 기상정보, 더 상세하고 똑똑하게 바뀐다"
저고도항공날씨(LAMIS) 플랫폼: <https://global.amo.go.kr/aami/lamis/main>

저고도항공 전용 날씨앱 신규 서비스

추진배경

현장 활용성 확보를 위해 저고도 운항자가 요구하는 고해상도·즉시성·모바일 중심의 기상정보 제공 필요 증가

주요내용

- (저고도 운항자 안전성 강화)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위험기상에 취약한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성 및 경제성 강화
- (주요기능) 실시간 고해상도 정보, 위치 기반 경보, 사용자 맞춤형 정보 등을 통해, 산불 진화·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헬기 등의 비행 전·중 필요한 상세 기상정보를 모바일 화면에서 즉시 확인

시행일

2026년 11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01. 산업통상부

자세한 내용은 p.177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3일

- 동일·유사과제의 심의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
- 특례 유효기간은 종전 최대 2+2년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 최대 3+2년으로 유연하게 부여됩니다.
- 법령정비 의무 강화와 특례 중단 방지 규정으로 사업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산업융합촉진법」개정 시행



02.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183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시행일: 2026년 1분기

- 스타트업이 법률·세무 등의 어려움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K-Startup 포털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24시간 AI 챗봇을 제공하고, 여러 창업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시행일: 2026년 중

-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계해 특색 있는 공간·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지역·글로벌 거점 상권으로 육성합니다.
- 동네·골목상권에는 민간 주도의 전략 수립과 전문가 지원을 통해 조직화와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044-202-473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5. 1. 31. 제정)과 그 하위법령이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 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었으나, 관련 규정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단일 법률로 제정되어, 설립신고 → 변경신고 → 보완명령 → 인정취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절차가 명확히 정비되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 ▶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져 기업 현장의 연구개발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연구공간 기준 유연화(고정벽체 → 이동벽체 인정), 부소재지 복수 설치 허용, 국가 R&D 참여 석사과정생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기업의 연구역량 혁신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추진배경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인정·관리·지원 규정을 단일 법률로 체계화하고,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개선 추진

주요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변경·취소 등의 관리체계 사항 규정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시행일 2026년 2월 1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산업통상부 규제샌드박스팀

☎ 044-203-4528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심의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탄력적 부여, 규제법령 정비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 ▶ 동일·유사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 특례 유효기간은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법령정비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법령정비를 착수하는 것만 요구되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를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 설령, 정비된 법령의 시행이 늦어지거나 허가 여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례가 중간에 종료되지 않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특례사업의 불합리한 중단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시행

추진배경

규제샌드박스 이용 기업 편의 증진, 규제법령 정비 촉진 등 개선 요구 증가

주요내용

·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 간소화

* (종전) 규제부처 의견조회 30일 + 특례위 심의 → (개정) 의견조회 15일 + 전문위 심의

· 특례사업 성격에 따라,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

* (종전) 최대 2+2년 → (개정) 최대 2+2년 / 필요시 실증특례 최대 4+2년, 임시허가 최대 3+2년

· 법령정비 의무 강화* 및 법령정비 이후 정비된 법령의 시행전 또는 인허가전 유효기간 공백 방지

* (종전) 법령정비 착수 → (개정)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 완료

시행일

2026년 6월 3일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6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6년 3월 3일부터는 계량기 수입업자가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면, 수리 여부 통지와 관계없이 즉시 계량기 수입업 신고가 인정됩니다.

* 그간 계량기 수입업자는 시·도 지사가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만 수입업 신고가 완료되었음

- ▶ 다만, 이번 개정은 신고 절차만 간소화하는 것으로, 수입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검정 등 품질확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변경 내용

수입업자	시·도 지사	신고 의무 이행
(전)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 신고	→ ◇ 신고수리여부를 통지(7일 이내) ◇ 신고/연장 여부 등 미통지시 8일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후)	(삭제)	

*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등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

추진배경

수입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

주요내용

- 계량기 수입업 신고(수입업자→지자체) 절차에서 행정청의 수리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 의무를 완료

* 과거 저품질의 외산(예: 중국산) 계량기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업자 신고제도가 도입·운영

시행일

2026년 3월 3일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 시행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043-870-5415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 정부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 ▶ 또한,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 시행

추진배경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위해성 확인 없이 국내에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가능됨에 따라 안전관리 필요

* 60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한 결과, 97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국표원, 2025. 9.)

주요내용

- (직접구매 해외제품 등 정의) 국내 사업자 중심 규제에서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등으로 확대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
- (관계부처 협력 및 조정)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및 조정사항을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논의
- (정보수집·관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수집·관리

시행일

2026년 6월 3일

예선업·도선업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51-773-5716

그간 예선업과 도선업은 선박금융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2026. 3. 17.)에 따라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도 선박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선박 건조 수요가 증가함에도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에게는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적용 예정이며, 투자 또는 보증시 만기 10년까지 할인된 금융비용 적용, 운전자금대출에 대한 최대 2%P 이자지원, 재무 및 홍보 분야 경영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2026. 3. 17. 시행 예정),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업실명제 >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예선업·도선업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 확대

추진배경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해운 산업의 핵심요소인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금융 지원 추진

주요내용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을 통해 금융 지원 대상에 예선업·도선업 추가
- 예선업·도선업 관련 사업자의 선박 금융 지원을 통해 해상교통안전 강화

시행일

개정 법률 시행) 2026년 3월 17일

물류기업 해외진출 시 컨설팅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51-773-5757

물류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물류기업이 해외진출 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현지조사 지원규모*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은 해외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이며, 신청접수·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타당성 조사 지원 : (2025) 최대 1억원 → (2026) 최대 2억원(국비지원 50%)

현지조사·컨설팅 지원 : (2025) 최대 4천만원 → (2026) 최대 5천만원

- ▶ 2026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 공지사항 (2026. 2. 공고 예정)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추진배경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불안정 지속에 대응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 필요

주요내용

- 물류기업이 해외진출 이전·이후에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현지조사, 법률자문 등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최대 1억원 → 2억원)
- 해외기업 인수합병, 해외물류인프라 개발·운영, 해외법인 설립에 대한 외부자문, 현지조사 비용지원을 통해 해외 물류시장에서 국내기업 기반지원

*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 공지를 통해 공고 예정(2026. 2.)

시행일

2026년 2월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 ☎ 051-773-6204

인천항 내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부담* 물류비용 경감을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전면 개장합니다.**

- ▶ 로봇, 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통해 물류센터 입·출고와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설비의 고장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차세대 물류센터입니다.

* 고비용 장비, 시스템에 대한 중소 화주간 공유를 통해 투자 부담 최소화

* 작업시간 15%, 운영비 20% 이상 절감 및 생산성 10% 이상 증가 기대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對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복합운송(Sea&Air)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을 통해 부가가치도 창출할 예정입니다.

- ▶ 현재 준공 완료 및 시운전 단계 진행 중으로 내년 초 개장하여 물류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등을 위해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주요내용

- (이송·적치 자동화) 로봇, IoT 센서 등을 활용하여 화물의 물류센터 입출고 및 적치 등 자동화
- (재고관리) 화물의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실시간 재고관리 및 화물수요 예측
- (시설운영) IoT 및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설비 고장 사전 감지·예방 및 최적의 작업환경 조성

시행일

2026년 3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044-204-7632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겪는 법률, 세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창구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합니다.

* (오프라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온라인) ‘K-Startup’ 지원포털

- ▶ 법률, 세무 등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 매칭 상담과 AI 챗봇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지원합니다.
- ▶ 아울러, 창업 공간, 지원사업 등 각 기관에 신재되어 있는 창업정보를 이곳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개요

추진배경

국내 창업자 다수는 법률·세무·경영 애로 및 정부지원 정보 부족 등 복합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나 애로 해결을 위한 전담 창구 부재

주요내용

- ①스타트업 경영 전반 애로상담 및 지원, ②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 유용 정보 제공 ③불합리한 규제 접수·개선 연계 등
- * 7대 상담 분야 : 법률, 세무, 경영, 규제, 정부지원사업, 창업공간, 행사·네트워킹
- (구축방식) 온·오프라인 센터 병행 구축, 창업진흥원(전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 거점)에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상시 접수·처리 체계 마련
- (운영체계) 간단 애로는 챗봇·온라인 채널을 통해 즉시 처리하고, 심층 애로는 분야별 전문가 연계·해결

시행일

(오프라인) 2025년 12월 1일, (온라인) 2026년 1분기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4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 특색있는 공간·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 관계부처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
 - * (예시) 지역 관광·문화 활성화 및 산업 연계, 지역활력 제고, 청년 유입 등
 - 민간 주도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상권분석과 연계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 ▶ 동네단위·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 역량강화, 조합결성 등 종합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성장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보도자료 > [보도자료] 한성숙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2025. 11. 5.)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추진배경

지역자원·잠재력 있는 상권을 글로벌·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 마련

주요내용

- 특색있는 공간·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
- 동네단위·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 역량강화등 종합 지원

시행일

2026년 1분기 신청 모집 예정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

창업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044-204-76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2025. 12.)에 따라, 창업기업 인정 기준이 유연화됩니다.

- ▶ 기존에는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되었던 중소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6.1.1. 시행)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창업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

추진배경

제도의 현장 적합성 제고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주요내용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국민의 아이디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042-481-5953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이 되고,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1월부터 개최합니다.

- ▶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주제나 분야에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의 아이디어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 ▶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최대 1억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창업 지원은 물론 후속 사업화 연구개발(R&D)과 특허 출원·거래, 정책·제도 반영 등 실질적인 실행 단계까지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www.moip.go.kr (2026.1.8.부터 운영 예정)

진짜 성장을 위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해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국가시스템 구축 필요

주요내용

- 정부·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①지정공모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②자유공모 운영
 - * ①지정공모 : 정책적 현안과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핵심 이슈가 되는 10개 특정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공모
 - * ②자유공모 : 주제·분야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모
- 공모부문별 아이디어 접수, 심사, 선정 및 보상을 진행하고, 실제 구현이 가능하도록 아이디어 고도화와 후속 활용을 연계 지원

시행일

2026년 1월 8일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842

2026년 5월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의 위조상품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
- ▶ 개정안은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보도자료>“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추진배경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국가·경제안보를 도모할 필요

주요내용

-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

시행일

2026년 5월 28일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832

고가·프리미엄 상품도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적용을 위한 전자통관 시스템 개선 후 시행(2026. 6. 예정)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추진배경

고가·프리미엄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추진

주요내용

(간이수출 기준금액)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수출 지원

시행일

2026년 6월(잠정)

잠정가격 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832

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신고 부담이 완화되도록 수출신고 가격 정정 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합니다.

- ▶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등의 신고 부담이 경감되고,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정 신청기간 연장 적용을 위한 전자통관 시스템 개선 후 시행(2026. 6. 예정)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추진배경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 부담 완화와 향후 수출 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풀필먼트 수출 정정 신청 기간 연장 추진

주요내용

(풀필먼트 수출 정정 신청기간 연장) 풀필먼트 수출 시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를 위한 정정 신청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신고부담 완화

시행일

2026년 6월(잠정)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 042-724-7347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여 초기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 ▶ 산업 분야와 지역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합니다.
 - AI 등 신산업 분야·신학연 전문기관을 혁신제품 스카우터로 위촉하여 알려지지 않은 신기술 제품을 발굴하고,
 -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기술 가치가 검증된 제품이나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의 제품을 적극 지정할 계획입니다.
- ▶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확대합니다.
* (2025) 529억원 → (2026) 839억원
- ▶ 절차도 효율화하고 참여 기회도 확대합니다.
 - 2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공공성·혁신성 구분 평가를 통합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 공급자제안형 혁신제품 지정횟수도 확대(3→4회)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제품 제도에 참여하도록 개선합니다.

조달청 누리집(pps.go.kr) > 알림·소식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혁신제품 공공구매 30년 3조원 수준 확대... '진짜' 성장 총력 지원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 확대

추진배경

혁신적인 기술 제품에 대한 실증을 확대하여 상용화 신속 지원

주요내용

- (제품 발굴 다각화) 전문기관 스카우터 운영, 민간 투자제품 및 지방정부 추천 지역 스타트업 혁신제품 지정 확대
- (시범구매 확대) 시범구매 규모를 529억원 → 839억원으로 확대
- (절차 개선) 심사절차 통합 및 공급자제안형 지정공고 횟수 확대

시행일

- (제품 발굴 다각화): 2026년 1월 1일 이후 혁신제품 지정 신청건부터
- (시범구매 확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범구매 신청건부터
- (절차 개선): 「혁신제품 지정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이후 지정 공고건부터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 054-716-1514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시장 규모와 참여자가 확대되고 정책 활용성 등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조달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여 신설되었습니다.
- ▶ 2026년 하반기 첫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공공조달 전(全) 과정의 절차를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관련 전문 지식 등을 검증합니다.
- ▶ 본 자격의 도입을 통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조달시장에 적극 참가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달청 누리집(pps.go.kr) > 알림·소식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이룹니다.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추진배경

공공조달 분야의 투명·공정성, 전문성 및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비상경제장관회의(2022. 12.))

주요내용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지원, 비전문 컨설팅 의존에 따른 조달기업의 피해 방지, 조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조달 전문인력인 ‘공공조달관리사’를 국가기술자격 제도로 신설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다양화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 042-724-7578

2026년부터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에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 ▶ 조달청은 국가기관·지자체·각급 학교 등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연간 130여 건의 설계공모 심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 기존에는 대학교수 및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왔으나,
 - 설계공모 당선 등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있는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조달청 누리집(pps.go.kr) > 알림·소식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기행 심사 공정성과 참여 편의성 높인다

설계공모 심사시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신규 참여

추진배경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전문성 향상 및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주요내용

-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참여) 대학교수 및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을 신규로 추가
 - * 최근 5년 이내 공공 설계공모 등에 당선된 실적이 있는 대표건축사 중 선발
 - ** 2026년부터 1년간 운영 후 제도 연장 검토
- 설계공모 건별 심사위원 구성 시 전체 인원의 30% 이내에서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위촉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변화

기준	+	신규	=	심사위원회
대학교수 (150명 내외)	+	민간건축사 (50명 내외)	=	300명 내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조달청 설계공모 입찰공고 분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입목축적 기준 예외 적용

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41

**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그간 산지전용허가 시 검토했던 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은 적용대상에서 예외됩니다.**

* 입목축적 :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개별 나무의 부피를 합친 나무량을 말하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는 개발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구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산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 ▶ 산지분야 입지규제 완화로 원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조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관보 > 검색하기 >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320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입목축적 기준 적용예외

추진배경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필요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허가기준 중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입목축적 기준 : 개발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구 입목축적의 150% 이하

시행일

2026년 3월(공포 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01.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197

모두의 카드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 2026년부터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100% 환급됩니다.
-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해 기존 K-패스 이용자도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하여 혜택이 확대됩니다.



모두의 카드 도입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 044-201-5087

**2026년부터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모두의 패스를 도입하여 국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예정으로, 기존 K-패스 이용자도 별도 카드 신청이나 패스 사전선택 없이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환급방식을 적용하여 최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하여 혜택 확대

k-패스 이용 사이트 - <https://korea-pass.kr>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확대

추진배경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혜택 확대 추진

주요내용

- (모두의 카드)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대해 100% 환급

* 일반 국민 6.2만원(수도권 기준),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5만원, 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 4.5만원

- (어르신 유형 신설) 기존 K-패스 환급사업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유형 신설(환급률 30%)

시행일

2026년 1월부터 즉시 시행

국내 최초 공공 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 발사·운영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 ☎ 031-210-2792

그간 공공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대응 등에 위성을 활용하기 위해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가 2021년 3월 발사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국토위성 1호에 이어 국토위성 2호가 2026년 상반기에 발사됩니다.

- ▶ 국토위성 2호 발사 이후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국토위성 1호·2호의 본격 운영을 통해 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된 위성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토위성센터 누리집(nlsc.ngii.go.kr) > 국토위성 소개

국토위성 2호 발사

추진배경

국토이용, 자원관리,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위해 과기부와 공동으로 정밀지상관측 쌍둥이 위성 1호·2호* 개발 및 운영

* 국토위성 1호 : 2021년 3월 발사, 국토위성 2호 : 2026년 상반기 발사 예정

주요내용

- (운영) 국토위성 2대 동시 운영을 통해 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촬영 및 서비스
- (활용) 공공·민간 활용을 위해 국토위성 산출물을 5종에서 8종으로 서비스 확대
- (현재) 위성정사영상, 사용자친화형 영상, 모자이크 영상, 영상지도, 긴급공간정보
(향후) 기준 5종 + 3차원 공간정보, 국토현황정보, 변화탐지정보

국토위성 1호·2호 규격 및 형상

구분	개발 규격	위성체 형상
설계수명	4년	
해상도	흑백 0.5m급, 컬러(R,G,B,NIR) 2.0m급	
고도 / 관측폭	약 500km / 12km 이내	
국토위성 공전주기	약 95분(15회 공전/일)	
한반도 촬영주기	3~4일/1주 (1기당 약 100초 촬영)	
한반도 전역촬영주기(1기 기준)	6~12개월(구름 등 기상영향 고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본격 운영

범죄피해자 등 주거상향 시 자산·소득 검증 생략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044-201-4740

그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신속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 계약에 한하여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합니다.

※ 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지원의 경우에 한함

- ▶ 다만, 공공임대 입주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계약 시 소득·자산 검증을 실시하여,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 등 최초 계약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추진배경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신속한 이주를 위해 소득·자산 기준 적용 제외 필요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주 지원 시 최초 계약에 한하여 소득·자산 검증 생략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 044-201-415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배달플랫폼)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 등 8개 사업자(‘25.12월 기준)

- ▶ 배달 종사는 2026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 종사는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2026년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배경

배달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이 가능도록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배달 종사자 및 국민 안전 강화

주요내용

- 배달플랫폼은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계약 체결 전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해야 함

시행일

- (유상운송보험 가입) 2026년 6월 3일
단, 법 시행 당시 배달 종사는 6개월 이내 유상운송보험 가입 필요
- (교통안전교육 이수) 2026년 12월 3일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044-201-4227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금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 또한,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 ▶ 관련 내용을 반영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1월 국회 통과되었으며,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항공보험 제도 개선

추진배경

항공사고 피해자 피해복구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

주요내용

-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항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 금지
-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가입 거부 제한)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금지

시행일

2026년 6월 3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044-201-4257

보다 안전한 하늘길을 안내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시행합니다.

- ▶ 새로 도입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통해, 그간 내부 평가를 통해 취득하던 한정 자격*을 외부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업무 위탁)의 평가로 변경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보다 강화하고,
- * 항공교통관제사가 관제시설(관제탑,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외에도 해당 시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한정 자격’ 취득 필요
- ▶ 2년마다 기량 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게끔 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항공안전법(시행 2025.11.28.)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11.28.)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 시행

추진배경

항공안전 관련 국제기준 준수 및 관제사 관리체계 개선제고

주요내용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신설로 모든 관제사의 자격증명·한정 관련 시험을 내부 평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외부) 평가로 개선
- 관제사 교육체계 관련 기준을 신설을 통해 교육수준을 강화 및 정기·수시 기량심사 시행을 통한 항공안전 강화

시행일

2025년 11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044-201-4333

2025년 12월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 ▶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체결하였습니다.
* 통행료 인하요금 : 경차(2,750원→1,000원), 소형(5,500원→2,000원), 중형(9,400원→3,500원), 대형(12,200원→4,500원)
- ▶ 이를 통해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배경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일반 고속도로 수준 인하

주요내용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12월 18일부터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
(영종↔송도 간 편도 5,500원 → 2,000원으로 인하)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이륜자동차 전국단위 번호판 도입 및 규격 변경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1

그간 지역명(예: 서울 관악)이 표기되었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2026년 3월 20일부터는 지역명이 삭제된 전국 번호판으로 개편됩니다.

- ▶ 2026년 3월 20일 이후 사용신고 하는 이륜자동차는 지역 구분이 없는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며, 번호판의 크기도 확대*되어 번호판 시인성이 개선됩니다.
* (기존) 가로 210mm x 세로 115mm, (변경) 가로 210mm x 세로 150mm
- ▶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의 부착이 어려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210mm x 115mm)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별표 15의2] 이륜자동차번호판

이륜자동차 전국단위 번호판 도입 및 규격 변경

추진배경

전국에서 사용신고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전국 번호판을 도입하고, 번호판 규격 확대를 통해 시인성 제고

주요내용

- (내용)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명(시·도 및 시·군·구) 표기 삭제
- (규격) 번호판 크기 확대 (210mm x 115mm → 210mm x 150mm)
- (예외)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존 규격 번호판 부착 허용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 확인 절차 강화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 044-201-3926

그간 과적에 적발된 경우 중량 하위 기재 등을 하는 화주, 운송사업자 등과 같은 실질 위반책임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차량 운전자는 화물 운송의뢰 감소 등을 우려하여 과적 신고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 ▶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부터 실질 위반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과적단속 과정에서부터 관계 서류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서류 종류도 폭넓게 확대됩니다.
- ▶ 앞으로는 운전자가 아닌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당초) 화물위탁증 등 2종 → (변경)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 5종 확대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 확인 절차 강화

추진배경

운행제한 위반 책임자에 대한 처벌원칙 확립

주요내용

- (절차강화) 과적적발 운전자에게 중량하위 기재, 과적 지시 등 실질 위반책임자를 구분하기 위한 관계 서류의 확인 절차 강화(선택→의무)
- (관계 서류) 당초 관계 서류는 2종으로 구분되었으나, 서류 종류를 명문화하는 등 5종으로 폭넓게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예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훈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 개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 051-773-5734

연안여객선 모바일 앱을 통한 예매 시, 각종 페이(pay) 등 간편 결제 서비스 및 푸시 메시지 기능을 도입하여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 그동안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였으나, 각종 페이(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여 더욱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또한, 알림 메시지(푸시 메시지) 기능을 도입하여, 여객선 예매 시, 개인별 운항일정을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모바일 앱 개선

추진배경 여객선 모바일 앱 예매 시, 이용자 편의 개선

주요내용 · (간편결제 기능 도입) 여객선 모바일 예매 시, 신용카드 외 각종 페이(pay) 등 간편결제 기능 도입

· (푸시 메시지 도입) 여객선 예매 시, 개인별 운항일정을 푸시 메시지를 통해 자동 알림

시행일 · (간편결제 기능 도입): 2026년 6월 중(개시일 미정)
· (푸시 메시지 도입): 2026년 6월 중(개시일 미정)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온라인 접수 실시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051-773-5772

기존 수기로 처리하던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접수와 응시생 정보 관리를 2025년 10월부터 전용 시스템으로 진행 중입니다.

- ▶ 수험생이 전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접수증을 직접 출력하여 수험생의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 ▶ 시험장 배치 및 채점 관리 등 응시생 정보를 전용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원서접수>원서접수 신청>본인인증>응시원서 작성>응시료 결제>접수확인 문자 수신>응시표 출력

도선사 시험 전용 시스템 개발

추진배경

국가자격시험(도선사 선발)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응시생들의 편의 제고

주요내용

- 원서접수(전자), 접수증(응시증) 배부 및 전문 누리집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응시생 정보관리 및 편의 제공
- 전용 시스템 통한 시험실 배치 및 채점 관리로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시행일

2025년 10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2025~2029)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 051-773-5985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2025~2029)을 통해 기후변화에 준비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환경을 조성합니다.

- ▶ 첫 번째, 연안재해 사전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연안관측망 확대, AI 의사결정 지원 등의 과학적 침식관리를 추진합니다.
 - ▶ 두 번째, 2차 침식 피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식생 등의 자연기반해법 확대로 지속 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합니다.
 - ▶ 세 번째,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적응형 재해관리를 위한 국민안심해안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연안의 재해완충폭 확보를 위한 연안보전기준선을 설정합니다.
- *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육역을 국공유화하여 재해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당부지는 공적(숲길조성, 주말농장, 지역특화 사업 등)으로 활용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25~2029)

대상지

384개* 후보지에 대해서 현장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363개 대상사업 선정
* 지자체 수요 167개소, 우심지구/언론보도 210개소, 타 사업계획 7개소

연안정비 유형

침식 222개소(16,495억원, 61%), 침수 82개소(5,758억원, 23%), 국민안심해안 20개소(1,288억원, 5%), 친수 39개소(1,443억원, 11%)

(단위: 개, 억원)

구분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사업		합 계	
	침식		침수		국민안심해안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제3차	169	15,337	80	6,200	-	-	34	1,472	283	23,009
제3차(변경)	222	16,494	82	5,758	20	1,288	39	1,443	363	24,984

소파블록(테트라포드 등) 재활용 규모 확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51-773-5951

파도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항만·어항 시설물을 보호하는 소파블록*이 파손이 되면 그동안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였으나 1월부터는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테트라포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주로 방파제 등에 연안 보호와 파랑 저감 목적으로 설치

- ▶ 환경 유해성이 없는 무근콘크리트로 제작된 파손 소파블록이 수중 하부에서 방파제 등의 시설물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개정합니다.
- ▶ 재활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폐기물 처리 및 탄소 배출 비용이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파블록(테트라포트) 재활용 규모 확대

추진배경

폐기물로 처리하던 파손된 소파블록을 건설자재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확대 도모

주요내용

- 항만·어항의 배후도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랑의 힘을 감소·분산시키는 소파블록을 설치하고 있으나, 파손될 경우 폐기물 처리 중
- 파손된 소파블록은 환경유해가 없는 무근콘크리트이면서 수중 하부에서 방파제 등의 시설물 보호 등이 가능하다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

시행일

2026년 1월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활성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 051-773-5951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지분양 및 상부시설 건축이 저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공기관 우선 유치 등으로 공공부문이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 2026년 5월에 부산지역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기관 우선 유치 및 해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KMI, KIOST, 한국해양대, 한국해운조합등
- ▶ 또한, 2026년 상반기에 북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 레저, 문화, 역사 관련 상부 콘텐츠* 도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상레포츠콤플렉스, 복합전시공간, 마리나, 경관수로 활용 해양레저 등

부산항북항 재개발 홍보관 블로그(blog.naver.com/busanportcity)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추진배경

항만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부두를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

* (1단계) 면적 : 155만㎡ / 총사업비 : 2조 9,929억원 / 사업기간 : 2008~2027

주요내용

- (잔여사업) 2024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상부 공공콘텐츠 및 해양기관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등 잔여사업 추진 중
- (투자유치)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분양전략을 2026년 상반기까지 수립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07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변경됩니다.

- ▶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어, 연말 혼잡 문제가 지속 발생하였습니다.
- ▶ 이에,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하여 연말 혼잡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소지자의 첫 갱신기간은 기존 갱신기간(1. 1~12. 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

예시

(면허소지자가 2026년부터 첫 갱신기간 도래 시)
도래하는 갱신기간이 2026. 1. 1~2026. 12. 31이고, 생일이 8월 15일인 경우

⇒ 개정 '부칙 적용' 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갱신기간은 2026. 1. 1~2027. 2. 15.로
자동 변경되어 적용

(2026년부터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다음 갱신기간)
2026. 4. 15. 운전면허를 갱신한 자의 생일이
8월 15일인 경우

⇒ 개정 내용에 따라 갱신일로부터 10년 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적용
(2036. 2. 16. ~ 2037. 2. 15.)

국가법령센터 누리집>도로교통법>법률 제21016호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추진배경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증진

주요내용

그간, 1월 1일~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직전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변경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309

음주운전처럼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 약물 복용 검사를 요구받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측정 불응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 약물운전자의 경우 기중처벌하여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상습 약물 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45조, 제82조제2항제3호, 제93조, 제148조의2
[시행 2026. 4. 2. 법률 제20864호]**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추진배경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대상 검사 의무화로 약물운전을 예방하여 교통안전 확보

주요내용

약물운전 처벌 상향(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측정 근거 마련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상습 약물운전자 및 측정거부자를 가중처벌

시행일

2026년 4월 2일부터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0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18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시행일: 2026년 초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지원합니다.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면 신청을 통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0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19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시행

시행일: 2026년

- 논·밭 규모화를 촉진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으로 생산성과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시범 시행합니다.
- 소규모 경영체 조직화, 농지임대·출자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규모화·이모작 시설·장비, 판로 확보 등을 2026년 6개소에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시행일: 2026년 1월

-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멋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까지 확대됩니다.

* 아침 또는 점심 중 한끼를 지원(중복지원 불가)

* 아침밥은 우리쌀(밀, 콩 포함)을 활용하여 만든 조식을 1,000원에 제공

* 점심밥은 외식비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반기 시행 예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 예방 위주에서 진찰·투약·검사·치료 등 치료 목적까지 면세를 넓힌 데 이어, 내년에는 질병·증상 항목을 더 추가해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부가가치세 없이 제공되도록 개선했습니다.



05.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22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제도화

시행일: 2026년 8월 27일

-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정하고,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체계적인 수급 관리로 쌀 과잉이 줄고 수급 안정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06.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23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까지 지원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산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확대합니다.
-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합니다.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2026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시행일: 2026년 4월(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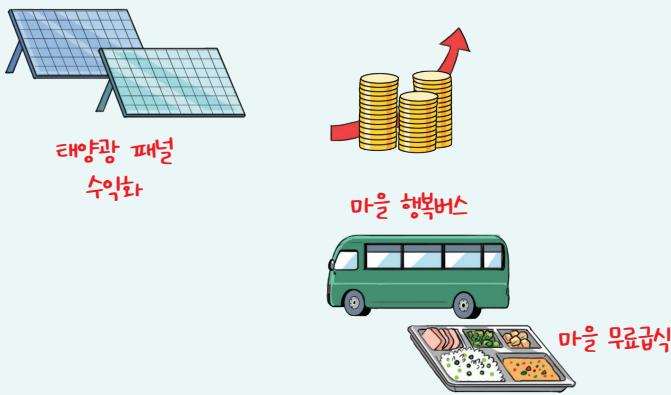
- 2026년부터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 명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제공되던 간식을 사과, 배, 포도, 딸기 등 신선한 국산 과일 과채로 대체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합니다.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농촌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합니다.
- 2026년부터 매년 초 공모를 진행해 연 1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6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읍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신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추진배경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긴급한 상황 대응 및 특단의 대책 필요

주요내용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개인별로 주소지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시행일

2026년 초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7

논(쌀 제외 타작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해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합니다.

- ▶ 소규모 경영체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 관련 사전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규모화·이모작 등을 위한 시설·장비, 생산 농산물 판로 등을 지원합니다.(2026년 6개소 지원)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논(쌀 제외 타작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

사업내용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

- 농업경영체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운영규약·경영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 지원

지원예산

- 예산액 : (2026.) 2,550백만원(6개소 지원, 국비 50% 기준) / (2026.~2027: 2,000백만원/개소당)

지원기간

2개년(1년차 40%, 2년차 60%)

지원자격

- 생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서 지역 농가의 농지 임대 또는 혼합형(농지 임대+농작업 위탁), 주주형(농지 출자) 공동영농모델

* 공동영농면적 20ha, 참여농업인 수(법인 조합원 이외) 5명 이상

- 농지 임대 또는 농작업 위탁 등 지역농가(농업인)의 참여가 있는 농업법인에 한함(농업법인 단독 영농 시 배제)

- (지원품목) 모든 품목

* 두류·서류·잡곡류 등 식량작물(다만, 쌀은 제외), 조사료, 원예농산물, 과수 등 논·밭작물 모두 가능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2157

☎ 044-201-1822

그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4천 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한 기업에 아침밥과 점심밥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아침밥) 산단 입주기업(또는 협의체 등 조직) 4천 명, (점심밥)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0천 명
- ▶ **아침밥은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쌀을 활용(우리 밀·콩 권장)한 조식을 1천원에 제공합니다. 점심밥은 점심 외식 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결제금액의 20%, 월 4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든든한 하루의 시작, 천원의 아침밥이 산단 근로자를 만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추진배경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직장인의 식생활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 조식 또는 중식 중 한 끼를 제공

주요내용

- (아침밥) 밥값 부담 경감,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량작물 소비확대를 위해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천원에 아침밥을 제공
- (점심밥) 점심 외식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점심외식비용의 일부(20%, 월 4만원 한도) 지원

시행일

- (아침밥) 2026년 1월부터 연중 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
- (점심밥) 2026년 하반기 예정(상반기에 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공모 예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2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면제되도록 진료 항목을 추가·정비하였습니다.

- ▶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일부 예방 진료 위주에서 2023년부터 진찰·투약·검사·치료 등 치료 목적까지 면제 범위를 넓혔고 내년부터는 질병·증상 항목을 더 추가*해 사실상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부가가치세가 없이 이뤄지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기준) 진찰료, 예방접종비 등 102종 → (추가) 간종양, 변비 등 10종(누계 112종)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추진배경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 항목 중 면제 대상이 아닌 간종양, 변비 등 10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면제(기준 102종 → 확대 112종)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 선제적 수급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 ▶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쌀 수급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제도화

추진배경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제도화를 통해 ‘과잉생산–쌀값하락–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 도모

주요내용

-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을 제도화하고, 불가피한 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책임 강화
-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토대로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 추진

시행일

2026년 8월 27일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까지 지원 확대... 지원기간도 12개월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4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산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 ▶ 기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2025.)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 (2026.) +청년 추가
- ▶ 또한,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영양 공백을 원천 차단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025.) 10개월(3~12월) → (2026.) 12개월 연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 결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추진배경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지원,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는 가구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월 10만원/4인 가구

구분 (단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지원금액 (천원)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 (지원기간) 2026년 1월 ~ 12월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 (신청방법) 읍면동 복지센터, ARS전화(1551-0857),
누리집(www.foodvoucher.go.kr)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2026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 044-201-2252
☎ 044-203-6604

2026년부터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 명에게 주 1회 고품질의 국산
과일간식을 공급합니다.

- ▶ 늘봄학교 시간에 공급되는 간식을 신선한 국산 과일(사과, 배, 포도 등)·과채(딸기, 참외, 수박 등)로 구성된 과일간식으로 대체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합니다.



컵과일(150g/개)



파우치(150g/개)



별크(1kg/개)

어린이과일간식 사업개요

주요내용

- (지원내용) 컵·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150g/회) 제공
- *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키위, 토마토·딸기·참외·수박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
- (지원대상) 초등 늘봄학교 참여 1~2학년 중심
- (지원기간) 2026년 1~2학기

시행일

2026년 4월(잠정)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044-201-2632

시행주체(마을협동조합)가 구성되고,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0kW~1MW 규모로 500개소 이상 조성합니다.

- ▶ 2026년부터 매년 초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연 100개소 이상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 동 사업을 통한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 마을 공동체 단위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공모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개요

마을의 공용시설 및 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모델

- 시행주체(마을협동조합)가 구성되고,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
- * 행정리 기준 10가구 이상 마을, 마을 출자금과 금융대출을 통해 재원 마련
- 마을당 300kw~1MW 이내 발전 규모

2026년부터 연 100개소 이상을 조성하여 2030년까지 500개소 이상 추진

- 발전시설 설치 부지 유형에 따라 영농형(비축농지), 수상형(저수지 수면), 혼합형(공공부지 임대+주차장·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활용) 등 다양한 모델 확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 044-201-1545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군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됩니다.**

- ▶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시군단위로 구성된 지역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의 수거지원 활동에 대한 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합니다.
 -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추진배경

방치된 농어촌 쓰레기는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농촌지역 정주 여건 악화의 원인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 등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생활·영농쓰레기* 수거 관리를 위한 지역 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수거 활동비를 지원

*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

신청방법

인구감소지역 등 140개 농어촌 시군에서 관할 시도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2026년 사업: 2026년 1월, 2027년 이후: 전년 9월

시행일

2026년 1분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2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 지원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해 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50,350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준) 1인당 월 최대 46,350원 지원 → (인상) 50,350원 지원(↑8.6%)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추진배경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주요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까지 지원

- 기준 :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 1인당 월 최대 46,350원 지원

- 인상 : 기준소득금액 106만원 → 1인당 월 최대 50,350원 지원(↑8.6%)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고령주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농촌 상황을 고려하여 농촌 왕진버스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대상지역과 서비스 내용을 확대합니다.

- ▶ 현장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2026년 왕진버스 대상지역을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21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 지방정부 신청 후 의료기관 접근성, 사업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선정, 개소당 최대 600명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 ▶ 또한 2025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추진하였던 재택진료,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등을 2026년부터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시행, 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2025.) 포천, 양평, 청주 등 4개 시·군 → (2026.) 연천, 청양, 영동 등 10개 시·군

** 재택진료: 별도 진료팀이 이동이 어려운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

비대면 상담서비스: 우울·불안·인지 위험군 주민 대상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제공

소규모 왕진버스: 경로당 등 마을 소규모 거점에서 기초진료를 여러 차례 제공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을 확대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

주요내용

농촌 왕진버스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내용에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소규모 왕진버스 추가, 주민 수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선택 운영 가능
*(2025.) 양·한방·구강검진 등 신체진료 중심 / 주민이 왕진버스 현장을 방문 / 연 1회 운영 기준

시행일

2026년 3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대상 연령과 인원이 확대됩니다.

대상 연령이 2025년 51~70세에서 2026년 51~80세까지 확대되고 대상 인원도 2025년 5만 명에서 2026년에는 8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 ▶ 검진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시·군 농정과 또는 농업e지 어플을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추진배경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주요내용

- (연령 확대) (2025.) 51~70세 여성농업인 → (2026.) 51~80세 여성농업인
- (인원 확대) (2025.) 5만명 → (2026.) 8만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빙집 정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044-201-1543

안전사고·범죄발생 우려, 위생·경관상 유해 등 빙집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빙집 정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 철거가 필요한 빙집 정비를 위하여 빙집 1호당 철거비를 최대 7백만원에서 16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 철거를 희망하는 빙집 소유자가 각 시·군에 철거 신청→시·군에서 직접 철거하고, 철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
 - ** 철거신청 기간은 각 지방정부 별로 상이
- ▶ 활용 가능한 빙집에 대해서는 빙집 재생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 가능한 빙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빙집은행' 참여 지역을 2025년 기준 21개 시·군에서 추가 모집하는 등 민간이 빙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 농식품부·지자체·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협력하여 집단화된 빙집을 청년 일자리·창업, 관광·체류시설 등으로 재생하여 활용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빙집 정비 지원 확대

추진배경

농촌 소멸위기 극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빙집 정비 추진

주요내용

- (빙집 철거) 농촌빙집 철거 지원 및 단가 현실화(최대 7백만원→16)
- (빙집 재생) 민간 참여형 빙집 재생모델 신규(1개소) 발굴, 거래 가능한 빙집정보를 제공하는 '농촌빙집은행' 참여지역 추가 모집 예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044-201-1724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를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제외

▶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추진배경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도입

주요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 농가)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장 제외)
-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년 2월 15일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료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그간 시·군별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되었다면, 2026년부터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 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하여 거대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 ▶ 기본적인 할인·할증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농가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재해의 경우에만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배경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점차 일상화·대형화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증가하는 농어업정책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 필요

주요내용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 시 제외
 -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 모든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제한하는 것에 비해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

시행일

2026년 8월 15일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044-201-2421

농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기자재 연구 촉진,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스마트농업 산학협력사업 지원, 거점단지 내 시설 평가, 기업 지원 등

-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산학협력, 기업 등의 스마트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26.1.23. 시행)

추진배경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의 성장 동력 완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 필요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 산학협력사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관·단체·기업이 수행하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내 시설 평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8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내 온실·축사 등 스마트농업 시설*(동법 제14조제3항)의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①교육실습용 스마트팜 ②임대용 스마트팜 ③기술실증용 스마트팜 ④데이터 수집·활용 전산장비·시설
-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스마트농업 규제 점검 및 개선 규정 마련(안 제24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044-201-2126

푸드테크 산업 분야의 규제 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합니다. 푸드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규제를 농식품부로 일괄 신청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갑니다.

- ▶ 2025년 12월 21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규제개선 신청·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 ▶ 규제창구 일원화를 통해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추진배경

푸드테크는 신산업 분야로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 단계까지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푸드테크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규제 합리화 요청 시 소관 부처별로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주요내용

- 푸드테크 산업 분야의 규제 신청 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푸드테크 기업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농식품부로 신청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
- 2025년 12월 21일 「푸드테크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규제개선 신청·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마련

시행일

2025년 12월 21일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044-201-2169

2026년부터 통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하여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 ▶ 권역별 K-푸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시장 진출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 범부처·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에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 선정 후, 물류·마켓테스트·판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모집공고/신청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추진

주요내용

- (내용)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하여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수출기업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 지원
- (지원 대상) K-푸드 제품의 진출 확대를 원하는 농식품 수출업체 등

추진일정

사업자 공모	사업 신청	사업자 평가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사후 관리
2026년 1월~2월 (농식품부)	~2026년 2월 (수출기업)	~2026년 3월 (수출기획단)	2026년 3월 (농식품부)	~2026년 12월 (aT)	계속 (aT)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55

글로벌 K-푸드 열풍에 따른 방한 수요를 활용해 유행한식인 치킨을 중심으로 K-미식벨트를 조성합니다.

- ▶ 지역별 특색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식재료, 조리, 문화 등을 연계한 미식 관광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한식 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한식 경험과 관심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K-미식벨트 조성

추진배경

전세계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미식 관광 등 K-푸드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한 국내 경기 활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국내 특색있는 미식 테마를 중심으로 2032년까지 K-미식벨트 TOP 30 조성
 -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을 테마로 다채로운 경험 제공
 - 미식관광 상품 기획, 인프라 개선, 인력양성 및 홍보 추진
 - 주산지 식재료, 식품명인, 양조장 등 한식자원을 활용하여 미식 관광 상품 고도화
 - 미식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상품 운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추진

시행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044-201-2176

2026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선농산물의 수출 규격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 ▶ 빈번한 기후변화, 생산시설 노후화,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시설(AI·ICT 적용) 구축을 지원합니다.
- ▶ 또한, 수출 현장 의견 및 지원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재해경감형, 검역대응형, 노동절감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자동화 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모집공고/신청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주요내용

- (내용) 수출국 검역요건·위생·안전성 등을 충족한 안정적인 수출 물량 및 규격품 확보를 위해 시설 스마트화(AI·ICT 적용), 재해경감 농기자재 등 구축 지원
- (지원 대상)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추진일정

사업자 공모	사업 신청	사업자 평가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사후 관리
2025년 12월~ 2026년 1월 (농식품부)	~2026년 1월 (지방정부)	~2026년 3월 (농식품부)	2026년 3월 (농식품부)	~2026년 12월 (지방정부, aT)	계속 (지방정부, aT)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 044-201-218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소분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 그간 식품소분업*은 유통판매업이라 제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의 영업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사례

(액상차 제조업체) 별꽃은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이고 제조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별꽃을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소분업이 필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의 각 원료를 20~50kg 단위로 수입하나 제조과정에서 5~15kg의 잔량이 발생할 경우 소포장 판매를 위해 식품소분업이 필요

- ▶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개선(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에서 식품소분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허용으로 생산 제품의 재소분 및 잔여 원료의 소포장 판매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폐기물 저감 등을 통한 기업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농식품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속도 낸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추진배경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식품기업의 매출 증대 및 기업 경영 개선에 기여

주요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 *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에서 식품소분업의 입주 허용

시행일

- (관리기본계획 개정): 2025년 11월
- (식품소분업 영업): 2026년 상반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 044-201-218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펫푸드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 그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 업종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연관 업종에 한정되어 펫푸드 제조업 입주가 제한되어 펫푸드 산업 확장의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 ▶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개선(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펫푸드 제조업체(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가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려·애완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반려동물용 기호식품 포함)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내 펫푸드 업종 입주 허용으로 펫푸드 제조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산업통상부 누리집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추진배경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한 펫푸드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 및 투자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입주 허용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 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을 심의업종으로 입주 허용, 기존 사료제조업은 제외 업종 유지

시행일

- (관리기본계획 개정): 2026년 1분기
- (펫푸드 제조업체 입주): 2026년 상반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9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스스로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방역관리를 해야 합니다.
- ▶ 또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하고, 계약사육농가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역관리 의무 미이행시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의무 강화 및
실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강화

추진배경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주요내용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이행
-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
- (의무 위반시 과태료) 축산계열화사업자 최대 5천만원 이하,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영업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7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Classical Swine Fever) 청정화'를 위하여 전국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합니다.

* 기존 백신은 감염으로 인한 항체와 백신접종으로 인한 항체를 구분하지 못했으나 신형 백신은 구분이 가능하며, 접종 스트레스도 적어 생산성 향상 기대

- ▶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기초지방정부(시·군·구)에서 관내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백신은 접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신형 마커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적어 출하일령 단축 등 농가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보도자료 > 돼지열병, 돼지소모성 질병 청정화 박차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전면 도입

추진배경

2030년을 목표로 한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전면 도입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CSF) 방역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모든 양돈농가에 백신 공급 및 접종을 의무화함
- 2026년 1월 1일부터 돼지열병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기존 백신 접종금지)하여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및 2030년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획득 기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5

2026년부터 가축질병 관리(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지원 내용 등 세부 마련 예정(2026. 1.)

- ▶ 우선 이미 시행 중인 '산란계 방역 유형 부여제(2022.~2025.)'를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2026. 신규)'으로 전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축종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6.) 산란계 농장 → (2027.~) 단계적으로 평가대상 축종 확대

- ▶ 신청농장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등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방역관리 비용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가축질병 관리 평가 및 우수농장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관리 역량이 향상되고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통해 농가 생산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축방역 우수농장 방역관리 비용 지원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우수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 자율방역 유도

주요내용

- 가축질병 관리(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 대상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

*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은 세부지침 마련 예정(2026. 1.)이며

특별방역기간(2025. 10.~2026. 2.) 이후 신청 농가에 한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

시행일

2026년 상반기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620

국가를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의 은퇴 후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자에게 돌봄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 군견, 경찰견, 탐지견 등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 입양 시, 사료비·의료비 등 지출 비용을 연 최대 100만원 돌려드립니다.
- ▶ 은퇴 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의 세부 일정,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반려동물 입양>국가봉사동물 입양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

추진배경

군견·경찰견 등 봉사동물은 국가·국민을 위해 헌신함에도 불구 고령·질병 등 비용 부담의 이유로 은퇴 후 민간입양 저조

주요내용

-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입양 활성화를 위해 마리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의료비·사료비 등 돌봄 비용 지출 증빙 시 환급(자부담 40% 제외)
- 제휴된 동물병원·사료업체 이용 시 30~50% 할인 지원 병행

시행일

2026년 4월(잠정)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 044-201-2913

2026년부터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조사료, 옥수수, 깨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됩니다.

- ▶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외에 수급조절용벼, 수수, 울무, 알팔파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 단가(만원/㏊) : 수급조절용벼 500, 수수 240, 울무 250, 알팔파 250
- ▶ 하계조사료는 기존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옥수수·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이모작 인센티브에 하계조사료가 추가되어 ha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인센티브 요건 : (동계) 밀, 조사료 + (하계) 두류, 가루쌀, 하계조사료
- ▶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추진배경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목표 대폭 확대

주요내용

- 2025년
 - (동 계) 밀(100만원/㏊), 보리, 호밀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원/㏊)
 - (하 계) 두류·가루쌀(200만원/㏊), 하계조사료(500만원/㏊), 옥수수·깨(100만원/㏊)
 - (이모작) 밀·조사료(동계) + 두류·가루쌀(하계) 이모작시 100만원/㏊ 추가지급
- 2026년
 - (동 계) 밀(100만원/㏊), 보리, 호밀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원/㏊)
 - (하 계) 두류·가루쌀(200만원/㏊), 하계조사료(550만원/㏊), 옥수수·깨(150만원/㏊), 수급조절용벼(500만원/㏊), 알팔파·울무(250만원/㏊), 수수(240만원/㏊)
 - (이모작) 밀·조사료(동계) + 두류·가루쌀·조사료(하계) 이모작시 100만원/㏊ 지급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6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의 스마트축산, 탄소중립 등 다양한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자율선택과목을 확대·신설하였습니다.

- ▶ 축산업 종사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관련 강좌를 개발하고, 복수의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 ▶ 이를 통해 교육효과가 향상되고,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법 시행규칙(시행 2026. 1. 1.)[농림축산식품부령 제 733호] 및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farmedu.kr>) 검색

축산종사자 의무교육과정 개편

추진배경

교육대상자의 다양한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

주요내용

·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축산관련 법령, 가축방역, 축산환경관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자율선택과목으로 개편

* 자율선택과목 시간 : (신규교육) 4시간→14시간, (보수교육) 0시간→1시간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 2026년 1월 1일 이후 교육을 수강하는 자부터

시행일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2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7월 23일 시행됩니다.

- ▶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추진, 수출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 또한, 한우 관련 정책 목표설정 및 조정 등을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검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안정 등

주요내용 · 한우산업 등의 정의, 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한우산업 실태조사, 연구개발,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품질·유통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유전자원 보호·육성 등 근거 마련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9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 신·재축 융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 ▶ 축사의 신·개축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기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 ▶ 이 경우 지원 대상 축사 면적과 지원에 상한을 확대하는 등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예시) 지원 면적과 지원 상한액 개선

구분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상한액	지원대상 면적	지원 상한액
한우	110~1,728㎡	657백만원	면적 제한 없음	8,000백만원
양돈	265~2,880㎡	2,785백만원	면적 제한 없음	8,000백만원
낙농	213~1,800	684백만원	면적 제한 없음	8,000백만원

* (FTA 기금 대상 농가)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자보전 대상 농가)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정책홍보>정책자료>정책분야별 자료>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원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축사 침수, 지붕 붕괴 등 축산농가 피해도 확산

주요내용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 농가로 선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 면적 상한 미적용 및 농가당 지원 상한액도 80억으로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추가 및 신고방법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276

그간 정부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농산물을 신속히 추적하고, 원산지 둔갑 방지 등 공정한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해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37개)*을 지정·관리 해오고 있으며, 5월부터는 '국화'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 김치, 양파, 마늘, 천연꿀, 고추, 녹두, 고사리, 당귀, 황기, 참깨분 등

- ▶ 2026년 5월부터 '국화'를 수입 및 유통하는 업자에게는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부여되므로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양도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등
- ▶ 아울러, 수입 및 유통업체의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거래처별로 판매량을 5일 단위로 합산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완화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국화' 유통이력 신고품목 추가 및 신고 간소화

추진배경

FTA로 인한 국화 절화류 수입 증가에 따른 공정한 화훼 유통거래 질서 유도, 신고의무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 및 규제 순응도 제고

주요내용

- 기존 37개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에 '국화'를 추가하여 관리
- 소규모 거래가 빈번한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한 경우 영업형태별 5일 단위로 합산하여 1건으로 신고토록 개선

시행일

2026년 5월

채소가격안정제,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4

그간 주요 노지 채소류 중심으로 운영했던 채소가격안정제가 사과·배 등 과수까지 품목이 확대되면서, 생육단계별 재배면적 사전 관리를 위한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 특히, 이상기후·병충해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재배면적 조절·관리를 지원합니다.

※ (예시) 여름배추의 경우 온난화와 병충해 등으로 재배면적 지속 축소

- 지온을 낮추는 저온성 필름(일반 필름 대비 가격이 3배↑), 관수장치 등을 보급하고, 병해충 피해 방지를 위한 약제 공급 등으로 수급불안 극복 가능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 추진 방향

추진배경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가격안정제) 2025. 8. 26. 공포
- 개정안에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해 사전에 생육관리·재배면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생산·공급지원'도 신설 *
- 제5조의2(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 선제적 수급계획·시행에도 불구, 가격하락 시 가격안정제 도입

주요내용

- 대상품목 : 마늘, 양파, 무, 배추, 건고추, 대파, 사과, 배
- 지원대상 :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수급계획 기반 과잉·과소 생산 대응 ①재배면적(면적조절)관리 ②출하조절 및 출하장려, ③재해피해 농산물 가공지원, ④저장지시 이행
- 지원방식 : 시·도별로 해당 지역에 예상되는 수급불안 상황을 분석하여 주요 품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발굴, 농식품부에 신청 → 농식품부는 각 시·도의 신청 내용을 평가 →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생산·조정을 통해 예산 지원

시행일

-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2026년 1월 1일 이후
- (농산물가격안정제) 2026년 8월 27일 이후

* 선제적 수급관리 사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기준가격(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고시) 미만으로 하락해 손실이 발생되면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발동

마늘, 양파 대상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6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늘, 양파 대상으로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민간의 수급조절 역할도 강화됩니다.**

* 밭작물지정출하(시범) 예산: (2025) -백만원 → (2026) 2,809백만원 (순증)

- ▶ 기존 수매비축과 달리 정부가 직접 매입하지 않고 농협 등이 매입한 물량을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지정한 출하처(도매시장, 유통업체 등)로 출하하게 하고 필요한 저장비·유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 ▶ 정부가 직접 물품대를 지급하여 비축(소유)하는 방식과 함께 보다 많은 민간위탁비축 물량을 확보하여 단경기 등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 신규 도입

추진배경

정부가 직접 물품대를 지급하여 비축(소유)하는 방식과 함께 보다 많은 민간위탁비축 물량을 확보하여 단경기 등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 대응

주요내용

밭작물지정출하(시범) 예산 (2025) -백만원 → (2026) 2,809백만원

시행일

2026년 비축지원 사업부터 적용(2026. 1. 1.~)

오리 방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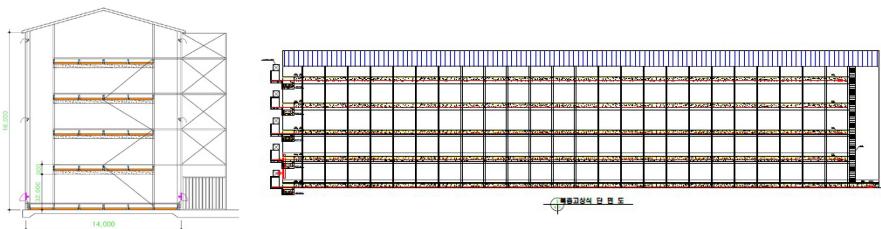
☎ 044-201-2338

생산성이 떨어지고 방역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오리 축사를 현대화된 6단 이하의 고상식시설의 무창축사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오리 사육시설 개선사업 : 보조 10%, 융자 50%, 자담 40% (지방비 대체 가능)

- ▶ 오리 사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산업 성장 유도를 지원합니다.

고상식 축사 시설도안(정면·측면)



오리 방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사업 도입

추진배경

거울철 오리 휴지기제는 안정적인 산업 발전과 농가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여 AI 방역 효과 및 오리산업 육성 등을 고려한 근본적 대책 필요

주요내용

- 방역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를 현대화된 6단 이하 고상식시설의 무창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 지원

* 오리 사육시설의 76.3%는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로 AI 예방에 매우 취약

지원내용

- 사업주관기관: 시·도 /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 사업기간: 2년
- 지원대상: 가설 건축물을 6단 이하의 고상식으로 개축하려는 오리 농가
- 선정절차: 시·군(신청) → 시·도(검토) → 농식품부(자체심의·선정)
 -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는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시행일

2026년 1분기 신청 모집 예정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 044-201-2478

스마트팜 전용 홍보 플랫폼 조성을 위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 ▶ 국내 스마트팜 관련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전시·실증 및 스마트팜 기업의 수출 업무 지원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국내 기업 제품·모형 상시 전시, 해외 바이어 초청 마케팅 행사 개최, 관계자 대상 수출 역량강화 교육 및 업무지원시설 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알림소식 > 공지/공고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추진배경

스마트팜 수출 반등을 위해 현행 프로젝트 중심 수주 및 현지 홍보 지원과 더불어 국내 방문자 대상의 마케팅 다변화 필요

주요내용

- 다양한 국내 스마트팜 연관 제품을 상시 전시·실증·홍보하고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수출지원 플랫폼 조성
- * 광역자치단체 대상 공모(~2025. 12.) → 사업대상지 선정(2026. 1분기) → 수출지원센터 조성(~2028)

시행일

2026년 상반기

부산 영도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개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051-773-6225

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 내 조성 중인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가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됩니다.

- ▶ 지역 기업에 입주, 협업의 공간을 제공하고 해양클러스터 내 공공기관, 대학과의 상시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거점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단순 기업 입주 공간이 아닌, 센터 내에서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 2026년 상반기에 해양수산분야 유망 중소·중견 및 스타트업 기업(약 35개 내외)을 모집하고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 영도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개소

추진배경

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 내 인프라를 활용한 해양산업 육성

주요내용

- (해양수산 유망기업 입주) 클러스터 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해양산업과의 연계·혁신·성장을 위해 혁신기업 입주·협업 공간을 제공
- (입주기업 지원) 협업공간, 회의실, 시제품제작실, 연구개발실, 창고 등 활용 공간 지원 및 연구개발, 기술실증, 사업화 등 기업성장 지원

시행일

- (산학연 협력센터 개소): 2026년 상반기 예정
- (기업 입주): 2026년 상반기 입주공고, 하반기 입주 예정

수산물 이력제 참여 기준 완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51-773-5639

그간 수산물 이력제 참여를 위해 유통사나 양식장에 요구하던 기준들을 대폭 완화합니다.

- ▶ 유통사들이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지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신청을 하고 심사받아야 했으나, 본사의 공급망을 심사하고 등록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본사를 포함한 지점 전체가 등록되도록 개편합니다.
- ▶ 양식장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하는 경우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수산물 관련 인증 등을 받으면 기록·관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합니다.

수산물 이력제 참여 난이도 완화

추진배경

유통사·양식장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기준 완화 추진

주요내용

- (유통사) 전국에 동일한 유통망을 가진 유통사들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개별 지점이 아닌 본사의 유통망을 심사하여 기준 부합 시 지점 일괄등록
- (양식장) 수산물 관련 인증* 등을 받은 양식장의 항생제 등 약제 사용 내역 기록·관리 의무 면제
- 양식장 HACCP,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 인증 등
- 2026년 상반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수산물 이력제 등록 신청을 하는 분부터

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수출기공진흥과 ☎ 051-773-5483

**그간 초보-성장-고도화 등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수산식품 수출바우처가
내수기업의 수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내수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 2026년부터 전년도 수출실적 1만불 미만의 기업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기존 초보(40개사→60개사), 성장(39개사→58개사), 고도화(21개사→31개사) 바우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별 지원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지원대상자 확대

추진배경

성장사다리형 바우처 활성화를 통한 수산식품 수출 역량 강화

주요내용

- (내수바우처 신설)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내수 바우처를 신설하여 “내수→초보→성장→고도화” 성장사다리 체계구축

*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불 미만 기업 / (초보)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50만불 그리고 매출액 1억원 이상 / (성장)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500만불 / (고도화)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확대) 2025년 초보-성장-고도화(100개사) → 2026년 내수-초보-성장-고도화(158개사), 2025년대비 단계별 지원자격 완화

시행일

- (내수바우처 신설): 2026년 1월 이후 사업대상자 공모 시부터
- (지원확대): 2026년 1월 이후 사업대상자 공모 시부터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단가 인상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5466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 ▶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율(9% → 9.5%) 및 기준소득월액(103만원 → 106만원)이 인상되어,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 수준이었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50,35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산출식 : 106만원(가입신고 소득월액)×9.5%(보험료율)×50%(지원율)=50,350원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단가 인상

추진배경

국민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및 농·어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농·어업인 기준소득월액 등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단가지원 상향 필요에 따라 지원 단가 인상 추진

주요내용

-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 (연금보험료)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 지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국내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가능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051-773-5366

그간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해기사는 내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외국인 해기사 또한 승선할 수 있도록 개정한 「선박직원법」이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 기존에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외국인 해기사가 국내 선박 직원이 될 수 있었지만,
 - 이제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 ▶ 우선 참치연승어업에 한정하여 시행되며 내국인 해기사 처우개선과 병행하여 원양업계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알림·뉴스>보도자료>「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가능

추진배경

기존 해기사 고령화 및 신규 유입 제한에 따른 인력난

주요내용

·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5년 12월 17일

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51-773-5455

2026년 1월부터 어업인이 직접 온라인에서 직불금 신청현황을 확인하고, 스스로 자격요건을 검증할 수 있는 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 사용자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포털에 접속하여 직불제별 신청내역과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 별도 문의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자격요건 검증 서비스를 통해 본인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충족여부와 신청 가능 직불제, 예상되는 수령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최적의 직불금 선택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금번 어업인 맞춤형 민원서비스 도입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증진되고, 향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 >수산공익직불제(e 수산공익직불 서비스)

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 개시

추진배경

온라인 대국민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주요내용

- 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PC/모바일) 개시
- 본인인증을 통한 직불제별 신청 처리현황 조회 및 알림서비스 기능 구현
- 직불제별 셀프 자격요건 검증과 최적의 직불금 정보 안내

시행일

2026년 1월

수산자원조성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51-773-5531

그간 일괄적으로 부과·납부되던 수산자원조성금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 분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 2026년 1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2 신설
- ▶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성금분할납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제처 누리집>입법예고>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안

수산자원조성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추진배경

경기침체 및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등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수산자원 조성금 분할 납부 가능

·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조성금분할납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

시행일

2026년 1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실시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 051-773-5604, 5608

그간 무단 방치 불법 어구가 명확함에도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도·단속이 어렵고, 행정대집행 이행절차의 장기간(2개월 이상) 소요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산업법 개정(2026. 4. 23.)으로 무허가, 조업금지 등 법령위반 불법 방치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폐어구는 해양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유령어업(연간 4천억 피해, 어업생산금액의 10%), 선박 추진기 김김사고(연평균 378건) 등 경제적 피해 유발

- ▶ 이외에도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자망·통발·장어통발·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 어업 어선에 ‘어구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어업인의 어구 사용 및 폐어구 처리를 관리·점검하는 “어구관리기록제”,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신고제”를 도입하여 어구 사용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 또한, 폐어구 회수 촉진을 위해 세계 최초로 시행된 어구보증금제 대상 어구를 기준 통발(2024.~)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2026. 1. 1.~)합니다.

새로운 어구관리 제도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현장에서 불법 어구·시설물 발견 시 즉시 철거 집행

어구관리기록제



적재 및 설치한 어구의 사용 종류·수량, 유실어구 기록

유실어구신고제



일정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경우 신고

어구 보증금제 확대 시행

26.1.1. 제도 확대 시행 (자망·부표·장어통발 추가)		
적용대상	근해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보증금액	그물: 2,000원/ea	장어 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25L 미만: 300원/ea 25~50L 미만: 1,000원/ea 50~100L 미만: 3,000원/ea 100~50L 미만: 6,000원/ea 500L 이상: 30,000원/ea
보증금표식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①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
②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실시

추진배경

폐어구 발생 예방 등 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를 통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주요내용

- (불법 방치어구 즉시 철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폐어구 발생을 유발하는 불법 어구의 신속한 철거를 위한 특례제도 시행
 - * 기존에는 방치어구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거쳐야 했으나, '불법어구 즉시철거제'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자망·통발 등 업종의 어선에 '어구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어구의 적법 사용 유도 및 무단방치 사전 예방
 - * 출항 시 적재량, 조업 중 설치량, 조업 후 폐기량 등을 기록·보관
- (유실어구 관리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가 유실된 경우, 유실량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시행
 - * 자망(1천 미터 이상), 통발·장어통발(100개 이상), 안강망(1통 이상)에 대해 어업인 신고로 파악된 유실어구 DB를 구축하여, 선박의 안전향해 및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에 활용
-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시행일

-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2026년 4월 23일 이후
 - * 불법어구 즉시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2026년 1월 1일 이후

식품안전 비상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 043-719-1752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WHO와 함께 식품안전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 ▶ 주요 협력분야는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과 식품안전 비상대응계획 개발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합니다.
- ▶ 이를 통해 글로벌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고,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로 더 빠르고 정확한 원인 규명 및 대응이 가능해져 식품안전 수준이 향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식품안전 비상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11.27. 지정완료)

식품안전 비상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운영

추진배경

글로벌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조기 대응을 위해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주요내용

- WHO와 함께 인포산(INFOSAN)*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지원
- 식품안전 비상사태나 위해식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을 목적으로 2004년 FAO/WHO가 설립한 국제식품안전당국네트워크로 현재 약 188개 회원국이 활동
-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FSER)* 개발 등이 필요한 회원국 대상 기술 지원
- 다양한 식품안전위험과 비상상황에 대한 관할기관 대응·운영체계 확립 관련 기술문서

시행일

2026년 1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23

내년부터 김치, 고추장, 인삼제품, 식혜, 곶감 등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국제 식품규격을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설계합니다.

- ▶ 식약처는 2025년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CODEX* 총회에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의장국으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내년부터 의장국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
- ▶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는 김치·고추장·인삼제품·식혜·곶감 같은 한국의 대표 식품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통조림·절임·건조된 과일·채소류 등 폭넓은 품목을 다루는 핵심 분과위원회입니다.
- ▶ 이를 통해 수입국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한국식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넓히는 등 K-푸드가 국제사회에서 더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 K-푸드 국제위상 강화 쾌거!(11.17.)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 선출

추진배경

제48차 CODEX 총회(2025. 11., 로마)에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의장국으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의장 역할 수행

주요내용

· CODEX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식약처가 의장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우리 식품의 세계규격 운영을 주도

시행일

2026년 1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043-719-2117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인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 적용을 적극행정을 통해 2026년부터 조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등급제 조기 도입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한 급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추진배경

안전한 급식환경의 조기 도입을 위해 적극행정 시행

주요내용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만 적용하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집단급식소까지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先시행**
- 식품위생법 개정 2025. 4. 1., 시행 2028. 7. 1.
- 기존 3등급의 위생등급 지정을 단일화하여 소비자·영업자 만족도 제고



시행일

2026년 상반기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62

식습관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촘촘한 영양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영양불균형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장애 유형별 식이 습관, 식행동 등 식이 섭취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불균형 우려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 ▶ 가정에서 장애인 본인, 보호자 등이 건강한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양관리 가이드(맞춤형 식단, 식사 지침 등 포함)를 제작·배포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입니다.
- ▶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영양관리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 제공

추진배경

발달장애인은 감각 이상, 제한된 식이 선호 등으로 영양불균형 우려가 크지만, 건강 식생활을 위한 체계적 관리·지원 부족

주요내용

- 장애 유형별 식이 섭취 현황 조사를 통해 영양불균형 우려 요소 분석
-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단, 식사 지침 등 개발
-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영양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및 교육·홍보

시행일

2026년 12월

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을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043-719-3213

2026년부터 식품위해예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운영합니다.

- ▶ 식품위해예측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까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해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 위해요소 모니터링 정보와 실시간 위해요소별 영향인자를 연계하여 위해요소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 ▶ 식품위해예측 시스템을 통한 예측 결과를 식품안전관리의 정책에 반영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운영

추진배경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우려 위해요소가 다양해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과학적 위해예측 필요

주요내용

- (법적근거) 「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의3
- (기관지정) 위해예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공모 지정
- (주요업무)
 - 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2. 기후·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연구
 - 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 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 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 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시행일

2026년 3월 19일(예정)

시험성적서 면제범위 확대 등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 개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 063-238-0825

천연식물보호제의 미생물농약 등록 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등록 기준을 완화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가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 ▶ 기존에는 미생물농약도 화학농약과 동일한 이화학 및 약효·약해 시험 기준을 적용받아, 등록업체가 시험성적서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 ▶ 이번 개정으로 미생물농약의 등록 시 일부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되고 기준도 완화되어 미생물농약 등록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미생물농약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는 2025. 11. 21. 개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누리집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농촌진흥청 법령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21호)

화학농약과 구별되고 기준이 완화된 ‘미생물농약 등록기준’ 마련

추진배경

미생물농약 등록기준 개선으로 등록 활성화 제고

주요내용

- (미생물농약 등록기준 명확화) 화학농약 등록기준과 혼재되어 있던 미생물농약 등록기준을 구분하여 명시함에 따라 신청인이 쉽게 확인 가능
- (제출서류 면제 확대) 국내 식물 및 토양에서 유래한 미생물인 경우 제출 면제, 문헌·논문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등

시행일

2025년 11월 21일

농작업안전관리자 확충으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 컨설팅 확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과

☎ 063-238-1036, 1037

2025년에 처음 도입한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2026년에는 44개 시군에 농작업안전관리자 88명을 배치하여 안전 컨설팅을 확대 실시합니다.

- ▶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여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주를 대상으로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5인 이상 고용 농업경영주'를 컨설팅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 아울러,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농촌현장의 안전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 컨설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추진합니다.

농촌진흥청 누리집>보도자료>농작업안전관리자 신규모집

농작업 안전 컨설팅 확대 추진

추진배경

현장 안전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기반 조성

주요내용

안전보건 자격·경력자를 농작업안전관리자로 배치(시군 2명)하여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주를 대상으로 농작업 위험성 평가 등 안전진단·개선 조치를 수행

* 농작업안전관리자 : ('25) 20개시군 40명 → ('26) 44개 시군 88명

2026년 농작업안전관리자 각 지역 배치 현황

(단위: 기관, 명)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	14	10	8	12	8	8	12	12	4
시군	용인(2)	원주(2)	청주(2)	천안(2)	정읍(2)	화순(2)	경주(2)	진주(2)	제주(2)
	평택(2)	홍천(2)	충주(2)	아산(2)	남원(2)	해남(2)	안동(2)	사천(2)	서귀포(2)
	광주(2)	횡성(2)	보은(2)	논산(2)	김제(2)	무안(2)	구미(2)	의령(2)	
	이천(2)	영월(2)	영동(2)	금산(2)	장수(2)	함평(2)	경산(2)	함안(2)	
	여주(2)	화천(2)		부여(2)		청송(2)	창녕(2)		
	양평(2)			태안(2)		예천(2)	함양(2)		
	가평(2)								

시행일

2026년 1월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 063-238-0490

2025년 11월 대국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ADP)이 2026년에는 농업인·연구자·기업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충과 개방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 ▶ 기존에 개방된 연구·기술보급·스마트팜 등 800여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병해종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이후 농업위상영상 등 핵심 데이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검색·활용토록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농업연구·기술보급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국민과 함께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실현 및 AI 대전환 기반 강화

주요내용

병해종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및 외부 연계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품질 개선

시행일

2026년 12월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1

그간 임업후계자 등록을 위해서는 연령(55세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 기준을 폐지하여 7월부터 연령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 ▶ 이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55세 이상의 사람도 연령 제한 없이 임업후계자 요건*을 갖추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독립기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또는 수익분배림 설정받은 사람
- ▶ 임업후계자 신청은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관보 > 검색하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378호\)](#)

임업후계자 55세 연령 제한 폐지

추진배경

은퇴 연령, 임업인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을 폐지

주요내용

· 고령화 시대에 임업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55세 이상의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

시행일

2026년 7월(공포 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국방·병무

0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274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신설·인상되었습니다.
- 5~6년차는 기존에 없던 기본훈련·작계훈련 참가비가 새로 지급되며, 1~4년차 훈련비 인상 및 급식비(도시락비) 역시 인상되어 훈련 여건이 개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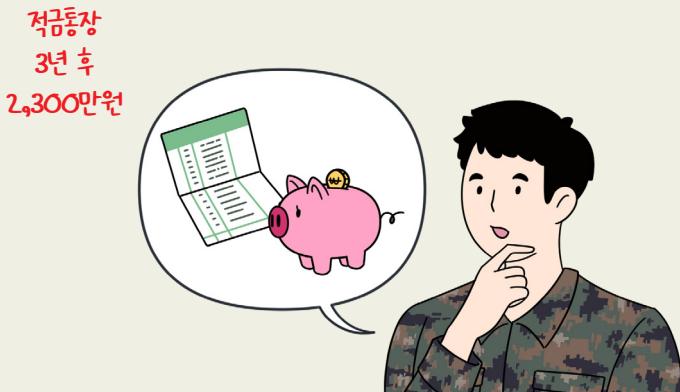
02.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275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시행일: 2026년 3월 1일

-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를 대상으로, 적금 가입 시 정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합니다.
-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 원(정부지원금 1,080만 원 포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시행일: 2026년 3월

- 기존에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을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합니다.
- 지급 기준은 1학년 1학기 성적순입니다.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 02-748-5241

전역 후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신설 및 인상하였습니다.

- ▶ (신설) 5~6년 차 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의 훈련비를 최초 지급하고,
* 기본훈련(연 1일 / 8H) : 1만원, 작계훈련(연 2일 / 각 6H, 총 12H) : 1만원
- ▶ (인상)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 / II형 훈련비를 인상하였으며, 예비군의 급식비(도시락비) 또한 인상하여 예비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하였습니다.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추진배경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예비군훈련 유형별 참가비 지급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모든 유형의 훈련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급식비 단가를 인상

주요내용

(단위: 원)

구분	2025년	2026년
지역예비군 훈련비 신설	5~6년 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	-
	학생예비군(기본훈련)	10,000
동원훈련 I형 훈련비 인상	82,000	95,000
동원훈련 II형 훈련비 인상	40,000	50,000
급식비 인상	8,000	9,000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4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 정부지원금 지원은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하며,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은행이자 포함)의 자산형성이 가능합니다.
* 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정산 입금되며, 만기 시 수령 가능
- ▶ 적금 가입은 관련 법 개정 및 은행시스템 준비 기간 고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협약 은행(5개) : IBK기업, 신한, 하나, KB국민, 군인공제회

군인사법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추진배경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

주요내용

-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법 개정시행 이후)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 정부지원금은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하며, 만기 시 약 2,300만원(지원금 1,080만원 포함)의 자산형성 가능

시행일

2026년 3월 1일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23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 격려를 위해 그간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꿈도전지원금을 2026년도부터 군무원 자녀도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 ▶ 군인과 동일하게 군무원도 전국단위 인사교류 실시로 격오지 등 자녀 교육여건이 열악한 점, 군무원 대규모 증원 및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복지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군인·군무원 자녀 대상 통합하여 꿈도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산범위(28억원) 내 1학년 1학기 성적순 지급,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
- ▶ 꿈도전지원금 지급 지침 개정은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개정의 재원과 용도)

꿈도전지원금 군인 및 군무원 자녀 통합 시행

추진배경

군인복지기금법상 기금용도로 명시된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시행 필요, 군무원도 찾은 전학·격오지 거주 등 자녀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 고려

주요내용

- 기존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을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시행
- 1학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순 지급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5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영천고, 2026. 3.)가 개교합니다.

- ▶ 2026학년도 신입생(총 132명, 6학급) 모집은 군인자녀와 일반자녀를 구분하여 군인자녀는 전국단위로, 일반자녀는 학교 소재 시·도 지역에서 모집하겠습니다.

* 군인자녀 모집비율 : 전체의 50% 모집(2027년부터 점차적 비율 확대)

향후에도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송담고(2028년), 강원도 화천고(2030년)

군인자녀모집특례규정 제2조(정의), 3조(적용대상)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추진배경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군인자녀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주요내용

-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전국단위로 군인자녀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반영
- 군인자녀 모집 대상에 전사자·순직자 군인자녀도 포함

시행일

2026년 3월 3일(영천고)

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장병e음') 제공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 | ☎ 02-748-5998

그간 장병들에게 ▲ 입대 전 입영 신청, ▲ 복무 중 신분 인증,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국방 분야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불편했던 서비스들을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 이를 통해 군 장병의 생활 편의성 개선 및 접근성이 강화되고, 본 플랫폼을 통해 추후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장병e음') 제공

추진배경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장병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사/행정복지·교육·의료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

주요내용

- ('장병e음' 구축) 기존 개별 시스템에서 제공되던 국방 서비스를 모바일 중심으로 통합 구축
 - * 이용 대상 : 최대 700만 명(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공(교)무원, 장병 가족)
- (제공 서비스) 장병이 원하는 40개 핵심 서비스 제공
 - 인사/행정분야 : 신분 인증, 증명서 발급, 휴가/출장, 동원훈련 연기 신청 등
 - 복지분야 : 교통 예매, 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
 - 교육분야 : 온라인강좌 신청, 맞춤형 e북 지원, 디지털 독서지원 신청 등
 - 의료분야 : 군 병원 예약,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 심리검사 등
- (주요 연계 시스템) : 인사정보체계, 수송정보체계, 의료정보체계, 군인연금체계, 동원정보체계, 통합급여체계, 나라사랑포털, 국방 및 각군 복지포털 등

시행일

2026년 1월, 2026년 7월(생성형 AI, 병무 행정 등 추가 서비스 예정)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7485

지속적인 식자재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 동결되어왔던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3,000원에서 2026년 1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 그동안의 식자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장병 급식비 단가를 4년 만에 현실화하였으며, 급식 질 개선을 통해 균급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기본급식비 단가(원) (1인 1일)	13,000	14,000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추진배경 지속적인 식자재 물가상승에도 지속 동결되어온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를 인상하여 균급식만족도 제고

주요내용 1일 3끼의 균급식을 위한 식자재 구매에 투입되는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를 인상

구분	2025년	2026년
기본급식비 단가(원) (1인 1일)	13,000	14,000

시행일 2026년 1월 1일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국방부 유무인복합체계과

☎ 02-748-5431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합니다.

- ▶ 미래 전장의 핵심전력으로 급부상한 드론을 장병 모두가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여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 장병이 자율적으로 新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군 생활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 이를 위해 국산화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하여 소부대 작전대응능력 강화와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 누리집>보도자료>“안규백 국방부장관, ‘50만 드론전사 양성’선언”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추진배경

미래 전장의 핵심전력인 드론을 장병 모두가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구비하고, 복무기간 내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주요내용

- 2026년에 330억원을 편성(약 만천여 대 확보)하여 교육용 상용 소형드론을 확대 보급
-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시행일

2025년 9월 3일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교육훈련정책과

☎ 02-748-6261, 6244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전 장병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국가방위’라는 군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신념화하기 위한 장병교육을 강화합니다.

-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을 위한 연구기관의 선행연구와 표준교안을 바탕으로 2025년 후반기부터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 2026년도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관학교는 2026년부터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신설 및 필수과목화하여 전 생도가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추진배경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

주요내용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관련 선행연구 및 표준교안 제작, 전 장병 집중교육
- 간부 대상 온라인과정 개설 및 교육 이수 의무화, 전 사관학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신설 및 필수과목화

시행일

2025년 6월, 2026년(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신설 및 필수과목화)

우리 장병들이 입는 군수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 ☎ 042-724-6332

전투복, 방상내·외피 등 장병들이 직접 사용하는 군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을 강화합니다.

* 업체생产能력 확인 : 제조공장, 제조·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등 업체 생산능력을 확인하여 적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 기존에는 1회성으로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확인 범위를 제조공장·생산인력까지 확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도록 지속 관리합니다.
- ▶ 아울러, 중요 군수품에 대해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 전에 생산능력을 확인하겠습니다.

군수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

추진배경

군수품 안정적 공급과 품질확보

주요내용

전투복, 방상내·외피 등 주요 군수품에 대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기준 생산설비 위주의 1회성 확인에서 제조공장, 생산인력 및 설비 보유로 확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강화

시행일

2026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 ▶ 2026년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리 수검(입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추진배경

병역이행 과정에서는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수적이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에는 착오 발생 가능성 존재

주요내용

- 안면인식 활용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현행) 신분증 사진↔얼굴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
- (개선) 키오스크로 신분증 스캔, 진위확인 후 신분증 사진↔얼굴 전자적 대조하여 확인

시행일

2026년 1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 ☎ 042-481-2924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을 확대합니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 그동안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입니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절차



이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 병역을 유도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추진배경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를 통해 공개제도 실효성 및 병역의 공정성 제고

주요내용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 (현행)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 (개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건물번호까지), 기피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여행국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적용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병무청 현역기획과

☎ 042-481-2717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 그동안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심사와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연간 약 7,5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행정처리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 ▶ 2026년도부터는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20세 이하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 된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국민 편의가 높아지고, 병무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진학 예정사유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추진배경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대학진학 예정 사유’ 연기 개선

병역의무자

- ‘대학진학 예정*’ 사유 연기 신청
- * 구비 서류 없이 연령·학력 정보로만 연기 가능한 사유

병무청

- (기준) 민원 접수 후 담당자의 심사 후 처리
- (개선) 신청 즉시 자동으로 연령·학력 정보 전산 매칭 후 자동처리

병역의무자

- (기준) 처리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 소요
- (개선) 즉시 처리 결과 확인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20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이 개선됩니다.

- ▶ 그동안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고등학교 출결점수 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 ▶ 2026년(1월 접수)부터는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역 모집병 선발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역 모집병 선발기준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추진배경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평가항목 정비로 병역의무자 부담 완화

주요내용

평가항목	개선사항	적용대상
면접 및 고등학교 출결점수	폐지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모집분야 (단, 9개 특기는 면접 실시*)

* 면접유지 9개 특기

- 육군(6개) JSA경비병, 33경호병, 훈련소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공군(2개)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해병대(1개) 의장병

시행일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I형) 연기 항목 신설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사유 동원훈련(I형)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 ▶ 그동안은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예비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예정)’ 시에만 동원훈련(I형) 연기가 가능하였으나,
- ▶ 2026년도부터는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 동원훈련(I형)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동원예비군 편의 제고 및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I형) 연기항목 신설

추진배경

동원예비군 편의 제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필요

주요내용

-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 사유 동원훈련(I형) 연기기준 신설
 - (배우자 난임치료)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I형) 연기 가능
 - (예비군 출산휴가)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I형) 연기 가능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I형) 연기기한 확대

병무청 동원관리과 | ☎ 042-481-2791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I형) 연기기한이 확대됩니다.

- ▶ 그동안은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I형) 연기는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가능했으나,
*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 ▶ 2026년도부터는 훈련시작일부터 60일의 범위 내에서 예비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까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경제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I형) 연기기한 확대

추진배경 청년층의 경제활동 보장 필요

주요내용 ·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 I형 연기기한 확대

- (종전)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연기
- (개선)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 본인 희망일자까지 연기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7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학업을 마친 후 적기 사회진출이 필요한 경우, 우선 병역이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되므로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적기 병역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 ▶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적기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들의 적기 사회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병역이행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소집 희망 시기 반영 등을 통해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적기 사회진출 지원 방안 필요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 후 계속 소집대기 중인 사람
 - * 소집 통지, 연기 이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졸업예정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선소집 신청서 제출
 - * 지역별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희망 시기 반영 소집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시행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미리 교육하여 복무적응을 돋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 (법 제55조·영 제107조)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30일 이내)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집일부터 1년 이내 실시

- ▶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교육을 입영부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에 대한 기본사항과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숙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2026년부터는 군사교육소집 중인 전체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적응교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적응 및 안정적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추진배경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을 돋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적응교육 전면 실시 필요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이 입영부대를 방문, 군사교육소집 중인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도 함께 홍보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축소 등 교육환경 개선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09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과정 반별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여 소규모·참여형 교육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지방병무청이 단체수송을 실시합니다.

- ▶ 그동안 대규모 인원 편성으로 교육공간이 협소하여, 실습 제한 등 교육효과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고,
- ▶ 충북 보은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는 단체수송을 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의 이동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실질적인 토의식 수업 및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단체수송을 통해 집합시간 준수 및 행정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축소 등 교육환경 개선

추진배경

교육 집중도 및 만족도 제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40명 → 30명으로 축소, 소규모·참여형 교육 강화
- 충북 보은 소재 연수센터 단체수송 지역 충북청까지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중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 그동안은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중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만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 2026년부터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추진배경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 시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점 개선

주요내용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한 사람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포함하도록 선정 기준 개선

시행일

2025년 7월 7일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세한 내용은 p.298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

시행일: 2026년 2월 12일

-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이 실시간 응답 체계로 개선됩니다.
- 온라인(AI·챗봇)·전화(ARS) 모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시 상담원 연결도 제공됩니다.
- 실시간 답변이 어려운 경우, 최대 3영업일 이내 처리됩니다.



02.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300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1인당 총 1개의 계좌 개설 가능).
- 압류금지 금여채권의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망보험금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함께 확대됩니다.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시행일: 2026년 1월

-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됩니다.



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 필요 시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시행일: 2026년 2월

- (기존)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 (변경)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리도록 확대합니다.



05.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314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혜택알리미) 확대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2026년부터 전면 확대됩니다.
- 정부24·국민비서와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던 맞춤 안내가 모든 공공서비스 분야로 넓어지고, 이용 가능한 민간 앱도 확대됩니다.



06.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18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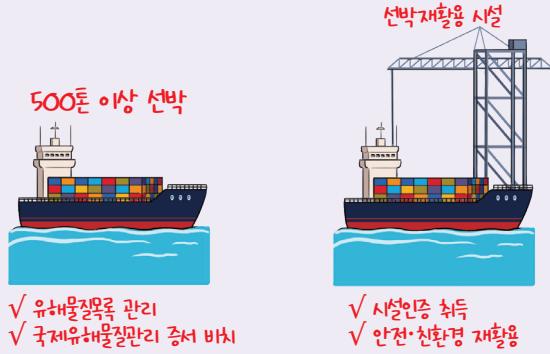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피해자 보호용 안전장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선박이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시행일: 2026년 하반기(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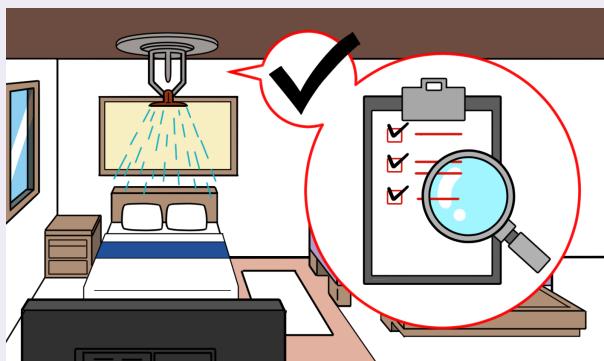
- 「선박재활용법」이 시행됩니다.
 - 국제항해 500톤 이상 선박: 유해물질목록 관리,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비치
 - 선박재활용 시설: 시설인증 취득 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안전·친환경 재활용 실시
-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재활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합니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공개

2025년 12월 1일

-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점검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스프링클러 관련 정보는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 앱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 044-202-6772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이 2월부터 실시간 처리(답변)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대상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 ▶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의 유·무에 관계 없이 온라인(AI, 챗봇 등)과 전화(ARS) 시스템을 통한 다채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자 필요시에는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 기능이 제공됩니다.
- ▶ 모든 이용자 요구사항은 실시간 처리(답변)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 3영업일 이내 처리됩니다.
※ 법령의 해석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3영업일 이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그 기한까지 답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체계(ARS)를 통한 실시간 상담 창구 의무화”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

추진배경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의 상담 기능 없이 고객센터를 단순연결 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개선하여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이용요금 부과의 유·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온라인 및 ARS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처리를 제공
- 이용자가 온라인 및 ARS 상담 시 불편을 느끼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원 연결 기능을 제공

시행일

2026년 2월 12일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 044-202-6292

AI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 AI기본법은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상 지원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 또한,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법으로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에게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고, 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 ▶ 기업 등에 대해 과태료 등 불이익한 제재보다 안내와 계도를 통해 의무 이행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나아가, 계도기간 동안에는 전문가 컨설팅, 비용지원 등 기업의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

추진배경

AI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조성

주요내용

- AI R&D, 학습용데이터, AI도입·활용, 전문인력 등 AI 산업 지원 근거 마련
-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영향AI 제도 등 AI안전·신뢰 기반 조성 사항 반영
-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를 위하여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 계도기간 동안 컨설팅·비용 지원 등 기업의 의무이행 참여 지원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 02-2110-3164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 채무자는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
- ▶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고,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도 상향*됩니다.

* 사망보험금 1,000만원(현행) →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일부) 150만원(현행) → 250만원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추진배경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두텁게 보장

주요내용

-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 신설
 -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를 250만원으로 규정
 -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으로 규정
-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 상향

유형	현행	개정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	250만원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	월 185만원	월 250만원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사망보험금 1,000만원	1,500만
	만기·해약환급금(일부) 150만원	250만원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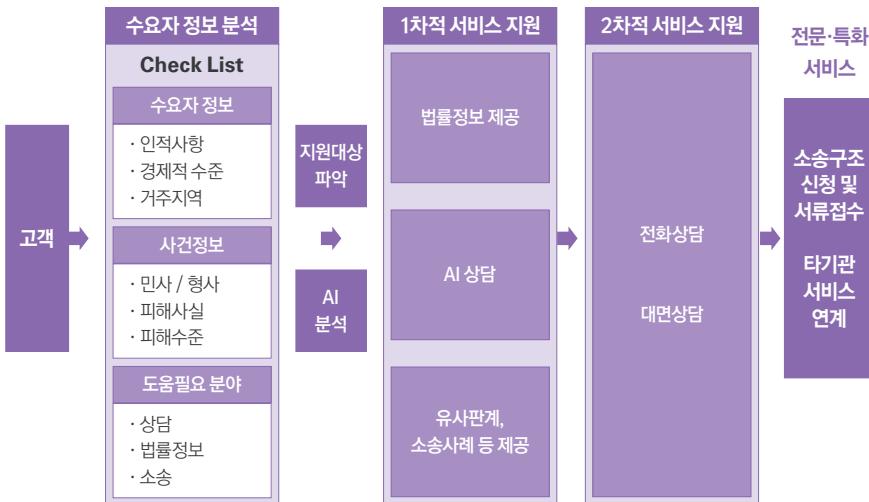
법무부 인권구조과

☎ 02-2110-3743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https://www.helplaw24.go.kr>)



- ▶ 인공지능(AI)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법률상담과 접수, 진행과정 및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게 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추진배경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 필요

주요내용

-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AI 검색을 통해 맞춤형 지원 제공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증진

시행일

2026년 1월 21일(예정)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 02-2110-31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5. 11. 11. 일부개정)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임인상 제한 규정(연5%)을 회피하여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명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배경

상가건물에서 차임인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 발생

주요내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한 「민법」개정안(2024. 9. 20. 일부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 이 법률이 시행되면,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고,
 -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개정

추진배경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주요내용

- (청구권자)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유언이 없을 경우, ① 공동상속인 ② (상속 가능한)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 (청구사유) ①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②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상속권상실선고) 가정법원은 위반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구 인용 또는 기각

시행일

2026년 1월 1일(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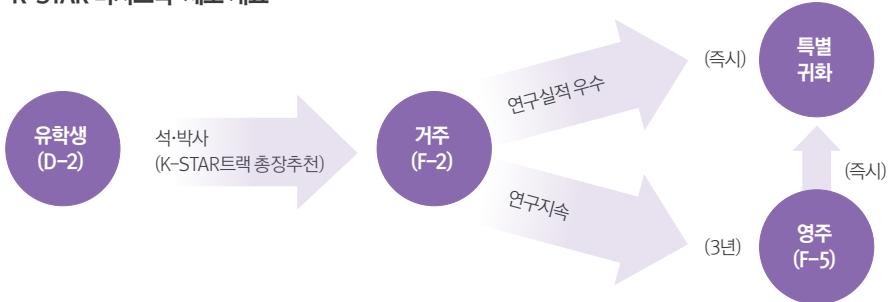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법무부 체류관리과 | ☎ 02-2110-4069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STAR: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K-STAR 비자트랙’ 제도 개요



(주요혜택) △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추천된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 출입 즉시 거주(F-2) 자격, 3년 후 영주(F-5) 자격 신청 가능
- △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는 경우 특별귀화 신청 가능

- ▶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기존의 5개 대학 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된 27개**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추가선정 27개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 ▶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500~6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우수인재 정착유도를 위해 「K-STAR 비자트랙」 신설”

「K-STAR 비자트랙」 신설

추진배경

우수인재 유치·유출방지를 위해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귀화를 촉진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K- STAR* 트랙’으로 개편하여 제도 확대

* K-STAR: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주요내용

- (대상확대) 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 소속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 유학생(D-2)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혜택) △총장 추천서만으로 거주(F-2) 자격 부여 △거주(F-2) 3년 체류 후 영주(F-5) 자격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

시행일

2026년 1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 02-2110-4377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신고 절차가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취업정보 신고 대상 외국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중 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 이에 법무부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누리집에서 방문예약 시 취업정보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 ▶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hikorea.go.kr)를 통한 방문예약 시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연간소득)를 온라인으로 신고(현행화)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직후 취업정보를 처음 신고하는 경우 및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인은 보다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추진배경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민원 편의성 제고

주요내용

- 2026년 1월 2일(금)부터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려는 외국인 중 취업정보 신고 의무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누리집을 통한 관서 방문예약 단계에서 본인의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함.
-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 신고 방식은 기존의 서면 신고에서 온라인 신고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이코리아(hikorea.go.kr) 누리집을 통해 취업정보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시행일

2026년 1월 2일(금)

※ 시범운영기간('26. 1~6월) 중에는 온라인신고제와 서면신고제를 병용함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법무부 보안과

☎ 02-2110-3390

그간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변호인접견을 실시하였지만,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도입하여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에서 시범운영(2025. 10.~2026. 4.)

-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 ▶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 위반 행위(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 및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수용자의 재판권 및 변호인의 접견권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운영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추진배경

수용자가 소송서류 작성 등 재판 준비를 위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수용자에게 법률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접견 방법 개선

주요내용

-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
- 청취 및 녹음·녹화 기능 제외한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 구축
-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2025. 10.~2026. 4.)
- 추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 후 단계적 확대 시행

시행일

2025년 10월

365 스마일 운영

법무부 인권구조과 | ☎ 02-2110-3476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임시거처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주말·야간 상담과 방문·비대면 상담(365 스마일)을 시작합니다.

* 주말·야간 상담 운영 기관: 서울동부·대구스마일센터
찾아가는 상담 운영 기관: 춘천·목포·창원스마일센터 등

- ▶ 직장인·학생 등 생업·학업 등으로 평일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해 토요일(9~18시) 및 평일 야간(~21시) 상담을 도입하여 범죄피해자의 접근성과 심리치료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또한, 물리적 거리, 신체·정신적 상처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차량'(방문)과 '어디서나 심리지원'(비대면) 체계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밀착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과 일상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접근성 및
심리치료 효과 제고

접근성·심리치료 강화를 통한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 및 실질적 자립 도모

365 스마일 운영

추진배경 365 스마일 운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

주요내용

- 스마일센터 야간·주말 운영
- 학상·유선 등 비대면 상담 및 심리지원차량 운영

시행일 2026년 3월 예정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법무부 인권구조과

☎ 02-2110-3642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에게 기준금액(피해자의 월 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기준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유족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 수를 상향·세분화하여 구조금이 인상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월 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분의 구조금이 보장됩니다.

* 2025년 하반기 기준 월 342만원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추진배경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상 일부 피해자(유족)에게 지금하는 구조금 미흡으로 피해 유가족의 생계가 곤란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상 기준 개월 수 상향
-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시행일

2026년 2월(예정)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법무부 인권구조과

☎ 02-2110-3746

2026년 1월부터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긴급 생활안정비는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으로 2025년 하반기 기준 342만원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생계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추진배경

범죄피해로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치료, 심리 상담, 수사 및 재판 참여 등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위기 피해자의 지원 공백 해소 필요

주요내용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상당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시행일

2026년 1월 예정

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 필요 시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044-205-4383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합니다.

- ▶ 최근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의 빈도 및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급박하게 주민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사이렌은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으로, 재해로 인한 전기·통신 시설 장애 시에도 자체 배터리로 약 48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긴급대피 필요시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통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 음 차이

민방공 경보(적의 공습)	재난 경보(지진해일, 호우, 산불 등)
사이렌 파상음(5'3'＼) 1분 +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2'2'＼) 12초 + 음성방송

재난 경보 사이렌 각종 재난 상황에 확대 운영

추진배경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민방위 사이렌(재난경보) 활용 필요

주요내용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재난 경보 사이렌이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하여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림

시행일

2026년 2월~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혜택알리미) 확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통합과 ☎ 044-205-2806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2026년부터 확대됩니다.

- ▶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정부24·국민비서와 민간 앱에서 가입·이용할 수 있고,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맞춤 안내를 제공해 왔습니다.
- ▶ 2026년부터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맞춤 안내하고, 더 많은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알림 분야	알림서비스 수	민간 이용채널
2025년	4개(청년·출산·구직·전입)	1,530종	5개(기업·우리·하나·신한은행, 웨로 앱)
2026년	전분야	6,000여종	7개(농협은행, 삼성카드 앱 추가 예정)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혜택알리미)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 필요

주요내용

- (알림 확대) 25년 4개 분야(청년·출산·구직·전입) 알림(1,530종)→2026년 전분야 알림(6,223종)
- (민간채널 확대) '25년 기업·우리·하나·신한은행, 웨로 앱→2026년 농협은행, 삼성카드 추가

시행일

2026년 상반기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044-205-5314

재난 피해자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 5. 27.)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폭넓게 신설·확대됩니다.

-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 ▶ 또한,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시설복구(건축물, 기계설비)와 경영안정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행정규칙(훈령, 고시)을 개정한 후,

- ▶ 2025년 3월 21일(경북 산불 발생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피해조사, 변경 복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추진배경

2025년 대규모 산불로 인해 농·어·임업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농·어·임·소금생산업) 지원 요건 중 주생계수단 삭제, 경영안정까지 지원 확대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시설 복구 지원

시행일

2026년 상반기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 ☎ 044-205-5168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재해예방을 위해 설정하는 방재성능목표를 미래 기후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기준을 개선합니다.

-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CMIP*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모형을 적용하고, 2100년(장기)까지의 기후영향을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결합모델 상호비교 국제 협력 프로젝트)
- ▶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개선하게 되면 현재 평균 52년 빈도 정도의 방재성능목표가 100~200년 빈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

추진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자체별로 기 공표(2022~2023년)한 방재성능목표를 뛰어넘는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

주요내용

- (강우 상향) 방재성능목표의 기준이 되는 강우빈도 상향
- (기후변화 모형) CMIP*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모형 적용

*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결합모델 상호비교 국제 협력 프로젝트)

시행일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통보(2025. 12.) 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하는 시점부터

사용자 중심의 재난·안전정보 통합 제공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 044-205-5388

그간 다양한 창구를 통한 재난·안전 정보 제공으로 이용이 불편하였던 재난안전정보를
「국민안전 24」로 통합합니다.

- ▶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 5종을 하나의 창구로 모아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재난 및 위험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상 상황 및 특보,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소 정보 등
- ▶ 「국민안전 24」는 2026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언제 어디서든 더욱 안전하게, AI 기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 본격 추진”

사용자 중심의 재난·안전정보 통합 제공

추진배경

너무 많은 재난·안전 정보 창구로 인해 국민께서 이용하기 불편하고 원하는 정보를 직접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서비스 일원화)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5종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
※ (現)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신문고, 어린이놀이시설 →
(改) 국민안전24
- (재난·안전 정보 제공)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재난·안전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제공

시행일

재난안전정보 통합 서비스 「국민안전24」 제공(2026년 상반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02-2100-6430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등 피해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 ▶ 내년부터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이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휴대용 안전장비 지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 누리집(mogef.go.kr)>유형별서비스>상담창구>여성폭력 상담>여성긴급전화1366(또는 국번없이 1366)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배경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 제공

주요내용

- (통합 지원) 발굴~대응~회복의 모든 단계에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하나의 지원기관에 상담, 주거,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 개편
- (보호 강화)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해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을 강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선박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51-773-5882

「선박재활용법」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동 법률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해야 하고, 선박검사 후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합니다.
- ▶ 선박재활용 시설은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를 갖추어 시설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재활용(해체)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박재활용법」 제정 및 시행

추진배경

- 「선박재활용협약」발효에 따른 국내법 제정 및 시행
-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으로 2023년 6월 26일 협약 발효요건(비준국 15개, 선복량 40%, 재활용실적 3%)이 충족되어 2025년 6월 26일 발효

주요내용

- 선박의 유해물질목록 관리 및 선박재활용, 선박검사,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선박재활용계획의 승인, 출입검사 및 항만국통제, 검사 대행 등을 규정

시행일

2026년 하반기(예정)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51-773-6265

2025년 4월 22일 「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와 관련, 2026년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됩니다.

- 그간 수중레저업의 등록, 변경 및 휴업 폐업 등의 행정업무는 해양수산부소속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였으나, 2026년 4월 23일부터는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어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민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6. 4. 23. 시행 예정)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추진배경

현재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등록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대다수 수중레저 활동이 해수면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단속 및 전문적인 안전관리 어려움 존재, 수중 및 수상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해양경찰청에 안전 및 등록 사무를 이관, 안전관리와 등록기관을 일원화하여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도모

주요내용

- (수중레저사업 등록사무 이관) 수중레저사업 등록·휴폐업 등, 이용요금의 신고, 행정처분 등의 사무를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서 수행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사무 이관) 안전점검 실시 및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종 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를 해양경찰청에서 수립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051-773-5892

그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계정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었던

'선박보안경보장치** 작동상태 점검 결과정보'를 선박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 선박운항정보, 해양안전·해적동향정보 등 자체생산 또는 수집정보를 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

** 선박에서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로,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선박 점검신호 발신 → 해양수산부 수신)

- ▶ 점검 결과정보는 선박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발송되어 선박(선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아울러, 기존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되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추진배경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결과는 검사 증빙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나, 일부사용자만 결과가 확인가능하여 선사(선원)의 업무 시 불편 초래

주요내용

- 점검결과를 해당선박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발송하는 기능 개설
-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시행일

2026년 하반기

해운분야 안전투자 최초 공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51-773-5846

2025년 7월 26일 도입된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해운선사의 안전투자 내역이 2026년 6월 30일 최초로 공시됩니다.

- ▶ 동 제도는 선사의 자발적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독려하여 해양사고를 저감하고, 안전투자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 ▶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과 대형사고(폭발·오염)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반선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사업자로서, 해상여객운송사업자 15개社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70개社 적용(2025. 11. 기준)
- ▶ 공시된 내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https://mtis.kom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해사안전기본법(2025. 7. 26. 시행)

해운분야 선박안전공시제도 시행

추진배경 안전활동에 대한 선사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공시대상)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 및 대형사고(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송선박 등 취약분야 대상 우선 도입
- (기대효과) 안전중심 경영문화 정착,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선사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노후설비 교체 유도 등을 통한 사고 저감

최초 공시일 2026년 6월 30일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확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51-773-5846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사업’ 대상을 기존 연안여객선에서 국제여객선과 연안 카페리화물선까지 확대합니다.

* (2025년 실적) 울릉·제주항로 등 연안여객선 97척 보급 완료

* (2026년 예정) 연안여객선 20척, 국제여객선 21척, 연안 카페리화물선 11척 등

- ▶ 보급 장비는 소방청 실사용 대응장비 3종*과 열화상카메라이며, 국비 50% 매칭지원으로 보급합니다.
* ① 상방향 물 분사장치(배터리 냉각), ② 질식소화덮개(연기확산 방지), ③ 소방원장구(선원 보호)
- ▶ 보급 장비 사용법에 대한 선원 교육·훈련도 실시하여, 전기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 2026년 1분기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보급 신청 모집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보도자료>이전 바닷길도 안심!... 전기차 싣는 여객선 화재 대응장비로 더 안전하게(2025. 4. 29.)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확대

추진목적

전기차 해상운송 증가에 따라 선박에서의 전기차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장비보급 필요

* 전기차 보급 : ('19) 9 → ('24) 68만대 / 전기차 해상운송 : ('19) 4 → ('24) 41만톤

주요내용

전기차를 선적하는 여객선, 연안 카페리화물선을 대상으로 화재 대응장비 3종 및 열화상카메라 보급(50% 매칭 지원)

시행일

2026년 1분기

카페리 여객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 051-773-5839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카페리 여객선 등 선박에 전용 소방설비를 비치하도록 「선박소방설비기준」이 개정(2025. 9. 5.) 되었습니다.

- ▶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 여객선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박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까지 ▲소방원장구, ▲질식소화덮개, ▲상방향 물 분사장치 등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방설비 비치하여 선제적 대응

카페리 여객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의무화

추진배경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 확보 추진

주요내용

- 「선박소방설비기준」 제97조
· (전용소방설비 비치)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 필요
 - *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
- (일부 면제) 항해시간이 짧거나, 선원의 수가 2인 이하인 선박 등은 전용 소방설비 일부 설치 면제 가능

시행일

- (전기차 전용 소방설비 비치규정 적용) 선박별로 정한 기준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는 날부터 적용
- 카페리여객선: 2026년 4월 1일
 -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카페리여객선 이외의 카페리선박: 2027년 1월 1일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카페리여객선 이외의 카페리선박: 2028년 1월 1일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공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32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이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는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App)과 소방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 31일부터 공개 / 놀(NOL) 1,009개소, 여기어때 2,521개소 / 분기 1회 간접

- ▶ 또한,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상시 게시(다음 점검 시까지)로 확대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개정 · 시행(2025. 12. 1.)

소방청(www.nfa.go.kr)소민티(www.safeland.go.kr)

놀(NOL)



여기어때

소방청 누리집>민원안내>숙박시설 스프링클러 현황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치 정보 공개

추진배경

숙박시설별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를 공개하여,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주요내용

- (정보 공개)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과 소방청 누리집에 스프링클러 포함
- (점검 결과)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를 포함 및 상시 게시

시행일

- (정보 공개) 2025년 7월 31일부터 공개 중
- (점검 결과) 2025년 12월 1일 개정·시행 예정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방청 생활안전과
119구급과

☎ 044-205-7662
☎ 044-205-7642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고, 대피를 돕는 119안심콜을 도입합니다.

-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 된 아파트*의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보급됩니다(2026~2028년, 3년간 보급).
*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없고, 연기감지기가 미설치된 아파트 세대
 - ▶ 화재 발생 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보호자 등에게 119상황실이 연락하여 화재 상황과 피난 방법을 안내하는 119안심콜을 도입합니다(2026. 1. 1. 시행).
- ※ 신청방법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

소방청 누리집>보도자료>노후아파트 돌봄 세대에 ‘화재 안전’ 선물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진배경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 지속 발생, 아동·노인 등 화재안전취약세대에 소방시설 보급 등으로 두터운 화재안전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감지기 보급) 노후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미설치된 세대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보급
- (119안심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19상황실에서 문자나 전화로 화재 안전취약세대에 연락하여 피난 방법 등을 안내

※ 예: 아동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발생하면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 등에게 119상황실에서 연락(문자, 유선)

시행일

- (감지기 보급)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추진
- (119안심콜) 2026년 1월 1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방법 확대

소방청 119구급과

☎ 044-205-7642

그간 전화, 메일, 누리집,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지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모바일웹, 119안전신고센터(APP)로 확대 운영됩니다.

- ▶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구급 서비스와 의료상담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누리집>보도자료>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상담 방법 확대

추진배경

상담 이용자의 편의성과 상담자(구급지도의사·상황요원)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 방법, 기능 등 개선 추진

주요내용

- (방법 개편) 누리집 모바일웹 버전 개발, 119안전신고센터(APP) 내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항목 추가
 - * 기준: 전화, 이메일, 누리집, 카카오톡
 - 개선: 전화, 이메일, 누리집(모바일웹), 카카오톡, 119안전신고센터(APP)
- (기능 개선) 국내 거주 국민의 상담 이용 제한 조치, 관리자 페이지 생성으로 상담 이력 관리 등

시행일

2026년 1월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4279

2월부터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 검토 제도가 도입됩니다.

-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단계에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산림 인접 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산림재난 사전 예방 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추진배경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산림 인접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필요

주요내용

산림 주변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산림재난의 위험성 검토 및 의견을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

시행일

2026년 2월 1일

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시행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551, 2651

(약칭)「수중레저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해양경찰청에서 안전관리규정 작성·시행, 사업 등록, 사업장 안전점검, 금지구역 지정 등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 수상레저와 수중레저 모두 내·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약칭)「수중레저법」 개정 법안이 발의·공포되었습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공포(2025. 4. 22.)
- ▶ 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소관하던 사업 등록, 사업장 안전점검 등의 업무는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 지방해양수산청(11개소)의 업무 → 관할 해양경찰서(21개소) 업무 처리

- ▶ 또한, 지역 현실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금지구역의 지정 △영업의 제한 △과태료 부과 사무는 해양경찰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수중레저활동자 사고 예방 및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025. 4. 22. 일부개정, 2026. 4. 23. 시행)

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

주요내용

주요내용	소관	
	기준	개정
제4조 수중레저활동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안전과 관련된 분야) 해양경찰청장
제7조 안전관리규정 작성·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제10조 안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제13조 수중레저활동 제한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4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5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제18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제19조 이용요금 신고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제22조 영업제한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23조 자료제출 요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제24조 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제25조 과징금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제26조 수수료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제27조 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시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제28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제32조 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02-2110-1566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 심의 방식을 대면에서 서면 심의로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 2026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상 유통되는 마약, 도박 등의 불법정보가 방미심위로 접수가 되면, 24시간 이내 심의 및 시정요구 절차가 완료됩니다.

현행 방미심위 통신심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방미통위법」 제23조(회의 등) 제4항에 따라 서면회의방식으로 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대응 중임

방미심위 서면의결 대상 확대

추진배경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미심위 서면의결 대상 확대

주요내용

(서면의결 대상 확대) 방미심위 서면의결 대상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정보 외에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포함*

*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유발정보, 장기 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화약류제조법

시행일

2026년 상반기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한국형 기준 정립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 ☎ 02-397-7366

최신 과학기술 및 국내 규제경험을 반영하여 재정비된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기준*이 2026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 ▶ 그동안 원안위 고시「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위치고시')」은 미국의 규정을 단순 준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준 위치고시를 폐지하고, 세분화한 3개의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규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설계특성이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른 선원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년간의 국내 규제경험 및 최신 과학기술 수준이 반영되었습니다.
 - 다만, 규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설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 상태인 기존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위치 고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SMR 등 신규 규제체계를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한국형 기준 정립

추진배경 기준의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위치고시')」은 미국 규정을 단순히 준용하고 있어, 최신 과학기술 수준 및 국내 규제경험을 반영한 국내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 부지 선정 시 조사하는 '활동성성단종'의 판정기준 년도를 기준 35,000년에서 50,000년으로 변경
 - '안전정지지진' 평가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방법을 이용한 검증 추가
 -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 방사성누출사고시 폭발방사선량 평가에 적용되는 선원형* 변경
 - * 기존의 요오드 중심의 선원형 → 제논, 크립톤, 세슘 등 다양한 핵종 평가
 - SMR 등 설계특성의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른 선원형 적용 가능
 - 평가시의 선량 기준을 국제방사선방호학회에서 권고하는 '유효선량'으로 변경
 -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대상 사고로 '폭발'과 '유해화학물질' 외에 '항공기 추락'을 평가 대상으로 추가
 - 기존 위치고시를 바탕으로 건설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기준 원자로시설은 종전의 위치고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시행일

2026년 상반기

사용후핵연료가 보다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02-397-7275

그간 통제·관리 가능한 동일부지 경계 안에서 발전소 간 사용후핵연료 운반할 경우, 일괄적으로 “소외운반”으로 규정하였으나,

- ▶ 2025년 11월부터 사업자는 운반경로 및 그에 따른 안전운반 사항을 운영기술지침서 등 허가서류에 적합하게 반영한 경우, 동일부지 경계 안에서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소내운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2025. 10. 23. 시행)

동일부지 내 발전소 간 사용후핵연료 운반 제도 개선

추진배경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운반 규제제도 합리화 필요

주요내용

- 동일 부지 내 발전소 간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예외 없이 소외운반으로 하고 있어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소내운반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소내운반에 대한 운반경로 및 안전운반 사항이 운영기술지침서 등 허가서류에 반영된 경우 소내운반 가능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01. 금융·재정·조세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합고용세액 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고용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p>*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중견</th> <th>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3년)</th> <th>(2년)</th> </tr> </thead> <tbody> <tr> <td>우대*</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r> <td>기본</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p>*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p>*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중견</th> <th>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3년)</th> <th>(2년)</th> </tr> </thead> <tbody> <tr> <td>우대*</td> <td>1년 차</td> <td>700</td> <td>1,000</td> <td>500</td> <td>300</td> </tr> <tr> <td></td> <td>2년 차</td> <td>1,600</td> <td>1,900</td> <td>900</td> <td>500</td> </tr> <tr> <td></td> <td>3년 차</td> <td>1,700</td> <td>2,000</td> <td>900</td> <td>-</td> </tr> <tr> <td>기본</td> <td>1년 차</td> <td>400</td> <td>700</td> <td>300</td> <td>-</td> </tr> <tr> <td></td> <td>2년 차</td> <td>900</td> <td>1,200</td> <td>500</td> <td>-</td> </tr> <tr> <td></td> <td>3년 차</td> <td>1,000</td> <td>1,300</td> <td>500</td> <td>-</td> </tr> </tbody> </table> <p>*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p>☞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p>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년 차	700	1,000	500	300		2년 차	1,600	1,900	900	500		3년 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 차	400	700	300	-		2년 차	900	1,200	500	-		3년 차	1,000	1,300	500	-	<p>조세특례제한법 (26.1.1.)</p> <p>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p>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년 차	700	1,000	500	300																																																																						
	2년 차	1,600	1,900	900	500																																																																						
	3년 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 차	400	700	300	-																																																																						
	2년 차	900	1,200	500	-																																																																						
	3년 차	1,000	1,300	500	-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율) 10% (종소: 15%) · (적용기한) '28.12.31. <p style="text-align: right;"><small>☞ (참고) 재정경제부누리집 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small></p>	조세특례제한법 (‘26.1.1.)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 (한도) 월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p style="text-align: right;"><small>☞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5.7.31.)</small></p>	소득세법 (‘26.1.1.)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p>·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p> <p>☞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5.7.31.)</p>	소득세법 (‘26.1.1.)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r> <tr> <td>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td> <td>30%</td> </tr> </tbody> </table> <p>* ④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p> <p>· (공제한도)</p>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총급여 공제한도</th> <th>7천만원 이하자</th> <th>7천만원 초과자</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공제한도</td> <td>300</td> <td>250</td> </tr> <tr> <td>추가 공제 한도</td> <td>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td> <td>300 200 -</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25.12.31.</p>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	300 200 -	<p>●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동)</p> <p>·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총급여 공제한도</th> <th>7천만원 이하자</th> <th>7천만원 초과자</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공제 한도</td> <td>300</td> <td>250</td> </tr> <tr> <td>자녀 1명</td> <td>350</td> <td>275</td> </tr> <tr> <td>자녀 2명 이상</td> <td>400</td> <td>300</td> </tr> <tr> <td>추가 공제 한도</td> <td>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td> <td>300 200 -</td> </tr> </tbody> </table> <p>· '28.12.31.</p> <p>☞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5.7.31.)</p>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 1명	350	275	자녀 2명 이상	400	3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	300 200 -	<p>조세특례제한법 (26.1.1.)</p> <p>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p>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	300 200 -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 1명	350	275																																			
자녀 2명 이상	400	3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	300 200 -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종족 법인 ③ 배당성향 40% 이상 ④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현금배당액 (중간·분기·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4단계 누진세율 	조세특례제한법 ('26.1.1.)
증권거래세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세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0.35% · 탄력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코스피) 0%(농특세 0.15%) ②(코스닥·K-OTC) 0.15% ③(코넥스)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탄력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0.05%(농특세 0.15%) ② 0.20% ③(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p>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6.1.1.)</p> <p>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044-215-4234)</p>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p>●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 ·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 (감면한도)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 ·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발생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12.31. 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6.1.1. ~ '26.1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5% 분리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7.1.1.부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9% 분리과세</td> </tr> </tbody> </table>	소득발생기간	감면내용	'25.12.31. 까지	비과세	'26.1.1. ~ '26.12.31.	5% 분리과세	'27.1.1.부터	9% 분리과세	<p>●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p> <p style="margin-left: 40px;">· (좌 동)</p> <p style="margin-left: 40px;">·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p> <p style="margin-left: 40px;">① 농·어·임업인 조합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가입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8.12.31. 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9.1.1. ~ '29.1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5% 분리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1.1.부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9% 분리과세</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40px;">②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가입자(농·어·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가입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12.31. 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6.1.1. ~ '26.1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5% 분리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7.1.1.부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9% 분리과세</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40px;">☞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5년 세계개편안 발표"</p>	가입일	감면내용	'28.12.31. 까지	비과세	'29.1.1. ~ '29.12.31.	5% 분리과세	'30.1.1.부터	9% 분리과세	가입일	감면내용	'25.12.31. 까지	비과세	'26.1.1. ~ '26.12.31.	5% 분리과세	'27.1.1.부터	9% 분리과세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조세특례제한법 (26.1.1.)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044-215-4232)
소득발생기간	감면내용																										
'25.12.31. 까지	비과세																										
'26.1.1. ~ '26.12.31.	5% 분리과세																										
'27.1.1.부터	9% 분리과세																										
가입일	감면내용																										
'28.12.31. 까지	비과세																										
'29.1.1. ~ '29.12.31.	5% 분리과세																										
'30.1.1.부터	9% 분리과세																										
가입일	감면내용																										
'25.12.31. 까지	비과세																										
'26.1.1. ~ '26.12.31.	5% 분리과세																										
'27.1.1.부터	9% 분리과세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중기로 흡입하는 등의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담배”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중기로 흡입하는 등의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기존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법적 ‘담배’에 포함	담배사업법 ('26.4월 중)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 방법 개편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산출방법 개편 ·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국세기본법 ('26.7.1.)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24.12.31. 이전 폐업 '27.12.31. 까지 재기 '28.12.31. 까지 신청 · 사업개시 및 취업을 재기로 인정 ·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적용기간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25.12.31. 이전 폐업 '28.12.31. 까지 재기 '29.12.31. 까지 신청 · 특수형태 근로도 재기로 인정 · 체납액 8천만원 이하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 2025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26.1.1.)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10~50%	● 기준금액 상향 · 8천만원 → 1억 4백만원 · (좌 동)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26.1.1.)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율) 10% (중소 15%, 대 5%) - (추가공제율*) 10% (중소: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율) 10%(중소: 15%)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26.1.1.)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단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법인세) 7년 100% +3년 50% (관세) 유단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완전복귀), 50%(부분복귀)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국외사업장 축소 원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귀 후 축소원료 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사업장 축소 원료 이전에 국내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 · (좌동) · 부분복귀 감면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영 시행일)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5년 100%, 2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 다음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26.1.1.)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분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head> <tr> <th></th> <th>낙후 지역</th> <th>그 외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 <td>5년 100% +2년 50%</td> <td>감면 없음</td> </tr> <tr> <td>수도권 연접 지역</td> <td>5년 100% +2년 50%</td> <td>5년 100% +2년 50%</td> </tr> <tr> <td>지방 광역시</td> <td>7년 100% +3년 50%</td> <td>5년 100% +2년 50%</td> </tr> <tr> <td>중규모 도시</td> <td>7년 100% +3년 50%</td> <td>5년 100% +2년 50%</td> </tr> <tr> <td>그 외</td> <td>10년 100% +2년 50%</td> <td>7년 100% +3년 5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낙후 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 지역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 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 도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head> <tr> <th></th> <th>낙후 지역</th> <th>그 외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 <td>5년 100% +3년 50%</td> <td>감면 없음</td> </tr> <tr> <td>수도권 연접 지역</td> <td>5년 100% +3년 50%</td> <td>5년 100% +3년 50%</td> </tr> <tr> <td>지방 광역시</td> <td>7년 100% +4년 50%</td> <td>5년 100% +3년 50%</td> </tr> <tr> <td>중규모 도시</td> <td>10년 100% +5년 50%</td> <td>5년 100% +3년 50%</td> </tr> <tr> <td>그 외</td> <td>10년 100% +5년 50%</td> <td>7년 100% +4년 5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 × 70% + 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당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p> <p style="text-align: center;">☞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p>		낙후 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 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 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 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p>조세특례제한법 (26.1.1.)</p> <p>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p>
	낙후 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 지역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 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 도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낙후 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 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 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 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감면한도) 1억원 + 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적용기한) '2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 동)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5년 30% · (작 동) · (작 동) <p>☞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p>	조세특례제한법 ('26.1.1.)
육아휴직급여· 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②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③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③(작 동) <p>-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25.7.31.)</p>	소득세법 ('26.1.1.)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금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 (교육비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 대학생: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폐지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개편안 발표(25.7.31.) 	소득세법 (‘26.1.1.)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1.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1.1. 이후 - 세제개편안 발표(25.7.31.) 	소득세법, 법인세법 (‘26.1.1.)
임목 별채·양도소득 비과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목 별채·양도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별채·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연 6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3천만원 - 세제개편안 발표(25.7.31.) 	소득세법 (‘26.1.1.)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 4212)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증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4%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신계약 시 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 3%로 인하 <p style="text-align: center;">● 장기수령시 감면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연금외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p> <p style="text-align: right;">☞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5.7.31.)</p>	소득세법 (26.1.1.)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12.31. <p style="text-align: right;">☞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5.7.31.)</p>	조세특례제한법 (26.1.1.)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기부·공제한도) 2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2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5.7.31.) 	<p>조세특례제한법 (‘26.1.1.)</p> <p>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p>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 세액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월세액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좌동) <p style="text-align: center;">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ii)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 ②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p style="text-align: right;">☞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5.7.31.)</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세특례제한법 (‘26.1.1.)</p> <p style="text-align: right;">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p>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8.12.31.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5.7.31.)</p>	조세특례제한법 ('26.1.1.)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 50% · (일반기부금) (소득금액-특례기부금) × 10%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20% → 30%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p>	법인세법 ('26.1.1.)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8년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p>	조세특례제한법 ('26.1.1.)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044-215-4212)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세컨드홀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특례적용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소재주택 1채 신규 취득 · 특례적용 주택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 대상지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특례적용 대상지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주택 1채 신규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적용 주택기액 완화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9억원 - 그 외 주택: 4억원 	<p>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인구감소 관심지역: 25.11.28.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 가액 9억원 상향: '25.8.14.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p> <p>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44-215- 4312)</p>
중고자동차 매입 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 (참고) 재정경제부홈페이지 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25.7월) 	<p>조세특례제한법 ('26.7.1.)</p> <p>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p>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12.31.까지 우대 공제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12.31.까지 우대 공제한도 적용 ☞ (참고) 재정경제부홈페이지 보도자료)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25.9월) 	<p>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p>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업, 변호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참고) 재정경제부홈페이지 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25.7월) 	<p>부가가치세법</p> <p>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 4321)</p>

재정경제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가 아닌자의 가공세금계산서 · (세율) 공급가액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세율)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5.11월) 	부가가치세법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등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납세의무자 · (의무) 장부, 서류 등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의무) 장부, 서류 등(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5.11월) 	부가가치세법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 외납세액공제 대상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소득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소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이자·연금·퇴직·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소득세법 (‘26.7.1.)
			재정경제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215-4651)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법 (‘26.1.1.)
			재정경제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215-4656)
국제결제은행 (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에 과세면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26.1.1.)
			재정경제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215-4656)

01. 금융·재정·조세

국가데이터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년 지수 : 2020년 가중치 : 2022년 · 공표 : '21.12월 ● 품목 분류체계: COICOP 1999* * 우리나라 2008년 첫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년 지수 및 가중치 : 2025년 · 공표 : '26.12월 ● 품목 분류체계: COICOP-K, 2019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공표 ('26.12월 중)
			국가데이터처 물가동향과 (042-481-2531)

국세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중 압류금지 기준금액 · 185만원 이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중 압류금지 기준금액 · 250만원 이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상반기 시행 예정)
			국세청 장려세제과 (044-204-3812)

관세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관세법 ('26.1.1.)
	· 원칙 : ① 신청·승인시 : ② 또는 ①	· (좌 동)	
	①(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좌 동)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관세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②(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③(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발급 · 변경(정보, 부호) · 사용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유형 및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새로운 고유부호 발급): 신규발급일 기준 1년 · 정보변경(기존 부호의 정보변경): 변경승인일 기준 1년 · 갱신(유효기간 증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1년 · 부호변경 재발급: 재발급일 기준 1년 · 사용정지(해제)(일시적 사용정지 또는 해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해지(고유부호 삭제) ☞ (참고) 관세청누리집>보도자료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해주세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26.1.1.)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준수도 평가제도가 관세행정 업무분야별로 존재 ●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 비공개 ● 관세협력도(가점) 항목이 한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법규준수도 제도로 통합 ●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 공개 ● 관세협력도(가점) 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설명회·교육 참여실적, 경진대회 수상실적, 보세사 채용 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이력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25.12.20.)
			관세청 관세국경 위험관리센터 (042-481-1164)

01. 금융·재정·조세

조달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 지방정부가 물품구매시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을 의무 구매	· 지방정부에서 물품구매시 조달청 단가계약물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구매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5)

금융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미래적금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미래적금 신설 · (지원대상) 청년 소득자 및 청년 소상공인 · (만기) 3년 · (납입한도) 월 50만원 · (정부 지원율) 일반형 6% / 우대형 12% 	조세특례제한법 (26.하반기)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 (대상법인) ①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②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 · (공시항목) 한국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일부(26개 항목) · (공시기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 ·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모든 코스피 상장사 · (공시항목)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 · (공시기한) ①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②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당일로 단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6.5.1.) * 주주총회 결과 공시는 ‘26.3.1. 시행

금융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 여부·주요 논의내용만 공시중이며 찬성률 등 표결결과 미공시 ● 기업성과-보수 간 관계, 등의 공시 미흡 ● RS 등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보수공시와 분절되어 공시,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은 미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을 등 표결결과를 거래소 수시공시, 법정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총 결과 공시에 추가 ●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과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표 등으로 추가 기재 ● 임원 전체 보수총액,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서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도 병기) <small>☞ 금융위 누리집<보도자료>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small>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26.5.1.) <small>* 주주총회 결과 공시는 '26.3.1. 시행</small>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8)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 융권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표준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표준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포함한다) ●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26.1.1.) 금융위원회 기계금융과 (02-2100-2511)

원자력안전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 산정기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업무량×기준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산정기준 : 주요 허가시설을 단계별로 구분한 정액제로 개편하되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 × 용량계수 × 산정지수』 · 개별적 산정기준 : 각 업무별 기준단가를 정액화하여 발생 건당 당해연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설계인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심·검사 등 	<p>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 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26.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징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이의신청, 징수유예 절차 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징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이의신청 근거, 징수유예 절차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부담금 일단위 가산금 요율 : 체납 1일당 10만분의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부담금 일단위 가산금 요율 : 체납 1일당 10만분의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절차, 강제징수절차 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시 독촉절차 명확화 · 부담금 체납액 미납에 대한 징수기관의 강제징수절차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2-397-7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의 정산 및 환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의 정산 및 환급 등 절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의 정산 및 환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변경·취소 등 부담금 재산정 사유, 부담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징수기한 등 절차, 부담금 환급 절차 명시 	

02. 교육·보육·가족

교육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5세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2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4세까지 확대 · ('25년) 5세 → ('26년) 4~5세 	<p>유아교육법 (‘26.3월)</p> <p>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44-203-7217)</p>
학생맞춤 통합지원 전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학생지원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담당자가 사업별 학생 지원정보를 관리하여 사업 종료 또는 전학·진학 시 정보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의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위기징후를 관찰하여 지원필요학생 조기 발굴 · 학교 내 지원사업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p>학생맞춤 통합지원법 (‘26.3월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학생지원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담당자가 사업별 학생 지원정보를 관리하여 사업 종료 또는 전학·진학 시 정보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급·학년급 간 단절없는 학생지원기반 마련 	<p>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203-6525)</p>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생 등록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생 등록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지원 10구간 이하 ●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지원 10구간 이하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p>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26.1.1.)</p>
			<p>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p>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운동네 초등돌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수강권 형태로 일부만 지원 ● 학교 중심의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하는 초3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 지급 ● 운동네 초등돌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체-교육청(학교) 협력 돌봄 기본 모델 마련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운영 지원 	<p>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p>
			<p>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607)</p>

성평등가족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비율)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아동(6~12세)별 정부지원 비율 10%~75%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비율)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아동(6~12세)별 정부지원 비율 10%~80%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아이돌봄 지원법 (‘26.1.1.)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제·등록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 · (등록제) 민간아이돌봄기관 등록제도 시행 	아이돌봄 지원법 (‘26.4.23. 예정)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75)

성평등가족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63%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26.1.1.)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급여 지원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아동양육비) 월 5~10만원 · (학용품비)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월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급여 지원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 · (학용품비)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26.1.1.)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자녀 가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3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자녀 가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2명 이상 <p>※ 다자녀 가구 혜택 : 월 4.17% 소득환산 적용 자동차의 요건이 '2,000cc 미만 자동차'이나 다자녀 가구일 경우 '2,500cc 미만 7인승 자동차'까지 원화·적용</p>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26.1.1.)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63%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6.1.1.)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성평등가족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행	〈신규〉	● 성불평등 의제에 대한 청년주도 공론화·숙의 추진	양성평등기본법 (‘25.4.22.)
	〈신규〉	● 성별 불균형 사례·정책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	성평등가족부 성형평생기획과 (02-2100-6144)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 ('25) 중앙 디성센터 37명, 지역 디성센터 15개소(개소당 2명)	● ('26) 중앙 디성센터 38명, 지역 디성센터 16개소(개소당 3명)	성폭력방지법 (‘26.1.)
	〈신규〉	● 개선 삭제지원시스템,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중앙·지역 디성센터 양방향 협업 게시판 운영	디지털성범죄방지과 (02-2100-6575, 6566)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 수당 신설	〈신규〉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청소년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후 퇴소한 자 · (지원내용) 월 50만원 현금지원(최장 12개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26.1.)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8)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 법률지원	〈신규〉	● 시설입소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진단검사비 지원 - 진단검사비 1인당 30만원, 총 300명분 지원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26.1.)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24) 306호, 보증금 1,000만원까지 → ('25) 326호, 보증금 1,100만원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25) 306호, 보증금 1,100만원까지 → ('26) 346호, 보증금 1,20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 5년간 동결('21~'25) - (예산) 4.92억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 증액 - ('25) 4.92억원 → ('26) 6.32억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8)

성평등가족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요건완화 및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에게 LH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시 시설 최소 이용기간(2년) 필요 ● (현행 신청방식) 공문(시설→지자체→성평등부 →국토부/LH)을 통해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에게 LH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시 시설 최소 이용기간(2년) 요건 삭제 ● 신청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플러스(apply.lh.or.kr) 기능개선 ● (신규) 민관협업을 통해 생활지원금, 소형가전 등 지원 플랫폼 개설 	<p>국토부 훈령 개정 ('25.9.23.)</p> <p>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p>

재외동포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재외동포청년들이 모국에 귀환하여 학업과 취업·정착 지원 수혜 가능 	<p>재외동포기본법</p> <p>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26. 공포 시)</p> <p>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 (032-585-3280)</p>

03. 보건·복지·고용

국가보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 10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80세 이상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에게 생계지원금 1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6.3.17.)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12)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26.1.공포 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20)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49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140개소로 확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26.1.1.)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044-202-5423)

보건복지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239만 2,013원 · (4인 가구) 609만 7,773원 ● 2025년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 (지원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76만 5,444원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95만 1,287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256만 4,238원 · (4인 가구) 649만 4,738원 ● 2026년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 (지원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82만 556원(+5만 5천원)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8,316원(+12만 7천원) <p style="margin-left: 40px;">☞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26.1.1.)</p> <p style="text-align: right;">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p>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시행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 	<p>돌봄통합지원법 (‘26.3.27.)</p> <p style="text-align: right;">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 봄통합지원단 (044-202-3033)</p>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율) 9% · (명목소득대체율) 40% ('25년 41.5%, '28년 40% 도달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율) 13% ('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 (명목소득대체율) 43% 	<p>국민연금법 (‘26.1.1.)</p> <p style="text-align: right;">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p>

보건복지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군 복무 크레딧) ·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군 복무 크레딧) ·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최대 12개월) * 2026. 1. 1. 이전 군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6개월 추가 산입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제18조 (26.1.1.)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1)
	●(출산크레딧) · 둘째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추가 지원 (50개월 상한)	●(출산크레딧) · 첫째, 둘째자녀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추가 지원 (상한 폐지)	국민연금법 제19조 (26.1.1.)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1)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신설〉	●폐기능 검사 도입 · 26년 1월부터 56세·66세 대상 폐기능검사 실시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건강검진 기본법 (26.1.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8)

보건복지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	● 관련 법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조직 지정·위탁)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 지정·위탁 · (초기 발굴체계 도입)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과 전담조직 간 발굴체계 구축 · (맞춤형 지원 강화)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욕구에 따른 밀착 사례관리 지원 제공 <p>☞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체계 마련 추진</p>	위기아동청소년법 (‘26.3.26.)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2, 3703)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낭드림)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먹거리·생필품 지원 (1인당 3~5개 품목, 2만원 한도) 	<p>시범사업 시행 (‘25.12.1~) 본사업 시행 (‘26.5.1~)</p> <p>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61)</p>

03. 보건·복지·고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 다자녀가구 <p style="margin-top: 10px;">☞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p>	에너지 이용권 규정 (기후부 고시) (‘25.11.2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62)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6.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제4호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09)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6.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09)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시행	〈신설〉	<p>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6.3.10.)
	〈신설〉	<p>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p>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09)
	〈신설〉	<p>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p>	
	〈신설〉	<p>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시행	● 제3조의2 〈신설〉	<p>● 제3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6.3.10.)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신설〉	<p>●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려금 지원('26년부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수준) 중증장애인 성별에 따라 월 35~45만원 <p>☞ (참고) 고용노동부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 장애인 노동자 고용 현장 방문</p>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09)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미연계	<p>● 일학습병행 자격 7개 종목* 합격자를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으로 합격자로 인정</p> <p>* 낭동공조설치_L2 딱제조_L2 바이오허학제품제조_L3 시각디자인_L3 제과_L2 산업용크레인조종_L2 건설용크레인조종_L2</p>	<p>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6.1.1.)</p> <p>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309)</p>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1시간)으로 단축 ·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p>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및 신청에 관한 규정 ('26.1.1.)</p>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3)</p>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기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지급기간 최대 1개월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기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p>고용보험법 시행령 ('26.1.1.)</p>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지급 · 육아휴직 복귀 후 1개월 고용 유지시 나머지 5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 지원금 사후 지급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100% 지급 	<p>고용보험법 시행령 ('26.1.1.)</p>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지원금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지원금 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120만원 	<p>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6.1.1.)</p>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p>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6.1.1.)</p>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7)</p>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1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1,607,65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월평균보수 100%) 상한액: 월 2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최초 2일분 168,420원, 최초 1일분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월평균보수 100%) 상한액: 월 22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26.1.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7471, 70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단축비율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단축비율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26.1.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704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6.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7555)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구직촉진수당 인상 · 월 60만원, 최대 6개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법령개정 없음 ('26.1.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기획팀 (044-202-719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I)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II) 5인 이상 빈일자리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 지급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5.5.1.)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66)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업 의지가 있는 50세 이상 중장년에 대한 취업 및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중장년 훈련 및 일경험을 수료하고 취업한 50세 이상 중장년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기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경력지원제 · (취업업종) 제조업 및 운수창고업 · (지원수준) 6~12개월 이상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인원) 1,000명 	고령자 고용법 * 법령 개정 없음 ('26.1.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044-202-7460, 7462)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원금액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 (비수도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 법령 개정 없음 (‘26.1.1.)
정규직전환지원 사업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50만원 · (그 외)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30인 미만 기업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60만원 · (그 외) 40만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6.1.1.)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청년명장(기특한명장)으로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청년 명장의 시대, 기특한명장이 열어나간다 	'25.12월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1)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사대상품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포함 및 안전검사 실시 <p style="text-align: right;">☞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6.6.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기준과 (044-202-8857)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용접 방화포의 성능기준 부재 ·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용접 방화포도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인증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용접 방화포만 사용 가능 <p style="text-align: right;">☞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26.3.2.)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044-202-8969)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톤 미만으로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 MSDS 제출·비공개승인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톤 미만으로 MSDS대상 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 MSDS 제출·비공개승인 대상 <p style="text-align: right;">☞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p>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26.1.16.)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044-202-8971)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기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준비금: 6일 이상 훈련 출석 시 40,000원 1회 지급 ● 훈련비 18,000원/1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준비금: 삭제 ● 훈련비 35,000원/1일 지급 	<p>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26.1.1.)</p> <p>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총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월 60만원씩 총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p>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및 장애인취업 성공패키지 매뉴얼 (장애인공단 규정) (‘26.1.1.)</p> <p>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p>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 마케팅 지원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 (지원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표준사업장을 공개 모집하여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지원항목) 브랜드 개발, 품질·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온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 등 	<p>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26.1월 예정)</p> <p>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p>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공표 제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요건(필수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이행 해소계획서 제출 2. 고용역량 진단 실시 3. 인사관계자 간담회 참석 (3회 이상 연속 공표시 최고경영자 참석 필수) · 추가요건(1개 이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준인원 이상 고용 2. 고용컨설팅 통해 채용 3. 연계고용 실시 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5. 채용전제 지원고용·맞춤훈련 6. 구인신청을 통해 채용 *②, ⑥의 요건은 다음연도 3월까지 신규 채용을 조건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공표 제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인원 충족시 요건 충족없이 공표 제외 · 제외요건(2개 이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역량 진단 및 인사관계자 간담회 참석 (최고경영자 참석요건 삭제) 2. 고용컨설팅을 통해 채용 3. 지원고용·맞춤훈련 후 채용 4. 구인신청을 통해 채용 5. 연계고용 실시 6.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②, ③, ④의 요건은 다음연도 3월까지 신규 채용을 조건 ● 공표 제외 후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규 채용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명단공표시 공표 ● 3회 이상 연속 공표 및 장애인 고용인원 0명 기업의 구분 공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p>고용노동부 훈령 제566호 (‘26.1.1.)</p> <p>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p>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경계선 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지원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경계선지능청년에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등 제공 · 사업 희망하는 자자체 선정하여 경계선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등과 연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안내 (자침) ('26.1.1.)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3년 이내의 예비 또는 초기창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 	사회적기업 육성법 ('07.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3,000만 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차등(2천만원~5천만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7, 7430)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사회적기업 등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대출금리 중 2.5%p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07.7.1.)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지원 ●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자자체 공모 선정 및 매칭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7426)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지원 ●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자자체 공모 선정 및 매칭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07.7.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7429)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회폐로 흰산하여 사업비 지원 ●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매칭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07.7.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6, 742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력(일반+취약계층) · 전문인력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고용 · 고용기간 제한 없음 · 상시근로자 수 조건 없음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의 70% ● 지원기간: 최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력(취약계층)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고용 · 개월 이상 고용유지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단, 30인 이상 SVI 탁월·우수기업 예외적 지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50만원~90만원 ● 지원기간: 최대 3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07.7.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7431)

성평등가족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다양성)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CEO 대상 교육 부족으로 다양성 교육 필요성 인식 제고 한계 및 맞춤형 교육 부족으로 교육의 실질적 효과 달성을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CEO·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교육 확대 · CEO 대상 교육 확대 실시, 홍보·네트워킹 지원담당 자문단(ChangeMakers) 통한 다양성 교육 확산 · 기업 규모·업종·직급별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 시행 	양성평등기본법 (26.1.1)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청소년특별회의는 중앙에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차원에서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확대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2026.1.1.)
청소년 시설 급식비 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비 지원 최소단가 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비 지원 최소단가 6천원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 (2026.1.1.)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0)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

03. 보건·복지·고용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 및 재해보상 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 사업자들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지급 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제152조제1항) ●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방지 조항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152조의2제2항) 	<p>『선원법』 (26.3.17)</p> <p>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3)</p>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선원 위주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선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도 본격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p>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51-773-6232)</p>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지티브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모든 변경 사항 발생 시 기술문서 등을 통한 사전 변경허가 · (예외) 경미 변경 사항 보고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거티브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중대한 사항의 변경 발생 시 기술문서 등을 통한 사전 변경허가 · (예외) ※ 경미 변경 사항 보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 변경 이외 업체 주도적 관리 전환 ● (허가 신청 시) 변경 자체 평가·관리 절차 마련·제출 ● (준수사항) 변경사항 기록·보관 등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시 처분(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p style="text-align: center;">('26.12.)</p> <p style="text-align: right;">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4)</p>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긴급도입의약품 전환으로 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가 직접 자가치료용 의약품으로 구매한 품목 중 안정공급 필요한 품목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단계적 전환 	<p style="text-align: center;">('26.1.)</p> <p style="text-align: right;">식약처 의약품관리지원팀 (043-719-2824)</p>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주문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생산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미공급 국가필수의약품의 주문생산 지속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알림/공지/공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공고” 	<p style="text-align: center;">('26.1.)</p> <p style="text-align: right;">식약처 의약품관리지원팀 (043-719-2825)</p>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지원 확대 ('26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험·분석 지원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26.1.)</p> <p style="text-align: right;">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0)</p>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천연물의약품 품질·안전관리 지원 기관 설립·운영 ·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국내외 규제정보 제공, 컨설팅 및 시험법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의약품의 혁신성을 지원할 예정 	(‘26.1.) 식약처 한약정책과 (043-719-3351)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및 단계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규모·품목별 제도 단계적 시행 (~‘28)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 및 개별업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기(개발~판매 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지원체계 구축 ● 전문적·연속적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12)
화장품 할랄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인증 관련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 및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MRA) 확대 지원 추진 등 	(‘26.4.)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3)
회귀· 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중단 예정된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 	(‘26.1.) 식약처 의료기기 정책과 (043-719-3761)

질병관리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무입원· 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총 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종) 의료기관에 입원 및 격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정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총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레라) 의료기관에 입원 및 격리치료 · (그 외*) 자가격리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정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p>「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0호 ('25.9.8.)</p> <p>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671)</p>

04. 문화체육·관광

외교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58면 : 38,000원 - 10년 26면 : 35,000원 - 5년 58면 : 33,000원 - 5년 26면 : 30,000원 - 5년미만 : 15,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58면/26면) : 25,000원 - 단수여권 14면 : 15,000원 ● 비전자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여권 : 48,000원 ● 여행증명서 : 2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58면 : 40,000원 - 10년 26면 : 37,000원 - 5년 58면 : 35,000원 - 5년 26면 : 32,000원 - 5년미만 : 17,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58면/26면) : 27,000원 - 단수여권 14면 : 17,000원 ● 비전자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여권 : 50,000원 ● 여행증명서 : 25,000원 	<p>여권법 시행령 ('26.3 공포시)</p> <p>외교부 여권과 (02-2002-0122)</p>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체육활동 프로그램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및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운영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5)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여행경비 50%(최대 20만원)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도 20개 지자체 대상 시범운영 후 '27년부터 단계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3)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학교체육시설 지역주민 개방 활성화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도록 개방 가능(법 제9조 제1항) - 개방 시 학교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사고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민사책임 면책(법 제9조 제2항) - 개방 시 국가, 지자체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경비 지원 근거 마련(법 제9조 제3항) 	생활체육진흥법 (26.1.23.)
아동·장애인· 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별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별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관련범죄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노인학대관련범죄 <p style="font-size: small;">☞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현행법령>국민체육진흥법</p>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8)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신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관광산업 지원관련 법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관광 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법 제5, 6조) ·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등 (법 제8~10조) ·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법 제11, 12조) · 치유관광산업 지구 지정 (법 제19, 20조) <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현행법령>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p>	<p>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6.4.9)</p> <p>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 (044-203-2882)</p>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신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법 제18조) · 미술 서비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법 제19조) · 미술 서비스업자의 영업의 승계 (법 제20조) · 미술 서비스업자의 신고의무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 제33조) <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현행법령>미술진흥법</p>	<p>미술진흥법 (26.7.26.)</p> <p>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 디자인과 (044-203-2748)</p>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5만원 (7.1% 증)으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3만 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3만 5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11월 27일(금) 	<p>문화예술 진흥법 (26.2.2.)</p> <p>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6)</p>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등대스탬프투어 대상지 확대	● 기존 78개 대상지	● 일출이 멋진 등대 22개소 추가, 총 100개소 운영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051-773-5874)

국가유산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유산 수리 손해배상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만 한정 〈신설〉	●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확대 ●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6.11.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제한 * (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26.상반기) 방미통위 조사기획 총괄과 (02-2110-1545)

05. 환경·에너지·기상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개인·법인 등에 구매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보조금 외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보조금)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 (금융지원) 융자 735억원 지원, 펀드 740억원 조성 <p>☞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보도·설명)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융자를 지원해 드립니다”(점정)</p>	관련 지침 마련 예정 ('26.3~)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가 및 제조사 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제조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정부 20억원 + α (자동차 제조사 부담) · (보장내용)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종목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손해 보장 <p>☞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보도·설명) “전기차 안심하고 타세요...올해부터 전기차 화재 사고당 100억원 한도 내 보상”(점정)</p>	관리 지침 마련 예정 ('26.3~) 기후에너지 환경부 탈탄소녹색 수송혁신과 (044-201-6892)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국 지자체 · (유기성폐자원)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 (생산목표) 유기성폐자원 발생량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 · (달성방법) 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돈분 80% 이상)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자 · (생산목표)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발생 또는 처리량의 '1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 · (달성방법) 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 거래 <p>☞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보도·설명) "2050년까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80% 바이오가스로 생산한다"</p>	<p>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3.12.31.)</p> <p>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33)</p>
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표지 등에 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삭제·수정 의무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 환경표지 무단 사용자 또는 미조치 중개업자 공개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조제3~5항 신설) 환경표지 등에 관한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삭제·수정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부과 ● 기후부장관이 무단 사용자 및 미조치 중개업자를 공개 가능 	<p>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3 ~ 제5항 ('26.3.19.)</p> <p>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에너지 환경교육팀 (044-201-65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임직원의 환경법령 위반이 인증 취소 사유로 명시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제1항제2호 신설) 인증자 또는 그 임원·종업원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환경표지 인증 취소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제23조 (환경표지 인증의 취소) [25.3.18. 개정]</p> 	<p>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 1항제2호 ('26.3.19.)</p> <p>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에너지 환경교육팀 (044-201-6530)</p>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안전 정보(11종)를 표시하는 라벨 의무화(~'20) · 플라스틱 감량·소비자 편의를 위해 뮤음 판매 제품은 '20년부터, 낱개 판매 제품은 '22년부터 무라벨 하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라벨 제도 시행(~'26~) · 필수정보(5개*)는 용기에 직접 표시하되, 성분함량 등 표시정보는 QR(낱개 판매), 뮤음비닐(뮤음 판매)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수원지 ☞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p>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26.1.1.)</p> <p>기후에너지 환경부 물산입법과 (044-201-7631)</p>
사육곰 농가 곰 사육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법」부칙에 따라 곰을 사육하면 기존 농가들은 '25.12.31. 까지 곰 사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곰 사육 농가들도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하여서는 아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4 (곰 사육 금지 등), 제67조(벌칙) 	<p>야생생물법 (~26.1.1.)</p> <p>기후에너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p>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연환경 복원사업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및 실적 인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참여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연환경보전법 (‘26.3.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26.3.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6.3.19)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한 복원사업 전문기관 평가 등을 통해 인증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민간참여 사업 컨설팅, 우수 복원사업 인증 등 체계적 지원·관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자 등록 및 취소, 결격사유, 대행실적 관리, 벌칙 및 과태료 등 신설 <p style="margin-top: 10px;">☞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9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50조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25.3.18. 개정]</p>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기총량허가 신청서류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로 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이 유사한 신청서류(8종)* 각 항구 별도 제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종류·크기·처리용량 등이 포함된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 <p>1. 「환경오염시설법」제6조에 1.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p> <p>☞ (참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 1, 3 ('25.12. 개정)</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3호 ('25.1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대상)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 (먹는샘물 및 음료류) (의무율) 10%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재활용법(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38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별표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6.1.1.)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3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5.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 1~15.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내용)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제품(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활동 완구 나. 미술공예 완구 다. 퍼즐 완구 라. 기능성 완구 마. 게임 완구 바. 승용 완구 사. 빌자체 완구 아. 역할놀이 완구 자. 악기 완구 차. 운동 완구 카. 유아 완구 타. 블록 완구 파. 모형 완구 하. 자석 완구 거. 가구 완구 너. 교육용 완구 더. 조립 완구 려. 기타 완구 	<p style="text-align: center;">자원재활용법 시행령 (26.1.1.)</p> <p style="text-align: center;">기후에너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1)</p>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6)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류 및 재질</th> <th>재활용 기준비용</th> </tr> </thead> <tbody> <tr> <td>1~10.(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11. 제18조 제11호에 따른 제품</td> <td>가...거. (생략) 제품</td> <td>(생략) <신설></td> </tr> </tbody> </table>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 기준비용	1~10.(생략)	(생략)	(생략)	11. 제18조 제11호에 따른 제품	가...거. (생략) 제품	(생략)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류 및 재질</th> <th>재활용 기준비용</th> </tr> </thead> <tbody> <tr> <td>1. ~ 10.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11. (현행과 같음)</td> <td>가...거.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너. 완구류</td> <td>kg당 343원</td> <td></td> </tr> </tbody> </table> <p>☞ (참고)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입법예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령안</p>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 기준비용	1. ~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가...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너. 완구류	kg당 343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26.1.1)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 기준비용																						
1~10.(생략)	(생략)	(생략)																						
11. 제18조 제11호에 따른 제품	가...거. (생략) 제품	(생략) <신설>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 기준비용																						
1. ~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가...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너. 완구류	kg당 343원																							
전자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죽전지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삭제>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10 폐전지류 03-10-01 황산이 포함된 폐이차전지 03-10-02 알칼리가 포함된 폐이차전지 03-10-03 리튬계 폐이차전지 (침수·화재·변형· 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 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03-10-04 이차전지 스크랩 03-10-99 그 밖의 폐이차전지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5.12월 시행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p>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41 폐전자류 51-41-01 1차폐전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자 51-41-03 2차폐축전지 (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태양광 폐패널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41 폐전자류 51-41-01 폐일차전지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51-41-05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1-06 구동용 폐이차전지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1-07 폐양극활물질 (양극재 또는 전구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51-41-08 폐연료전지 51-41-99 그밖의 폐이차전지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small>☞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보도자료>'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25.7.30)'
</small> </p>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5.12월 시행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모든 제품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기, 냉장고 등 중대형 위주 50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제품으로 확대 - 산업기기, 대형기기, 의료기기, 군수품 등은 제외 <p>☞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홍보자료> 그림자료> 카드뉴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25.04.18)”></p>	<p>『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6.1.1.시행)</p> <p>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추진단 (044-201-7399)</p>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p>〈별표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mu\text{g}/\text{m}^3$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나.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 <p>☞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보도설명>“일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2026년부터 $40\mu\text{g}/\text{m}^3$으로 강화”></p>	<p>〈별표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mu\text{g}/\text{m}^3$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나.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 	<p>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26.1.1.)</p> <p>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7511)</p>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 발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심해저의 해양생물자원 취득시, BBNJ 규정 이행 	

기상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기상법 시행령 (시법운영 '26.6월)
(기상)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26.5.~) · 기존 방재역량을 뛰어넘는 가칭재난성호우(예, 시간당 100mm 강수 등) 대응을 위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 상위 단계의 긴급재난문자를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 발송 	- ('26.5월)

기상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진양 인근 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조기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 송출 → 최초 관측 후 5~10초, 전국+대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진양 인근 강진동 지역에 진도(VI이상) 1차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 송출 → 최초 관측 후 3~5초, 진양 기준 40km 반경 국민 · (2단계) 지진 규모(5.0 이상)에 따른 2차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 송출 → 최초 관측 후 5~10초, 전국+대국민 	지진 재난 문자방송 운영규정 ('26.6월)
세종·서해 도서· 수도권 중심 특보구역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구역 특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 서해5도 · 보령 · 군산 · 부안 · 영광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분화된 특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북부 / 세종남부 · 백령도·대청도 / 연평도·우도 · 보령(도서제외) / 보령도서 · 군산(옥도면 제외) / 옥도면(어청도 제외) / 어청도 · 부안(위도면 제외) / 위도면 · 영광(낙월면 제외) / 낙월면 ···(생략)··· 	예보업무규정 ('26.6월)
통합 기상가뭄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6개월 강수량으로 기상가뭄 현황을 반영한 기상가뭄 감시정보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발가뭄) 자체 시험생산 중이며, 관계기관 미제공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기반 기상가뭄 감시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발가뭄 감시정보 시범운영 및 최근 3개월 강수량 현황을 반영한 기상가뭄 감시정보 추가 제공 등 종합적 기상가뭄 감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발가뭄) 가뭄 관계기관 대상 돌발가뭄 감시정보 시범운영 · (기상가뭄)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 기반 기상가뭄 감시정보 추가 제공 · (통합제공) 가뭄 관계기관 대상 돌발가뭄 감시정보, 최근 3~6개월 기상가뭄 감시정보 통합 제공 	기상법 ('26.6월)
			수문기상팀 (042-481-7435)

기상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실증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자료 개발포털 및 API 서비스를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일부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전력망 안정 운영 지원 및 전력 재해 예방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기상서비스 확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사량·풍력터빈 고도 바람 등 태양광·풍력에너지 맞춤형 초단기·단기 예측자료 제공 ※ 실증지역 중심 우선 제공하며 실증·개선 후 '27년 전국서비스 ☞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 ('26. 운영 예정): http://energy.kma.go.kr 	<p>기후변화 감시예측법 ('26.9월)</p> <p>기상융합 서비스과 (042-481-7484)</p>
저고도항공 전용 날씨앱 (LAMIS-A) 신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집(PC) 및 모바일 웹 중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고해상도 콘텐츠는 로딩·가독성 한계 존재 · 모바일 UI/UX가 저고도 운항자 특성(현장성·즉시성)에 적합하지 않음 · 텍스트 및 정적 예보 중심 자료 제공으로 초단기, AMOS 등 고해상도 자료 활용 및 표출에 제한적 · 웹 기반 특성상 경보·알림 기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최적화 저고도 항공날씨 전용 앱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고해상도 정보 즉시 조회 가능 · 저고도 운항자 전용 UI/UX 제공 · 레이더·AMOS·초단기 예측 등 실시간 고해상도 정보 통합 제공으로 시각화 강화 · 푸시알림·위치 기반 위험기상 자동 통보, 경로 기반 위험정보 제공으로 실시간 현장 대응 강화 ☞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보도자료) ‘안전한 헬기운항을 위한 저고도 기상정보, 더 상세하고 똑똑하게 바뀐다’” 	<p>기상법 시행령 ('26.11월)</p> <p>항공기상청 예보과 (032-222-3013)</p>

06.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업부설연구소 등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법」 내 일부 조문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법」내 여러 조문에 신재하여 규정됨 · 설립신고·변경신고·보완·취소 절차가 분산되어 규정 · 기업부설연구소 육성·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법적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법률 제정 → 제도 목적·정의·관리체계를 단일 법률로 일원화 · 설립신고 → 변경신고 → 보완명령 →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 절차를 일관된 조문 체계로 정비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육성·지원 근거 법률에 신설 (기업연구개발지원센터 등) 	<p>「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5.1.31제정, ‘26.2.1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환경 변화에 맞는 요건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 벽체로 둘러싼 경우만 연구공간으로 인정 · 부소재지는 1개만 허용 ·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 한 규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벽체도 연구공간으로 인정 · 복수 부소재지 설치 허용 · 국가 R&D 참여 석사과정생까지 연구전담요원 인정 확대 	<p>「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26.2.1 시행)</p>
		<p>☞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기업의 연구역량 혁신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하위법령 입법예고</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4)</p>

산업통상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속한 심의, 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유사과제 심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부처 의견조회 30일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연 4~5회 개최) 심의 ● 특례 유효기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특례, 임시허가 모두 최대 2+2년 ● 법령정비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특례 :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정비 척수 · 임시허가 :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 척수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유사과제 심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부처 의견조회 15일 및 전문위원회(수시개최) 심의 ● 특례 유효기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은 최대 2+2년이나, 사업특성에 따라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 ● 법령정비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특례 :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 및 필요성 인정 시 법령정비 완료 · 임시허가 :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 완료 ● 정비된 규제법령에 따른 허가 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사업 중단을 방지 	산업융합촉진법 ('26. 6. 3.) 산업통상부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산업통상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②(생략)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계량에 관한 법률 ('26. 3. 3.)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산업통상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 시행	● (규제대상자) 국내 사업자	● (규제대상자) 해외통신판매중개자 추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26. 6. 3.)
	● (규제대상자) 해외통신판매중개자 추가	● (관리대상제품) 자가사용 목적 직접구매 해외제품 추가	
	● (안전성조사 대상) 국내·수입제품 대상 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대상) 자가사용 목적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추가	
	●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수거등 리콜권고, 명령	●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자가사용 목적 직접구매 해외제품 삭제등 권고 및 공표 추가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5)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기능)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사항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기능) 자가사용 목적 직접구매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조정 기능 추가	
	● (제품안전정보망) 국내·수입제품 대상 안전성조사결과 등 정보	● (제품안전정보망) 자가사용목적 직접구매해외제품 안전성조사결과 등 정보 추가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예선업, 도선업에 대한 선박금융지원 확대	● 지원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선업·도선업에 대한 선박 금융 지원 가능 <p>〈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적용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또는 보증 시 만기 10년까지 할인된 금융비용 적용 - 운전자금 대출 시 최대 2%P 이자 지원 - 재무 및 홍보 분야 경영컨설팅 서비스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26.3.17)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6)
물류기업 해외진출 시 컨설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물류기업 타당성 조사 지원 · (타당성 조사) 물류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비용 국비 50%한도로 1억원까지 지원 · (현지 조사) 물류기업이 현지 공급망 분석, 현지조사를 위한 비용 국비 50%한도 4천만원 한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물류기업 타당성 조사 지원 · (타당성 조사) 물류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비용 국비 50%한도로 2억원까지 지원 · (현지 조사) 물류기업이 현지 공급망 분석, 현지조사 및 진출 후 규제 대응을 위한 비용 국비 50%한도 5천만원 한도 지원 	- (26.2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7)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 내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부담, 물류비용 경감을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항만법, 자유무역지역법 등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8)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잠재력 있는 상권을 글로벌·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색있는 공간·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 관계부처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 <p>☞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한성숙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25.11.5)’</p>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26.1분기)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4)

자식재산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의 아이디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집단자성을 활용하여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속 가능한 국민 참여형 범국가 개방형 혁신 기반을 구축 · 국민의 창의력이 풍부하게 발휘되고,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축진하는 국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경제·산업 사회 혁신을 주도 <p>☞ (참고) www.모두의아이디어.kr</p>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개시 (‘26.1.8.~)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042-481-5953)

자식재산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p>제16조(<u>신고포상금</u> 지급)</p> <p>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신고포상금</u>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u>포상금</u> 지급)</p> <p>① 자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포상금</u>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자식재산처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참고) 자식재산처 누리집)보도자료)“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6.5.28. 시행)</p> <p>자식재산처 자식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p>

관세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수출 물품가격이 400만원(FOB 기준)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이수출신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26.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4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5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26.6월)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가격 신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풀필먼트 수출신고 시 잠정가격 신고 후 실제 판매되어 수출가격이 확정된 때(판매대금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출신고가격 정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풀필먼트 수출신고가격 확정을 위한 정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26.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잠정수량신고·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잠정수량신고·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26.6월)

조달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우터) 개인 단위로만 위촉, 중점 지원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신청수요에 따라 선정 · (지정유형)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우터) 전문기관 중심으로 위촉하고 AI·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로 중점 확대 * 현행 개인 스타우터 통합운영 · (지정유형) 스카우터 추천형을 확대 개편하여 전문기관 추천형 · 민간투자 연계형 지방정부 협업형 신설 	<p>『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26.1월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시범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실증) 354억원 · (해외실증) 140억원 · (임차) 3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시범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실증) 624억원 · (해외실증) 200억원 · (임차) 15억원 	<p>조달청 신성장 판로지원과 (042-724-72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지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공공성 심사 후 통과제품에 대해 혁신성 심사 · (공고) 공급자 제안형 연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지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공공성·혁신성 통합심사 * 각각의 개별 통과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정심사 통과 · (공고) 공급자 제안형 연4회 	<p>조달청 신성장 조달총괄과 (042-724-6316)</p>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 계약체결, 분쟁 등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술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분야에 특화된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신설 	<p>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6.1월)</p>
			<p>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054-716-1514)</p>

조달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사람 ·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25.10.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를 활용하여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를 활용하여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은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구성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042-724-7578)

산림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첨단전략 사업 연구시설 입목축적 기준 예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입목축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경우 입목축적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입목축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경우 입목축적 기준 미적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26.3.공포시)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07.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두의 카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패스 환급률에 따라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률) 일반국민 20%, 청년·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금액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액 100% 환급하여, 고인도 이용자 환급혜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6.2만원, 청년 등 5.5만원 이상 지출금액에 대해 100% 환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K-패스 환급유형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유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률) 일반국민 20%, 청년·다자녀(2자녀)·어르신 30%, 다자녀(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5%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경제과 (044-201-5087)
국내 최초 공공 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 발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위성 1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국토위성 1호 운영 · (활용) 국토위성 산출물 5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정사영상, 사용자친화형영상, 모자이크 영상, 영상지도, 긴급 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위성 1호·2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하반기부터) · (운영) 국토위성 1호·2호 동시 운영을 통한 활용 확대 · (활용) 국토위성 산출물 5종→8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5종 + 3차원 공간정보, 국토현황정보, 변화탐지정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위성의 도입 운영 근거 마련 (‘25.12.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26.12.3. 시행 예정)
			국토자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031-210-2792)
범죄피해자 등 주거상향 시 자산 소득 검증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초 계약에 한하여 소득·자산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에는 소득·자산 검증을 실시하여, 입주주택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p>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25.12.5. 시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정책과 (044-201-474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배달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플랫폼은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해야만 함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26년 예정)
			국토교통부 생활물류 정책팀 (044-201-4156)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개선	〈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암류·양도 금지 2.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금지 	항공사업법 (‘26.6.3) * 11.15일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7)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 교통관제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제35조 (‘25.11.28.)
			국토교통부 항공자격 국제협력팀 (044-201-4257)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장관제팀(인천·김포·제주·여수·양양·무안·울산·울진·정식·태안 관제팀) · 접근관제시설 (서울·제주·김해접근관제소, 여수·울진·울산도착관제실) · 지역관제시설 (대구·인천지역관제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25.11.28.)
			국토교통부 항공자격 국제협력팀 (044-201-4257)

국토교통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교통관 제사 제도'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업무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및 수행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장관제업무 - 감시접근관제업무 - 감시지역관제업무 · 항공교통관제시설: 제10조의4에 따른 시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25.11.28.)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심사) 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180일까지의 사이에 60시간 이상 관제한 경험을 매 2년마다 실시 · 수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자격증명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중 한정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사람 -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수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 (25.11.28.)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교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table border="1" data-bbox="261 1144 522 1305"> <thead> <tr> <th>구분</th><th>통행료</th></tr> </thead> <tbody> <tr> <td>경차</td><td>2,750</td></tr> <tr> <td>소형</td><td>5,500</td></tr> <tr> <td>중형</td><td>9,400</td></tr> <tr> <td>대형</td><td>12,200</td></tr> </tbody> </table>	구분	통행료	경차	2,750	소형	5,500	중형	9,400	대형	1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table border="1" data-bbox="553 1144 814 1305"> <thead> <tr> <th>구분</th><th>통행료</th></tr> </thead> <tbody> <tr> <td>경차</td><td>1,000</td></tr> <tr> <td>소형</td><td>2,000</td></tr> <tr> <td>중형</td><td>3,500</td></tr> <tr> <td>대형</td><td>4,500</td></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24.1.16.)’</p>	구분	통행료	경차	1,000	소형	2,000	중형	3,500	대형	4,500	- (25.12.18.)
구분	통행료																						
경차	2,750																						
소형	5,500																						
중형	9,400																						
대형	12,200																						
구분	통행료																						
경차	1,000																						
소형	2,000																						
중형	3,500																						
대형	4,500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이륜자동차 전국단위 번호판 도입 및 규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한 시·도 및 시·군·구명이 포함된 번호판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서울 관악 가 1234 ·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격은 가로 210mm x 세로 115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시·도 명이 삭제된 전국 번호판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1가 23456 · 위 전국단위 번호판 규격은 가로 210mm x 세로 150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5의2] 이륜자동차번호판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6.3.20.)</p> <p>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26.3.20.)</p> <p>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044-201- 3861)</p>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 확인 절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여부 확인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제한단속원은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반여부 확인 관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위탁증 등 · 도로관리청이 요구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여부 확인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및 확인(선택→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제한단속원은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확인하여야 함 ● 위반여부 확인 관계 서류 확대 (2종 →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위탁증 등 · 도로관리청이 요구하는 서류 · (추가)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운송장, 인수증 등 · (추가) 화물면세서 등 · (추가) 위 서류가 없는 경우도 화물의 종류, 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p>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26.1. 발령 시)</p> <p>국토교통부 도로시설 안전과 (044-201- 3926)</p>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외 각종 페이 등 간편결제 가능 도입 ● 푸시 메시지를 통한 개인별 운행일정 자동 알림 	해당사항 없음
도선사 시험 온라인 접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생 수기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접수기관 방문하여 대면 접수 · (접수증) 접수기관에서 응시생 정보를 수기확인 후 접수증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누리집 접수 및 접수증 온라인 출력 	도선법 시행령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으로 시험 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장 배치, 채점 결과 입력 등 수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 및 정보관리 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시스템으로 시험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응시생 정보관리 전산화 	도선법 시행령 제5조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침식·침수에 대한 구조물 위주의 단편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적응형 연안정비체계 구축 	해당없음
			해양수산부 항만물류 산업과 (044-200-5772)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파블록 (테트라포드 등) 재활용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파블록의 제거 및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태평가에서 D,E급은 유용불가로 판정되며, B,C는 유용이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파블록의 제거 및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B,C 등급의 소파블록은 유용이 가능하고 D, E 등급의 소파블록은 유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D, E 등급의 소파블록은 쇄파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중량재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한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기능의 재료로 대체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6.1.)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의 민간분양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저조하여, 항만 재개발에 따른 효과 반감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항 재개발 구역 내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및 상부 공공콘텐츠 도입계획 수립 등으로 공공부문이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26년까지) 	해당없음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51-773-5951)

경찰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변경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일정 기간(연령대별 상이)이 지난 해가 속하는 해의 1.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일정 기간(연령대별 상이)이 지난 해가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도로교통법 (‘2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칙) ‘26년 이후 첫 갱신기간 도래시 기존 갱신 기간(1.1~12.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 	경찰청 교통기획과
약물투약 운전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도로교통법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운전 처벌 상향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물운전 측정 근거 마련 및 측정 불응시 처벌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 상습 약물운전(징역 2~6년, 벌금 1천만원~3천만원) 및 측정거부(징역 1~6년, 벌금 5백만원~3천만원) 가중 처벌 <p style="color: blue;">☞ (참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45조, 제82조제2항제3호, 제93조, 제148조의2 [시행 2026.4.2. 법률 제20864호]</p>	도로교통법 (‘26.4.2.)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309)

08. 농림·수산·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신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6.초)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공동영농법인 대상 농지임대(또는 출자) 등 관련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 종합 지원 · 사업대상 : 20헥타르 이상 농업인 5명 이상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 (‘26.초)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 아침 또는 점심값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으로 구내식당, 공동식당, 주문배달 등에 대해 정부가 2천원 지원 * (예) 1식 5,000원 기준 → 정부 2천원 + 지자체 또는 기업 2천원 + 근로자 1천원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중소기업 종사자가 점심시간에 인근 외식업종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결제한 금액의 20%(월 4만원) 지원 * (예) 1만원(1회 점심값) x 20일(월 근무일) x 20%(지원 비율) = 4만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든든한 하루의 시작, 천원의 아침밥이 산단 근로자를 만납니다’” 	사업 신규 추진 (‘26.)
			(아침) 식량정책과 (044-201-1822) (점심)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기치세 면제 대상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기치세 면제 (10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기치세 면제 확대(112종*) * (10종 추가)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소통>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부기기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부기기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26.1.1.)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제도화	● 예산 한도 내에서 쌀 적정생산과 는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수급 정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 동물의료팀 (044-201-2652)
	● 정책 참여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수급계획 이행을 위해 선택직불 외에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 시책 추진을 위한 농업인 재정지원 근거 신설 ● 논 타작물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참여 농업인에게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양곡관리법 ('26.8.27.)
	●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격리를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수급계획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공급 과잉 또는 가격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양곡수급안정대책 시행 의무화 · 사후대책 발동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 까지 지원 확대... 지원기간도 12개월로 연장	● 지원대상 ·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 - 약 8.7만 가구	● 지원대상 ·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는 가구 - 약 16만 가구	('26.1.1.)
	● 지원기간 · 10개월(3~12월)	● 지원기간 · 12개월(1~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 지원 예산(국비) · 381억원	● 지원 예산(국비) · 740억원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2026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신설〉	● 전국 초등 늘봄학교 학생 60만명 대상 주1회 과일간식 공급 · 지원기간 : '26학년도 1~2학기 · '26년 예산 : 17,040백만원	사업 신규 추진('26.4월 잠정)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2)
주민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신설〉	●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30년까지 500개소 이상 조성	('26.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단소중립정책과 (044-201-2632)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신설〉	●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전국 140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수거지원단의 방치 쓰레기 수거 활동비 지원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26.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2)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 최대 46,350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 최대 50,350원 지원 	보건복지부 고시 (26.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2)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제공서비스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 의과, 한의과, 치과 등 진료 및 상담, 기초처방 등 · (구강관리검사) 구강검사 및 측정, 치아 관리 교육 등 · (검안) 시력 측정 및 검사, 돋보기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제공서비스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 의과, 한의과, 치과 등 진료 및 상담, 기초처방 등 · (구강관리검사) 구강검사 및 측정, 치아 관리 교육 등 · (검안) 시력 측정 및 검사, 돋보기 지원 등 · (정신건강) 우울 등 심리검사, 비대면 상담 등 · (소규모 왕진버스) 복약지도, 기초처방 등 제공(경로당 등 마을 소규모 거점에서 제공 가능/ 다회방문 원칙) · (재택) 재가환자, 자녀가 있는 주민 등 이동이 어려운 주민 대상 방문 기초 진료 	'26년 농촌 왕진버스 사업시행지침 (26.1.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대상연령: 51 ~ 70세 ● 검진대상인원: 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대상연령: 51 ~ 80세 ● 검진대상인원: 8만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26.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빙집 정비 지원 확대	● 농촌 빙집 정비 지원 · (재생) 빙집 재생모델 발굴, 빙집은행 구축 등	● 농촌 빙집 정비 지원 확대 · (철거) 농촌빙집 철거 지원 (호당 최대 16백만원) · (재생) 빙집 재생모델 추가 발굴, 빙집은행 참여지역 확대 등	농어촌빙집 정비지원사업 ('26.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신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6.2.15.)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해보험 의무 가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4)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헤판부 담당 완화	● 보험료율 산정 · 시·군별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기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 적용	●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완화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재해보험법 ('26.8.15.)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신설〉	● 산학협력사업 지원 근거, 거점단지 시설 평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1.23.)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1)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창구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테크 사업자가 규제 합리화 필요 사안을 농식품부로 신청 ⇒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 · '25.12.21일부터 「푸드테크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어 규제개선 신청·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마련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푸드테크산업 육성이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p>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5.12.21.)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사업 신규 추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신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하여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수출기업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 지원 <p>☞ (참고)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사업신청 모집공고/ 신청</p>	사업지침 ('26.1.1.)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치킨벨트) 조성	● K-미식벨트 누적 4개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치킨벨트 신규 조성 	사업지침 ('26.1.1.)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시설 구축 및 재해경감형, 검역대응형, 노동절감형 등 유형별로 구분한 맞춤형 자동화 설비 등 지원 <p>☞ (참고)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사업신청 모집공고/ 신청</p>	사업지침 ('25.1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진흥과 (044-201-2176)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에서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농식품부, 국민 체험형 규제 협리화 속도 낸다!</p>	관리기본계획 변경 ('25.11월)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동물용 사료 제조업 입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 입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기존 사료제조업(가축용 배합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은 제외 업종으로 유지 <p>☞ (참고) 산업통상부 누리집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p>	관리기본계획 변경 ('26.1분기)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044-201-2187)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후 이행 · 최초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매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이행 · 농식품부 등의 점검 결과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관리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개선 	가축전염병 예방법(26.1.23.)
	●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 돼지열병(CSF) 방역관리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에 백신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를 목표로, 전국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 공급 (기존 백신은 접종하지 않음) 	행정명령 (26.1.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신설〉	● 산란계 농장(신청농가) 가축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에는 방역관리 비용 일부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26.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5)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 실시	● 국가봉사동물 입양 시 개별 기관에서 사료, 물품 등 지원(유동적)	●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 지원 실시 · 입양자 대상으로 마리당 의료비·사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26.4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0)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대상품목 및 직불금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계작물) 밀(100만원/ha), 보리, 호밀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원/ha) · (하계작물) 두류·가루쌀(200만원/ha), 하계조사료(500만원/ha), 옥수수·깨(100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모작 인센티브) 동계 밀 또는 조사료 재배 후 하계 두류,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원 추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정부안) 대상품목 및 직불금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계작물) '25년 동일 · (하계작물) 두류·가루쌀(200만원/ha), 하계조사료(550만원/ha), 옥수수·깨(150만원/ha) (신규추가) 수급조절용벼(500만원/ha), 알팔파·율무(250만원/ha), 수수(240만원/ha) · (이모작 인센티브) 동계 밀 또는 조사료 재배 후 하계 두류, 가루쌀 또는 하계조사료 이모작시 ha당 100만원 추가 지급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 ('26.1.1.)
			전략작물육성팀 (044-201-2913)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 축산 법령, 가축방역 등 축산법 시행규칙상 교육과정을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선택과정을 확대·신설하여 탄소중립, 스마트축산 등 관심사항의 교육 가능 	축산법 시행규칙 (‘26.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6)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추진, 수출기반 조성 등 법적 기반 마련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7.23.)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기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 면적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농가당 최대 지원 80억까지 지원 가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26.1.1.)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 추가 및 신고방법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소비자,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판매량을 거래처(개인, 음식점 등)별로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26.2.1.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6)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채소가격안정제, '안정생산 공급지원' 사업으로 바뀝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채소가격안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배추·마늘·양파·건고추·대파, 감자 · 사업대상 : 농업인 · 예산과목 : 민간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가30 : 지자체30 : 농협20 : 농업인20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격차보전(80~60%) ② 산지폐기(출하조절) ③ 출하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수급조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배추·마늘·양파·건고추·대파, + 사과·배 · 사업대상 :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매취사업 농협(법인)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가40:지자체40:자부담20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격차보전(80~60%) : '26년 한시적 지원 ② 재배면적관리 : (과잉) 산지폐기, 출하조정, 착과조정, (과소) 추가정식, 예비묘공급, 출하장려 등 ③ 재해피해 하급품 가공지원 ④ 저장지시이행지원 · 실행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 수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협의체에서 수급관련 의사결정 → 광역 수급관리센터에서 수급시업 실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2, 제5조3 (‘25.1.1.)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채소가격안정제, '안정생산 공급지원' 사업으로 바뀝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가격안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선제적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 시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도입, 안정적 생산여건 마련 · (별동기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가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관련 의무 등 미이행 시 가격안정제를 통한 차액 지급비율 달리 설정 · (대상품목) 쌀,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을 중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 (위원회) '농산물가격 안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가격안정제 대상품목과 차액의 지급비율 등 심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6.8.27.시행) 제16조의2 제16조의4
마늘, 양파 대상 밭작물 지정출하 시범사업 운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늘, 양파 대상으로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민간의 수급조절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예산 : 2,809백만원 	사업 신규 추진 ('26~)
오리 방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시범사업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병원성 AI에 취약한 오리사육시설을 6단 이하 고상식 축사로 개선하는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안정적 산업 성장 유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6.1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8)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전용 홍보 플랫폼 조성을 위한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사업 신규 추진 · 국내 스마트팜 관련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실증 및 수출업무 지원 공간 조성 	('26.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 수출진흥과 (044-201-2478)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 사업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영도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개소 ● 기업 입주 및 협업, 기술개발, 실증 등 종합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 (051-773-6225)
수산물 이력제 참여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통망을 가진 유통사도 개별 지점을 모두 등록 신청 후 등록심사 통과 시 이력제 참여 ● 수산물 이력제 참여를 희망하는 양식장에 대해 입식·출하일,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의 기록·관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사 전체(본사)의 공급망 등 이력 관리체계를 심사하고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통사 본사를 등록하고 개별 지점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 ●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출하하는 양식장에 대해 수산물 이력제 참여 시의 기록·관리 필요 사항 완화·면제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26.상반기 공포 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51-773-5639)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초보-성장-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바우처 신설 : 내수-초보-성장-고도화 · 직전년도 수출실적 1만불 미만의 기업 지원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51-773-54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 100개사 지원 · (내수) 해당 없음 · (초보) <u>40개사</u> 내외 · (성장) <u>39개사</u> 내외 · (고도화) <u>21개</u>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 158개사 지원 · (내수) 9개사 내외 · (초보) <u>60개사</u> 내외 · (성장) <u>59개사</u> 내외 · (고도화) <u>31개사</u> 내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51-773-54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실적 고려 · (내수) 해당 없음 · (초보) <u>최근 3년간 평균</u>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 ~50만불 미만 그리고 매출액 <u>5억원</u> 이상 · (성장)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 (고도화)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완화, 단년도 고려 ·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불 미만인 기업(<u>신설</u>) · (초보) <u>전년도</u>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 ~50만불 미만 그리고 매출액 <u>1억원</u> 이상 · (성장) 협행유지 · (고도화) 협행 유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51-773-5483)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500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6)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내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는 어선 선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는 어선 선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지만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선박직원법 (‘25.12.1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공익직불제 신청과 처리 현황을 행정기관에 민원인이 직접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 운영으로 직불제 신청 처리 현황 및 자격요건 검증 서비스를 제공 <p>☞ (참고)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 > 수산공익직불제 (e 수산공익직불 서비스)</p>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51-773-5455)
수산자원조성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조성금 일괄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납부기한 내 조성금 일괄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속할 경우, 조성금 분할 납부 가능 ·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조성금분할납부신청서 제출 필요 <p>☞ (참고) 법제처 누리집(법률예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안</p>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규칙 (‘26. 1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51-773-5531)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불법 방치어구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계고 → 대집행 영장 통지 → 실행 · (특징)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지도·단속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2개월 이상) 소요 ●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 및 유실어구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① 어구 발견 → ② 철거 후 보관 공고(열람부 작성) → ③ 소유자 출현 시 반환 → ④ 1개월 이내 미반환 시 매각 또는 폐기 · (특징)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 생략 후 즉시 철거 ●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 및 유실어구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망·통발 등 어업의 어선에 '어구관리기록부' 비치하여 어구 설치량 등 기록 ·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가 유실되었을 때 유실량·위치를 알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 <p>☞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p>	수산업법 ('26.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부표의 유실·투기를 막기 위해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하는 어구보증금제 실시(통발) ·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확대 실시 <p>☞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부표의 유실·투기를 막기 위해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하는 어구보증금제 실시(통발+자망·부표·장어통발) 	수산업법 시행령 ('26.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영양 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부족 · 반복된 행동, 편식 등으로 인해 영양불균형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 식생활 영양 관리 ('26년 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별 영양불균형 우려 요소 분석 · 맞춤형 식단, 식사지침 등 수록한 영양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및 교육·홍보 	('26.12.)
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을 위한 식품위해예측 센터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위해예측 시스템 부재 · 사후관리 안전관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모니터링 정보와 실시간 위해요소별 영향인자를 연계하여 위해예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선제적 안전관리 	식약처 식생활영양 안전정책과 (043-719-2262)

농촌진흥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험성적서 면제범위 확대 등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 개선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농약 등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미생물 동정방법(규정 없음) · 주요성분, 그밖의 성분 종류와 험유량 3배치 이상 분석 성적 제출 · 그 밖의 성분: 종류별로 모두 분석, 조성비가 0.1% 이상인 경우 모두 분석 · 신규 등록 신청 제초제는 후작물에 대한 약해시험 성적서 제출 · 급성경구병원성 시험성적서는 원제, 품목 모두 제출 · 토양미생물 영향시험 성적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농약 등록기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미생물 동정방법 신설 · 유효미생물 분석 방법 및 분석 성적(3배치 이상) 제출 · 그 밖의 성분: 오염미생물을 함량 및 허용수준에 대한 자료 · 제출 면제 · 급성경구병원성 시험성적서는 원제만 제출, 품목은 제출 면제 · 국내 식물 및 토양에서 유래한 미생물인 경우 제출 면제 · 문헌, 논문자료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성적서 대체 가능 	<p>「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25.11.21.)</p> <p>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5)</p>
농작업 안전관리자 확충으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 컨설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안전 컨설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안전관리자 20시군44명, 6개월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안전 컨설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안전관리자 44시군 88명, 9개월 컨설팅 * 5인이상 고용 농업경영주 안전컨설팅 우선 지원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p>('26.1월)</p> <p>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과 (063-238-1036, 1037)</p>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시범 서비스 개시('25.11.) * 스마트팜 데이터 등 정형 데이터 80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형 데이터(병해충 이미지 등) 및 외부 연계 데이터 추가 개방, 개방 데이터 품질 개선 	<p>데이터관리규정 (농진청훈령 제1429호) ('26.2월)</p> <p>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데이터정보화 담당관실 (063-238-0490)</p>

산림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후계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립기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후계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립기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p>임업진흥법 시행규칙 (‘26.7.공포 시)</p> <p>산림청 사유림 경영소득과 (042-481-4191)</p>

09. 국방·병무

국방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급액(원)</th></tr> </thead> <tbody> <tr><td>기본훈련 훈련비</td><td>-</td></tr> <tr><td>작계훈련 훈련비</td><td>-</td></tr> <tr><td>동원훈련 I형 훈련비</td><td>82,000</td></tr> <tr><td>동원훈련 II형 훈련비</td><td>40,000</td></tr> <tr><td>급식비</td><td>8,000</td></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원)	기본훈련 훈련비	-	작계훈련 훈련비	-	동원훈련 I형 훈련비	82,000	동원훈련 II형 훈련비	40,000	급식비	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급액(원)</th></tr> </thead> <tbody> <tr><td>기본훈련 훈련비</td><td>10,000</td></tr> <tr><td>작계훈련 훈련비</td><td>10,000</td></tr> <tr><td>동원훈련 I형 훈련비</td><td>95,000</td></tr> <tr><td>동원훈련 II형 훈련비</td><td>50,000</td></tr> <tr><td>급식비</td><td>9,000</td></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원)	기본훈련 훈련비	10,000	작계훈련 훈련비	10,000	동원훈련 I형 훈련비	95,000	동원훈련 II형 훈련비	50,000	급식비	9,000	- (‘26.1.1.)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02-748-5241)
구분	지급액(원)																										
기본훈련 훈련비	-																										
작계훈련 훈련비	-																										
동원훈련 I형 훈련비	82,000																										
동원훈련 II형 훈련비	40,000																										
급식비	8,000																										
구분	지급액(원)																										
기본훈련 훈련비	10,000																										
작계훈련 훈련비	10,000																										
동원훈련 I형 훈련비	95,000																										
동원훈련 II형 훈련비	50,000																										
급식비	9,000																										
장기간부 도약적금 (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사법 제62조의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p>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p>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군인사법 (‘26.3.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4)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군인의 「대학신입생」자녀들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軍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신입생」자녀들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軍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기여 <p>☞ (참고)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p>	군인복지 기금법 제4조 (‘26.3.12.)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23)																								

국방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 군인자녀학생모집특례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생모집 및 지원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군인자녀학생모집특례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군인자녀 학생모집 특례규정 ('24.10.15.)
	● 군인자녀학생모집특례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 군인자녀학생모집특례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2.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 군인자녀학생모집특례규정 제3조(적용대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 군인자녀학생모집특례규정 제3조(적용대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 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교육감이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을')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병 등)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병역준비역 / 가족) 군 복무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소통 강화 ● (부대 행정) 휴가, 출장, 예약 등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26.1월, 7월)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 (02-748-5998)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25년 1월 13,000원/인	● '26년 1월 14,000원/인	- ('26.1.1.)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7485)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전장의 핵심전력으로 급부상한 드론을 장병 모두가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여 전투력 향상 도모 ● 장병이 자율적으로 新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군 생활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국산화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하여 소부대 작전대응능력 강화와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 기여 <p>☞ (참고) 국방부 누리집》보도자료 “안규백 국방부장관, '50만 드론전사 양성'선언”</p>	국방부 유무인복합체계과 (02-748-5431)

국방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개설 ● 사관학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개설, 필수교육화 	<p>-</p> <p>국방부 정신전력 정책과 (02-748-6261) 교육훈련 정책과 (02-748-6244)</p>

조달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우리 장병들이 입는 군수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능력 확인을 생산설비 위주의 1회성 확인 - (섬유제품)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설비 각 1대 이상 보유 ●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 선정 주관기관 - 주관기관 : 방위사업청 ● 생산능력 확인을 입찰 후 낙찰자 결정을 위해 확인 - 부적격일 경우 결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능력 확인을 제조공장, 생산인력까지 확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강화 - (섬유제품) 10억원 이상 사업일 때 인력 40명 및 장비 36대 이상 보유 ●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 선정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조달청 ● 생산능력 확인을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격 부여를 위해 확인 - 부적격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으로 처리 	<p>군수품 업체생산 능력확인지침 ('25.10.20. 시행)</p> <p>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042-724-6332)</p>

병무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역·입영판정 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본인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사진↔얼굴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본인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오스크로 신분증 스캔, 진위확인 후 · 신분증 사진↔얼굴 전자적 대조하여 확인 	병역·입영판정검사 규정 ('26.1월)
			병역판정 검사과 (042-481-2918)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 법 위반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건물번호까지) ·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 법 위반 조항 · 여행국 	병역법 시행령 ('26.1.1.)
			사이버조사과 (042-481-2924)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기간 2일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즉시 처리 자동화 	제도개선 ('25.11.6.)
			현역기획과 (042-481-2717)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병 지원 시마다 면접 응시 ● 출결상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고교 3년간 결석한 누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평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특기병 일부 특기만 면접평가 유지 (9개 특기) ● 출결상황 평가 폐지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26.1월)
			현역입영과 (042-481-2720)
예비군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 (형)연기항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 1형 연기 가능 ●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 1형 연기 가능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26.1.15.)
			동원관리과 (042-481-2791)

병무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1형) 연기기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 1형 연기는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 1형 연기는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 본인 희망일자까지 가능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26.1.15.)
			동원관리과 (042-481-2791)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신청제도 신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25.10.1.)
			병무청 사회복무 정책과 (042-481-3021)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임영부대에서만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 실시 - (교육실시) 36·50사단, 병9여단 - (교육미실시) 육군훈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전체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적응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도 함께 홍보 - (교육실시) 전 입영부대 * 육군훈련소, 36사단, 해병9여단 	제도개선 ('26.1.1.)
			병무청 사회복무 관리과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축소 등 교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40명 - 토의식 모둠 활동 및 실습 제한 충북청은 교육생 단체수송 미실시(다른 청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30명 - 소규모·참여형 교육 가능 충북청도 교육생 단체수송 실시 (모든 청이 실시) 	제도개선 ('26.1.1.)
			병무청 사회복무 관리과 (042-481-3009)
병역자정업체 (연구기관) 선정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 중 연구전담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추가 	병역법시행령 ('25.7.7.)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2)

10. 행정·안전·질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의 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6.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의 요구사항은 실시간 처리를 원칙으로 함·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 처리(접수일의 종료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초일을 산입)· 법령의 해석이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	과기정통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산업 육성 극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지원 극거 마련 	AI기본법· AI기본법 시행령 (26.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신뢰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AI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음을 표시 · 고성능 AI시스템*은 위험 식별·평가·완화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26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AI시스템 · 먹는물, 에너지 등 영역에서 활용되며,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에 대해서는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책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계도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초기,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대상 AI기본법 이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취득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 할인 지원 · AI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령형AI 등 안전·신뢰제도 안내 및 상담제공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액을 250만 원으로 규정 · 생계비계좌 외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범위,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 조회 절차 마련 <p>☞ (참고)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25.10.)”</p>	<p>민사집행법 (‘26.2.1.)</p> <p>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금지 최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채권 중 185만 원 · 사망보험금 1천만 원, 만기-해약환급금(일부) 15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채권 중 250만 원 · 사망보험금 1천5백만 원, 만기-해약환급금(일부) 250만 원 <p>☞ (참고)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25.10.)”</p>	<p>민사집행법 시행령 (‘26.2.1.)</p> <p>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p>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구조 서비스가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이용 불편 <p>·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불편</p> <p>· 상담·신청·접수·처리 등을 위해 여러 번 방문</p> <p>·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률구조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기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AI 검색을 통해 맞춤형 지원 제공 <p>·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p> <p>·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p>	<p>법률구조법 (‘26.1.)</p> <p>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743)</p>

법무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건물에서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6.5.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1항) ●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법 제1004조의2 제3, 4항) ●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법 제1004조의2 제5, 6항)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민법 (‘26.1.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책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존 5개 대학 포함 총 32개 대학으로 확대 	- (‘26.1.)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9)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취업정보 신고 시 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 외국인이 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e-Application) 서비스를 통해 별도 서면 제출 없이 신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e-Application) 서비스를 통해 별도 서면 제출 없이 신고 가능 	법무부 출입국·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02-2110-4377)

법무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	전국 확대 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반영 예정	해당 없음
365 스마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일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심리치유 전문기관 스마일센터 운영 · 직장인·학생 등 학업, 생업으로 평일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해 주말·야간 운영 실시 · 도서·산간 지역 등 지방소도시 소재 스마일센터의 확상·유선 등 비대면 상담 확대, 심리지원차량 운영등 찾아가는 심리지원 체계 구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 스마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심리치유 전문기관 스마일센터 운영 · 직장인·학생 등 학업, 생업으로 평일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해 주말·야간 운영 실시 · 도서·산간 지역 등 지방소도시 소재 스마일센터의 확상·유선 등 비대면 상담 확대, 심리지원차량 운영등 찾아가는 심리지원 체계 구축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right;">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476)</p>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최종 개월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구조금) <u>기준 개월 수에</u> 유족의 수, 연령, 생계 유지 상황에 따른 <u>각 6/6, 5/6, 3/6, 1/6의 배수</u>를 곱하여 산정 · (장애인·중상해구조금) 장해등급 또는 치료기간에 따른 <u>기준 개월 수에</u> 부양가족의 수, 연령, 생계 유지 상황에 따른 <u>각 6/6, 5/6, 3/6의 배수</u>를 곱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최종 개월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구조금) 유족의 수, 연령, 생계 유지 상황에 따른 <u>기준 개월 수 (최소 24개월)만</u>을 곱하여 산정 (* 배수 삭제) · (장애인·중상해구조금) 장해등급 또는 치료기간에 따른 <u>기준 개월 수만</u>을 곱하여 산정 (*배수 삭제) 	<p style="text-align: right;">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6. 2. 시행 예정)</p> <p style="text-align: right;">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42)</p>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지급 	<p style="text-align: right;">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26. 1. 시행 예정)</p> <p style="text-align: right;">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746)</p>

행정안전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 필요 시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해일 재난 상황에서만 재난경보 사이렌 울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재난은 사이렌 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 상황 시에 사이렌 울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방송만 가능하던 기타 재난 상황에서도 사이렌 울림 가능도록 확대 운영 	<p>「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26.2.1.)</p> <p>중앙민방위경보 통제센터 (044-205-4383)</p>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1,530종) 맞춤 안내 ● 정부24와 5개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전 분야 공공서비스(6,200여종) 맞춤 안내 ● 이용 가능한 민간 앱 추가(2개) 	<p>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통합과 (044-205-2806)</p>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p>재난안전법 제66조 ('25.5 개정)</p> <p>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4)</p>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강우량) 30년 빈도 · (기후변화 모형) 18개 모형 중 1개(기상청) · (기간) 단기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강우량) 30년 빈도 · (기후변화 모형) 18개 모형 중 3개 (상위·중위·하위) · (기준강우량) 30년 빈도 · (기간) 단기2040·중기2070·단기2100 <p>※ (참고) 보도자료 작성 예정(12월)</p>	<p>자연재해대책법 ('25.12월 이후)</p> <p>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8)</p>

행정안전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용자 중심의 재난·안전정보 통합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피해이력 등 정보 개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 5종 · 개별 지역 조회하여 위험정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위치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창구 '국민안전 24'로 일원화 · 사용자 위치기반 재난안전 정보 조회 ※ PC는 관심위치 기준, 모바일은 현재위치(GPS) 기준으로 제공 ☞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 <보도자료> "언제 어디서든 더욱 안전하게, AI 기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 본격 추진" 	<hr/>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right;">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388)</p>

성평등가족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분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주거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별도 기관에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통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 예정 	<hr/> <p style="text-align: right;">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1.1.)</p> <hr/> <p style="text-align: right;">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내 안전장비 구축을 중심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시설 내 119 바상벨, CCTV 등 안전장치 구축 · 시설 내 입소자가 시설 밖 이동 시 불안감 호소하는 사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개인 보호 휴대용 안전장비 지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바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용 안전장비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mogef.go.kr) 유형별서비스 상담창구(여성폭력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또는 국번없이 1366) 	<hr/> <p style="text-align: right;">-</p> <hr/> <p style="text-align: right;">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476)</p>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박이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의 유해물질목록 관리, 선박검사, 선박재활용시설 인증, 선박재활용계획의 승인, 출입검사 및 항만국통제, 검사 대행 등을 규정 	선박재활용법 ('26.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82)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중레저업 등록사무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레저사업등록·변경 - 휴업·폐업 - 행정처분 - 수중레저이용요금 신고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사무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및 원상복구 명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중레저업 등록사무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레저사업등록·변경 - 휴업·폐업 - 행정처분 - 수중레저이용요금 신고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사무 해양경찰청에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6.4.23.)
선박보안정보 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사용자(선사의 계정담당자) 만 결과 확인 가능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점검 결과정보를 활용하는 선박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발송 누리집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26.하반기) ('26.하반기)
해운분야 안전투자 최초 공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과 대형사고(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송선박 등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25.7.26.)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정책과 (051-773-5817)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대상: 연안여객선 ● 보급장비: 상방향 물 분사장치, 질식소화덮개, 소방원장구 및 열화상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대상: 연안여객선 + 국제여객선, 연안카페리화물선 ● 보급장비: 전년동 	<p>- (25.1분기)</p> <p>해양수산부 해사안전 정책과 (051-773-5817)</p>
카페리 여객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선박 운송 시 전용소방설비 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선박 운송 시 전용 소방설비 비치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카페리선박 · (비치설비)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방설비 비치하여 선제적 대응 	<p>선박소방 설비기준 (25.9.5)</p> <p>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39)</p>

소방청

소방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방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상담 방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방법) 전화, 메일, 누리집, 카카오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상담 방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방법) 전화, 이메일, 누리집(모바일웹), 카카오톡, 119안전신고센터(APP) · (기능 개선) 국내 거주 국민의 상담 이용 제한, 상담 이력 관리 등 <p style="margin-top: 10px;">☞ (참고) 소방청 누리집> 보도자료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p>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26.1.1.)

산림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주변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 행정기관 제출 시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의 위험성 검토 및 의견을 행정기관에 제출 	산림재난방지법 (‘26.2.1.)

10. 행정·안전·질서

해양경찰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업장 안전점검 등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업무 해양경찰청 이원화 · (안전관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작성·시행 · (사업등록 및 안전점검) 지방해양수산청(11개소)에서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안전점검 · (금지구역 지정 등) 지방해양수산청(11개소)에서 금지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구조업무 등 수중레저 안전관리 분야 해양경찰청 일원화 · (안전관리규정) 해양경찰청장 작성·시행 · (사업등록 및 안전점검) 관할 해양경찰서(21개소)에서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안전점검 실시 · (금지구역 지정 등) 관할 해양경찰서(21개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 업무 실시 	<p>수중레저법 (26.4.23.)</p> <p>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1, 2651)</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마야,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회의 (24시간 이내 심의 및 시정요구 절차 완료) 	<p>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6.상반기)</p> <p>방미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02-2110-1566)</p>

원자력안전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한국형 기준 정립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26.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성단층 판정기준 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과거 35,000년 이내에 1회 이상</u> 또는 과거 500,000년 이내에 2회 이상 지표면 또는 지표부근에서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성단층 판정기준 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과거 50,000년 이내에 1회 이상</u> 또는 과거 500,000년 이내에 2회 이상 지표면 또는 지표부근에서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을 것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02-397-7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분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320km, 8km 이내</u> 조사 실시 ● 안전정지지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론적 방법으로 안전정지지진 값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분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320km, 40km, 8km, 1km 이내</u> 조사 실시 ● 안전정지지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론적 방법으로 안전정지지진 값을 산출 · <u>산출한 안전정지지진값을 확률론적 지진재해 분석(PSHA,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방법</u>으로 검증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02-397-7316)
	● 최대가상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요오드 중심의 선원함</u> (美 10CFR 100.11)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26.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가상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제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전신선량 250mSv, 김상선 3,000mSv</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가상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제논, 크립톤, 세슘 등 다양한 핵종을 평가하는 선원함</u> (美 R.G.-1.183) · <u>원자로의 목적, 설계의 특성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른 선원함 적용도 가능</u> ● 최대가상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제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유효선량 250mSv</u>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02-397-7316)

원자력안전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한국형 기준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고 · 폭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km 이내 폭발성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수송과 관련하여 조사 후 평가 · 유해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km 이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수송과 관련하여 조사 후 평가 	<p>「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추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km 이내 공항, 비행장 위치, 활주로 길이·방향과 항공기 운항 등을 조사 후 평가 · 폭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km 이내 폭발성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수송과 관련하여 조사 후 평가 · 유해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km 이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수송과 관련하여 조사 후 평가 	<p>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26. 상반기)</p>
사용후 핵연료가 보다 안전하게 운반될수 있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부지 내 발전소 간 사용후핵연료 운반 · 사업소 외 운반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부지 내 발전소 간 사용후핵연료 운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부지 내 운반경로 및 그에 따른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를 허가서류에 반영한 경우 사업소 내 운반으로 할 수 있다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25.10.23 개정)</p>	<p>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25.10.23.)</p>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02-397-7275)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책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https://whatsnew.moef.go.kr>



대한민국정부
korea.kr